

월간

재정포럼

2024. March
Vol.333

03



권두칼럼

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한
재해석
| 옥동석

현안분석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한계기업 지원양상 분석과
정책시사점
| 홍용기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한 소고
| 김평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
(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사항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4.03. Vol.333

월간 재정포럼 2024년 3월호 통권 제333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한 재해석 | 옥동석

현안분석

08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한계기업

지원양상 분석과 정책시사점 | 홍용기

38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한 소고 | 김평식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60 미국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사항 발표 외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한 재해석



✦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정부 재정의 경제적 기능

정부 재정의 경제적 기능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자원배분 기능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소득분배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도모하는 것이며, 경제안정화 기능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위해 총수요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구분은 1939년 머스그레이브(Richard Musgrave)의 논문에서 처음 제시되었고 1959년 그의 재정학 교과서에서 완성되었다.¹⁾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복잡한 활동들을 이해하는, 학문적 통찰력이 뛰어난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경제학계에서는 세 가지 기능별 정부역할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민간시장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시장실패를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소득분배 측면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되는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경제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물가안정 속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지균형을 폐기하고 재정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의 증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정부규모의

1) Musgrave, Richard A. "The Voluntary Exchange Theory of Public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53(2), 1939, pp. 213~237, 그리고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A Study in Public Economy*, 1959 참조

지속적인 확대를 초래하였다. 유럽 선진국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가 20세기 초반 10%대였는데, 1950년대 28.5%에서 1970년대 41.4%로 급증하였다.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 사조로 ‘작은 정부’를 위한 정책들이 채택되었으나 그 규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2020년대 현재 OECD의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45% 내외를 기록하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55%에 달하기도 하며 낮은 규모를 유지하는 국가들도 최소한 38%를 초과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계속되는 정부지출 규모의 이러한 증가는 재정의 3대 기능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현상은 정부지출 규모의 증가가 수급권(entitlements) 형태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지출 증가로 대부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급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전지출을 말한다. 따라서 정책의 재량적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령화 등 인구통계학적 변수만으로 수급권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 수급권은 개인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암묵적인 대가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급권 조정은 재산권 침해로 인식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수급권 형태의 의무지출 증가는 정부지출 증가와 재량지출 감소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 우선 정부지출의 증가는 장차 세율인상, 국가채무 증가, 통화증발에 대한 우려를 낳기에 재정의 불확실성을 한층 더 높인다. 또한 재량지출의 감소는 경제적 기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점차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재의 정부기능 확대는 미래의 정부기능 축소로 연결되기에 정부의 역할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기능 각각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정부역할 배분에 대한 규율이 어떤 형태로든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 기능 각각에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정부역할 배분에 대한
규율이 어떤 형태로든
확립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경제에 따른 재정경쟁

재정의 기능에 대한 재해석을 요구하는 또 다른 주목할 변화는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화이다. 1950년대 이후 국제무역과 개방경제의 놀라운 성장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 자본과 인구의 양은 경이적으로 증가하며 세계 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통합되었다. 특히 금융자본은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세계화와 개방경제는 정부 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은 한 국가의 과세 기반이 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경상수지 불균형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외화를 즉시에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개인들의 투자자 또는 소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면서 인구의 국경 간 이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의 외부에서 소득을 얻고 소비를 하면서 국적의 이동이나 이중국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개방경제는 정부 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은 한 국가의 과세 기반이 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국가가 민감한 활동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춤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과세기반이 전 세계적 공유자원이 되면서, 자국의 조세수입 증가를 위해 다른 국가들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시도가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조세경쟁은 명목 또는 법정 세율, 조세 관행(행정 및 납세 비용), 조세 제도의 예측 가능성, 법적 투명성 등에서 나타날 것이다.

조세경쟁은 더 나아가 '재정경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세금 수입의 용도, 즉 개인이나 기업이 납부한 세금의 대가로서 수령하는 정부서비스와 공공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금융자본과 기업 그리고 개인의 이동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현재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장래의 전망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은 향후의 세율인상과 통화증발로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재정과 함께하는 안정적인 법치와 규제의 수준도 소비 및 투자의 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나가며

이처럼 세계화와 개방경제는 재정의 역할에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지출의 승수효과가 개방경제에서는 거의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분배와 자원배분 기능에서도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가 국내 정책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분배에서의 '복지국가', 자원배분에서의 '시장실패 교정'이 정책목표로서의 지위에서 밀려나고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지출의 수준, 정부개입의 범위에 대한 국제적 비교가 점점 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

1950년대에 머스그레이브가 제시했던 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여전히 정부 역할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그러나 의무지출 확대에 따른 세대 간 형평성 문제, 그리고 개방경제 심화에 따른 국제비교가 재정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되고 있다. 이제는 이들을 감안하여 세 가지 기능의 목표들을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재정학 이론들이 유토피아적 이상에만 -자원배분에서의 무결점적 효율성, 소득분배에서의 이상적 공평성, 경제안정화에서의 완전한 고용- 머물러 있다면 현실적 정부활동에 대한 위대한 통찰은 더이상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재정학 이론들이
유토피아적 이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실적 정부활동에 대한
위대한 통찰은
더이상 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안분석

+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한계기업 지원양상 분석과 정책시사점

홍용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한 소고

김평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01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한계기업 지원양상 분석과 정책시사점¹⁾



홍용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ykhong@kipf.re.kr

1.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후 COVID-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간 초저율 정책금리 유지 기조와 기업에 주어지는 정책금융의 대규모 확대로 인하여 각국 정책 연구자들은 경제 내 한계기업 비율 상승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계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상당 기간 이상 극히 낮은 수익성을 유지한 기업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기업은 외부에서의 자금 수혈을 통해서만 지속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과거 유사한 확장적 통화정책과 기업에 대한 대량의 자금 공급이 있었던 경우 이것이 한계기업의 증가로 이어지고, 중국에 경제 전체의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는 맥락에서 최근의 경각심 또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도 최근 한계기업의 증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연구와 언론의 보도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0년 전체의 6.7%에서 2020년 15.6%로 10%p 가까이 상승하였으며, 주요 경제지에서도 2021년 전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하 외감기업) 중 14.9%가량의 기업이 한계기업에 해당한다는 보도를 내는 등 경종을 울렸다. 이러한 경향성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 Albuquerque and Iyer(2023)는 총 63개국을 이용한 분석에서 한

1) 본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 및 편집위원분들,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원내외 토론자분들 그리고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 중 KoDATA의 수득과정에 도움을 주신 장우현 박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본고는 저자가 진행하였던 동명의 2023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획과제(발간 예정)를 수정·발전시킨 원고 중 일부 내용을 『재정포럼』의 편집 방향에 맞게 편집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계기업의 비중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특히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보이기도 했다.²⁾

한계기업의 증가는 경제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또한 미래에 잠재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는 자본과 노동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비효율적으로 배분(misallocation)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이는 최근과 같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정책금융 공급이 감소할 경우 이 기업들이 급작스럽게 도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이러한 충격이 이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은행 부문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무시하기 어렵다.

한계기업이 자력으로 생존하거나 성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그러한 기업이 장기간 생존한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효율적인 시장의 평가와는 다른 가격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금 공급의 원천으로 연구자들의 주된 주목을 받아 온 것은 은행 부문이다. 기존 연구들은 은행이 부실기업의 생존 여부에 대하여 유의미한 유인(incentive)을 가지게 될 경우 그러한 기업에 대한 대출을 계속하여 연장하거나 증가시키게 되고, 이러한 행동이 한계기업의 생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한 유인 중, 재무구조가 취약한 은행이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에서 일어난 손실을 장부에 실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계기업에게 계속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현상인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이 많은 조명을 받아 왔다(Peek and Rosengren, 2005; Caballero et al., 2008; Acharya et al., 2019; Blattner et al., 2023). 이에 더하여, 은행의 소유주가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그 은행이 과도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그렇게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한계기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경로 또한 중요하게 연구되기도 하였다(La Porta et al. 2003; Peek and Rosengren 2005). 또한, 한계기업의 생존은 경제 내 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재배분되는 것을 막아 경제의 역동성 및 생산성을 저해한다는 것 역시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부문이 아닌 한계기업의 생존 및 지속의 새로운 원인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이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관계자 거래, related-party transactions)를 통하여 계속하여 자금을 수혈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살펴본

한계기업의 증가는 경제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을 보여주며, 또한 미래에 잠재적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이때 사용한 한계기업의 정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계기업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II 장에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 부문이 아닌
한계기업의 생존 및
지속의 새로운 원인으로써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를 통한
자금 수혈에 대해 살펴본다.

다. 이때 본고에서 사용하는 ‘기업집단’은 흔히 재벌 등의 호칭으로 불리는 대규모 기업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큰 규모의 소유권으로 연결된 모회사, 자회사,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의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 기업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기업집단이 내부 한계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유인은 기존 연구들이 밝힌 은행 부문의 유인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한계기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한계기업과 소유주를 공유하기 때문에 내부 한계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유인이 있다. 기업집단 내부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취약할수록, 그리고 한계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모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할수록 이러한 손실을 막아야 할 단기적인 유인이 강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은, 소속 한계기업에 투자한 지분의 손실이 실현된다면 기업집단 전체의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더욱 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한계기업의 지속적 생존이 보장된다면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배분, 더 나아가 경제 내의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은행-기업 간 관계와 비교할 때 기업 내부의 거래는 데이터를 통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성으로 인해 기존에 많이 연구되지 못하였으며, 데이터 확보에 따라 유사한 부문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존재하였다. 본고에서는 저자가 구축한 한국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내부거래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술한 측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집단이 내부적인 자금거래를 통하여 한계기업의 생존을 돕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하며, 추후 연구를 통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개별적으로 시행하여 기업집단 내의 자금거래가 집단 내 한계기업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인다. 먼저,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은 집단에 속하지 않은 한계기업과 비교하여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거나, 동시에 정상기업 상태로의 복귀율은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 혹은 한계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근본적으로 더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가능성(selection) 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기업집단의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treatment)이 그러한 생존율의 차이를 주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또한, 본고는 기업들이 기업집단 외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의 흐름과 내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의 흐름이 한계기업화 이후로 크게 다른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인다. 한계기업들의 총자산 대비 외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은 한계기업화 직전 3~4년 전부터 시작하여 빠르게 상승하여, 한계기업으로 판정받은 해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하락한다. 반면, 동일한 기업들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은 역시 한계기업화 직전 3~4년 전부터 빠르게 상승하나, 한계기업화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고점을 그대로 유지하는 흐름을 보였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은 아직 엄밀한 인과적 추론(causality)의 단계라고 하기는 힘들며 향후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는 초기 연구의 성격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고에서 보이는 각각의 분석은 이를테면 데이터의 각각의 단층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내부의 한계기업을 지원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핵심적인 가설에 부합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각각의 단계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의 높은 생존율 중 얼마만큼이 기업집단 내부에서의 차입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이고 있지 않다.

본고에서 제공하는 기업집단 내부에서 소속 기업들이 자원을 누구와 언제, 어떤 방식과 유인으로, 어떤 크기로 나누는지에 대한 분석은 향후 기업 지원정책의 설계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언론의 경종과 같이 경제에 적체된 한계기업들이 금리의 상승 및 정책 금융의 축소와 함께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커진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설계할 때 본고의 분석이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정책결정자가 각 기업의 도산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생존가능성 및 정상기업 상태로의 회복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업집단의 정보를 얼마나, 또 어떤 방식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에 대하여 기업이 내생적으로 반응하여 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이 선행된 후 후속연구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은 정부가 생산성 및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정책금융, 재정 지원 혹은 세제혜택을 주는 경우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집단이 자원을 회생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과 어떻게 공유하

본고는 기업들이 기업집단 외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의 흐름과 내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의 흐름이 한계기업화 이후로 크게 다른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인다.

한계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을 상실하여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자금 수혈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기업을 지칭한다.

는지에 대한 분석은 정부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의 실제 혜택이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보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본고의 제Ⅱ장에서는 한계기업의 정의와 경제 내 한계기업 현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다. 제Ⅲ장에서는 기업집단 내에 존재하는 한계기업의 현황과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한계기업의 연결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정리한다.

II. 한계기업 정의 및 현황

1. 한계기업의 정의

가. 한계기업의 정의

한계기업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통한 이익 창출 능력을 상실하여 외부에서의 지속적인 자금 수혈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한 기업을 지칭한다.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자력으로 생존하거나 성장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판단된다. 데이터를 통하여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연구자들은 여러 기준을 이용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준은 이자보상배율로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하여 영업이익³⁾이 이자비용보다 작은 경우, 즉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경우를 한계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삼는다.

$$\text{이자보상배율} = \text{영업이익} / \text{이자비용}$$

단순히 한 해의 저조한 영업성적을 이용하여 한계기업을 정의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은행은 3년 이상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경우를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에서는 이 기준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해외를 포함한 일부 연구에서는 이에 더하여 영업이익 창출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 초기 창업기업을 제외하기 위하여 업력이 5년 이상인 기업만을 보거나, 레버리지가 동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기업만을 보거나, 과도하게 낮은 이

3) 이때 영업이익을 대신하여 EBIT(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을 사용하는 등, 연구자마다 세부적인 지표의 차이가 조금씩 존재할 수 있다.

자율로 자금을 빌리고 있는 기업만을 보거나, 혹은 연간 실질 매출액이 연속하여 감소하기를 요구하는 등(Favara et al., 2022) 조금씩 변형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재무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한계기업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보다는 은행이 기업에게 위험을 고려한 효율적인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지(subsidized lending) 여부를 중점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Caballero et al., 2008).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존 분석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경우'를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삼는다.

나. 국내 한계기업 정의의 특성

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경우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기관이 하나의 통일된 정의로 한계기업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다른 국가의 기관들의 경우 상술한 것과 같이 각기 다양한 기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금씩 변형된 기준을 사용하였을 경우 경제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상당히 다른 규모로 파악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Favara et al.(2021)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 미국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으로 판정되는 기업의 비율은 이자보상배율과 업력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레버리지와 실질 매출액의 감소를 함께 기준으로 삼을 경우 10% 미만까지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즉, 한계기업의 비중을 통하여 경제 내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으로 일관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재확인 필요적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뿐 아니라 많은 기관에서 역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연속으로 1에 미달하는 경우'를 공통적으로 한계기업의 정의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변동(shock)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국내에서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해당 정의를 만족하게 되는 순간 외부자금시장에의 접근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분석에 이용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자금차입에 미치는 영향의 좋은 사례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이다. 이에 따르면 국내의 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자보상배율(영업

본고에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존 분석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3년 이상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는 경우'를
한계기업의 기준으로 삼는다.

경제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최근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은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이익/금융비용)이 1.0 미만 기업”에 해당할 경우, 즉 한계기업상태에 접어들 경우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인지 여부에 대한 세부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부실징후기업으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에 워크아웃 혹은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에 대한 신규여신 제공을 중지해야 하고, 만기가 도래한 여신을 연장할 수 없는 등 강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⁴⁾

2. 한계기업 현황

경제 내 한계기업의 비중이 최근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종은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예를 들어 최현경·안지연(산업연구원, 2021)의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 중 제조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한계기업의 비중이 15.63%에 달하며, 이는 2010년의 6.69%에서 9%p 가까이 증가한 비중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2023년 3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3 경제전망 시리즈」에서는 상장기업을 이용하여 한계기업의 비중을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의 경우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9년 17.1%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27.1%로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에서도 동기간 23.5%에서 31.4%로의 큰 증가가 있었다고 추정하였다.

해외에서도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하여 확장적인 통화정책 및 기업을 보조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는 동일하게 존재하였고, 이러한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에 대한 관심과 우려 역시 공유하고 있다. Banerjee and Hoffmann(2022)은 OECD 소속 국가의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1980년대부터 2017년까지의 긴 시계열을 비교하였고, 한계기업의 비중이 동기간 약 4%에서 약 15%로 증가하였음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미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Favara et al.(2021)은 미국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을 추산하며, 사용하는 한계기업의 정의에 따라서 2020년 기준 약 10~20%가량의 다양한 비중이 추산될 수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IMF는 2021년 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선진국 전반에서 COVID-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위기가 금융위기 등 과거의 경기침체와는 다르게 기업의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정책금융 및 정부규제를 통한 기업 보호에 영향을 받은 결과임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로를 통해 생성된 한

4) 이는 전체 규정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요약한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상시평가 운영협약」의 원문을 참조

계기업이 한 번에 도산하여 경제에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채권자 및 은행에게 부실기업을 꾸준히 정리하도록 권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의 작성시점인 2023년 들어 IMF는 이례적으로 여러 건의 워킹페이퍼를 통해 한계기업의 현황 및 확장적 통화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Albuquerque and Mao, 2023; Albuquerque and Iyer, 2023; Jafarov and Minnella, 2023).

Ⅲ. 실증분석 및 결과

1. 데이터

이 연구에서는 2010~2020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후 외감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와 한계기업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이용되는 것은 두 종류의 데이터로, 기업들의 일반적 재무정보와 기업집단 내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정보이다.⁵⁾

먼저 기업의 일반적 재무정보는 한국기업평가의 KoDATA(구 Korea Enterprise Data; KED)를 이용한다. KoDATA는 상장기업, 외감기업과 비외감 기업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의 국내 소재 기업에 대한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본고에서는 각 기업의 한계기업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영업이익과 이자비용, 총자산, 총부채와 폐업 여부 등의 정보를 이용한다.

또한 기업집단 내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데이터는 외감기업이 금융감독원 DART 웹사이트⁶⁾에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의 주석에 있는 정보를 저자가 웹스크레이핑을 통하여 구축하고 정리한 자료를 이용한다. 이 데이터는 각 외감기업이 해당 기업과 특수 관계에 있는 각 기업과 얼마만큼의 매출, 매입, 자금 대여, 자금 차입을 하였는지 정리하고 있다. 이는 총 52,717개의 기업, 그리고 265,583개에 달하는 연간 사업 및 감사보고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이다. 이 데이터는 각 기업이 해당 기업과 50% 이상의 지배력(control rights)으로 이어져 있는 모든 기업들 등 여러 특수관계자 중 어떤 기업과 얼마나 거래하는지를 보인다.⁷⁾

마지막으로 Orbis 데이터베이스는 외감기업 중 어떤 기업이 기업집단에 속

이 연구에서는 2010~2020년 동안 국내에 소재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특수관계기업이 하나 이상 있는 기업들의 집단 내부거래와 한계기업화에 대하여 분석한다.

5) 비외감기업의 경우 기업집단 소속 여부 및 관계사 간 거래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 <https://dart.fss.or.kr>

7) 자료의 구축과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ong(2023)에 보다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Orbis 데이터베이스는 Moody's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총 약 4억건 이상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기업관련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Orbis 데이터베이스는 Moody's에서 제공하는 전 세계 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총 약 4억건 이상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기업 관련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Orbis는 대규모 기업재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중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장 폭넓게 담고 있으며 본 연구는 Orbis에서 이러한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였다. 이전 문단에서 상술된 공시에 기반한 특수관계자 거래 데이터는 기업이 특정 관계사와 해당 회계연도 내에 매출, 매입, 대여, 차입 중 어떠한 거래라도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관계사가 관측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외감기업 중 관계사가 있지만 관계사와 어떠한 거래라도 하지 않았던 기업이 기업집단 비소속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Orbis 데이터베이스의 기업집단 정보를 함께 활용하였다.

<표 1> 연도별 관측치 관련 기초통계량

(단위: 개, %)

연도	외감 기업 수	한계기업 여부 확인 가능 외감기업	기업집단 소속 외감기업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	기업집단 비소속 한계기업	한계기업 비중
(1)	(2)	(3)	(4)	(5)	(6)	(5+6)/(3)
2013년	21,105	16,061	15,451	2,347	673	0.188
2014년	22,857	17,122	16,658	2,516	650	0.185
2015년	23,760	17,534	17,238	2,511	595	0.177
2016년	25,981	18,571	18,779	2,562	570	0.169
2017년	28,127	19,969	20,267	2,665	606	0.164
2018년	30,197	21,359	21,792	3,001	699	0.173
2019년	30,762	23,158	23,586	3,568	808	0.189
2020년	25,440 ⁸⁾	19,919	20,015	3,194	588	0.190

출처: KoDATA, Orbis, 저자 작성 데이터

2. 한계기업과 기업집단 소속 여부

이 절에서는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를 통하여 기업집단들이 내부의 한계기업을 자금 거래 등을 통하여 지원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기업집단이 내부자금거래를 통해 집단 소속 한계기업을 지원한다는 가설을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인다. 먼저, 경제 내의 한계기업들은 기업집단의 내부에 속할 경우 기업집단 비소속인 한계기업들보다 높

8) 마지막 해의 관측치 숫자가 적은 것은 기업 데이터베이스 혹은 저자의 기업정보 구축 시점 이후에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공시한 기업들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추후 2021년, 2022년의 기업정보를 보완하며 처리 및 보완할 예정이다.

은 생존율을 갖는다는 점을 보였다. 이러한 생존율의 차이는 기업집단의 지원 (treatment)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보다 높은 장기적 성장가능성 등 우수한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선택적으로 이루었다는 가설(selection)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대체 가설을 부정하는 실증적 증거로 본 연구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단독기업인 경우보다 오히려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기업이 기업집단 외부에서 차입한 자금이 한계기업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여, 내부에서 차입한 자금은 훨씬 더 강건하게 이전의 높은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가설을 보이기 위하여 이 연구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은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한 단층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에 가깝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통하여 소속 한계기업에 자금을 대차해준다’는 가설이 본고에서 분석한 데이터의 여러 측면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본고에서 언급하는 일부의 대표적인 대체가설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의 여러 측면을 설명할 수 있는 대체적인 가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채택하고 있는데, 기업에 대한 연구, 특히 기업집단에 대한 연구의 경우 ‘유사한 기업·기업집단’을 정의하는 것이 어렵고 기업의 경영상태와 상관 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정책적인 변이가 드물다는 한계로 인해 준실험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인과관계를 보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 한계기업의 생존율과 정상기업 복귀율

한계기업의 폐업률과 정상기업상태로의 복귀율⁹⁾이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였다.

$$h(t) = h_0(t) \exp(\beta I_{group} + \gamma_1 x_1 + \gamma_2 x_2 + \dots + \gamma_p x_p) \quad \text{식 (1)}$$

식 (1)은 기업이 한계기업화한 이후부터 매년 폐업, 청산, 해산 혹은 휴업(이

경제 내의 한계기업들은 기업집단의 내부에 속할 경우 기업집단 비소속인 한계기업들보다 높은 생존율을 가지나 정상경영상태로의 복귀율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9) 여기에서 정상기업상태로의 복귀란 한계기업이 1 이상의 이자보상배율을 기록하는 경우를 뜻한다.

기업집단이
한계기업화한 이후부터
매년 폐업상태에 달할
위험비(hazard ration)가
해당 기업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후 간략화하기 위하여 “폐업”으로 지칭) 상태에 달할 위험비(hazard ratio), 즉 $h(t)$ 가 해당 기업의 다양한 특성 x_i 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 (I_{group})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였다. 이때 기업의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수로서 기업의 크기를 보일 수 있는 총자산, 업력, 레버리지, 총자산 대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계기업화하는 연도를 $t = 0$ 으로, 한계기업화 다음 연도를 $t = 1$ 로 한 위와 같은 분석에서 동일 ‘시점’에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일부 분석에서는 연도(calendar year) 고정효과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표 2>는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이 폐업에 달할 확률은 비소속기업보다 유의미하게 더 낮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1)과 포함하지 않은 (2) 모두에서 폐업상태로 이동할 위험비는 유의미하게 낮아 연도 고정효과를 포함한 경우 기업집단에 소속된 한계기업이 연중 폐업할 확률이 $\exp(-0.173) = 0.841$ 배라는 것, 즉 약 15.9% 더 낮다는 결과를 보였다.

만일 이러한 폐업률의 차이가 보다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이루는 선택을 내린다는 차이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들이 정상기업으로 회복할 확률 역시 단독기업보다 더 높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장기적 성장가능성 등 보다 우수한 특

<표 2> 한계기업의 폐업 및 정상 기업 복귀

구분	폐업		정상화	
	(1)	(2)	(3)	(4)
기업집단 소속 여부	-0.173** (0.054)	-0.127* (0.052)	-0.058** (0.011)	0.002 (0.011)
총자산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업력	-0.062** (0.004)	-0.063** (0.004)	-0.019** (0.000)	-0.021** (0.000)
레버리지	0.000 (0.000)	0.000 (0.000)	-0.006** (0.000)	-0.005** (0.000)
영업활동현금흐름/ 총자산	-0.079** (0.013)	-0.078** (0.013)	0.124** (0.005)	0.106** (0.005)
연도 고정효과	0	X	0	X
관측치	85,318	85,318	83,795	83,795
로그 우도	-13,175.2	-16,835.1	-307,332.7	-402,407.6

주: ** $p < 0.01$, * $p < 0.05$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각 열은 기업-연도 수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 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1)열과 (2)열은 한계기업화 이후 해당 기업들이 폐업에 달할 위험비(hazard ratio)를, 그리고 (3)열과 (4)열은 한계기업화 이후 해당 기업들이 한계기업 상태를 벗어나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위험비를 분석한다. 해당 분석은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KoDATA 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괄호 안에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제공하였다.

출처: 저자 작성

성을 지닌 상태에서 한계기업화상태에 돌입한다는 가설하에서도 역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정상화율이 더 높을 것이다.

<표 2>의 (3)과 (4)는 이렇게 폐업률의 차이가 기업집단의 지원(treatment)이 아닌 기업집단으로의, 혹은 한계기업으로의 선별(selection)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가설이 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연도고정효과를 포함한 (3)에서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연도 중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확률이 $\exp(-0.058) = 0.944$ 배로,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한계기업보다 오히려 5.8% 더 낮았다. 고정효과를 포함하지 않은 (4)에서도 역시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정상화율이 더 높다는 가설은 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동시에 위와 같은 결과는 통제되지 않은 기업 간의 차이에 의해 주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3>은 데이터 내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단독기업 간의 특성을 각각 정리하였다. 정리 결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조금 더 자산 및 매출규모 등 기업의 규모가 크고, 레버리지가 조금 더 작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3>은 데이터 내 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단독기업 간의 특성을 각각 정리하였다. 정리 결과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조금 더 자산 및 매출규모 등 기업의 규모가 크고, 레버리지가 조금 더 작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표 3> 기업집단과 단독기업 기술통계(2020년)

(단위: 년, 억원)

변수	기업집단		단독기업	
	중간값	관측치	중간값	관측치
업력	18	19,006	18	5,192
총자산	316.842	18,820	184.021	5,192
매출	224.914	18,826	152.652	5,144
레버리지	0.601	18,820	0.652	5,142
영업활동현금흐름/자산	0.040	18,820	0.038	5,142
투자액	28.191	18,838	12.441	5,146
투자액/총자산	0.082	18,838	0.069	5,146
한계기업화 이후 평균기간	5	6,916	3	1,403
한계기업 비율	0.160		0.109	

주: 해당 분석은 2020년 KoDATA 상의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저자가 작성하였다. 한계기업화 이후 평균기간의 경우 데이터 내의 한계기업만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수의 관측치를 지니고 있다.

출처: 저자 작성

<표 4>는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집단 내 소속기업과 단독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통하여 통제된 후 한계기업의 생존율과 정상기업 복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이고 있다. 매칭과정에서 본고는 마할라노비스 거리(Mahalanobis distance)를 기준으로 1:1 매칭을 활용하여 단독기업인 한계기업들과 동질적인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을 추출하였다. 이때 매칭에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업력, 총자산, 총부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

<표 4>는 기업집단 내 소속기업과 단독기업의 다양한 특성이 유사하도록 매칭을 통하여 통제한 후 한계기업의 생존율과 정상기업 복귀율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이고 있다.

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총자산 대비 투자액을 활용하였으며 이외에 산업코드 중분류와 한계기업화된 연도가 정확히 같은(exact matching) 기업으로 매칭하였다. 또한 매칭에 사용한 정보는 한계기업화되기 3년 전의 정보와 5년 전의 정보를 각각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3>의 결과를 뒷받침하며, 더 나아가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이 폐업의 위험비가 훨씬 작다는 결과를 보인다.

<표 4> 한계기업의 폐업 및 정상 기업 복귀(매칭 샘플)

구분	한계기업화 3년 전과 매칭		한계기업화 5년 전과 매칭	
	폐업	정상화	폐업	정상화
기업집단 소속 여부	-0.614** (0.152)	-0.063* (0.031)	-0.520* (0.245)	-0.038 (0.040)
관측치	10,927	10,764	6,429	6,364

주: ** p < 0.01, * p < 0.05 결과가 제시하고 있는 각 열은 기업-연도 수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의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1)열과 (2)열은 한계기업화된 기업의 한계기업화 3년 전 정보를 이용하여 매칭한 결과 계산한 해당 기업들이 폐업에 달할 위험비(hazard ratio)와 한계기업화 이후 해당 기업들이 한계기업 상태를 벗어나 정상기업으로 복귀할 위험비를 보인다. (3)열과 (4)열은 동일한 분석을 한계기업화 5년 전 정보를 이용하여 매칭한 결과를 제공한다. 해당 분석은 2005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KoDATA 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괄호 안에 강건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제공하였다.

출처: 저자 작성

이때, 정상기업 복귀율의 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은 소속 기업이 한계기업화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두 기업 중 한 기업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어있고 다른 한 기업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기업들이 한계기업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 경우에 더 큰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 또한 생각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들은 향후 성장가능성이 보다 더 낮은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이 정상기업 상태로의 복귀율 차이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¹⁰⁾ 반면, 기업집단이 소속 한계기업을 내부거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생존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한계기업을 정상경영상태로 복귀시키는 데에는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관측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세부 가설들을 개별적으로 식별(identify)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 세부 가설 모두가 기업집단이 내부 한계기업을 생존시키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본고의 핵심적인 가설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0)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로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이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인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설로 기업집단이 소속 한계기업에게 생존을 돕기 위한 지원을 진행하는지가 떠오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나. 기업집단 내부와 외부에서의 자금차입

그렇다면 무엇이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한계기업의 생존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일까? 이 소절에서 본고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한계기업은 비소속기업과 다르게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기업들에게서 자금을 차입해올 수 있고, 이러한 내부자금거래가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 혹은 잠재적 한계기업의 생존을 돕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1) 이벤트 스터디 회귀분석

본고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벤트 스터디 회귀식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보인다.

$$y_{it} = \alpha + \beta_t' \sum_{eventyear \neq 0} \mathbb{I}_{eventyear} + \phi_i + \theta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이 분석은 기업이 집단 내부와 외부에서 융자해 온 자금이 해당 기업이 한계기업이 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인다. 여기에서 y_{it} 는 각 기업 (i)이 각 연도(t)에 가진 레버리지 (=총부채 / 총자산)를 의미한다. 식 (2)의 회귀식을 추정할 때 본고는 기업집단 내부 소속 기업들에게서 빌려온 자금에 대한 레버리지 (= 기업집단 내부에서 빌린 부채 / 총자산)와 기업집단 외부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레버리지 (= (총부채 - 내부부채) / 총자산)를 따로 추정하여 보고한다.¹¹⁾

독립변수로 우선 $\sum_{eventyear \neq 0} \mathbb{I}_{eventyear}$ 는 한계기업이 된 해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를 기점으로 전년도(event year = -1), 다음 연도(event year = 1) 등에 대한 지표변수(indicator variable)이다. ϕ_i 는 기업 고정효과를, θ_t 는 2013년, 2014년 등 각 시점에 대한 고정효과를 의미한다. θ_t 의 경우 각 해의 경기 등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회귀식에 포함되었다.

식 (2)의 추정 결과값은 <표 5>에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값은 기업의 고정된 특성과 각 연도(calendar year)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세선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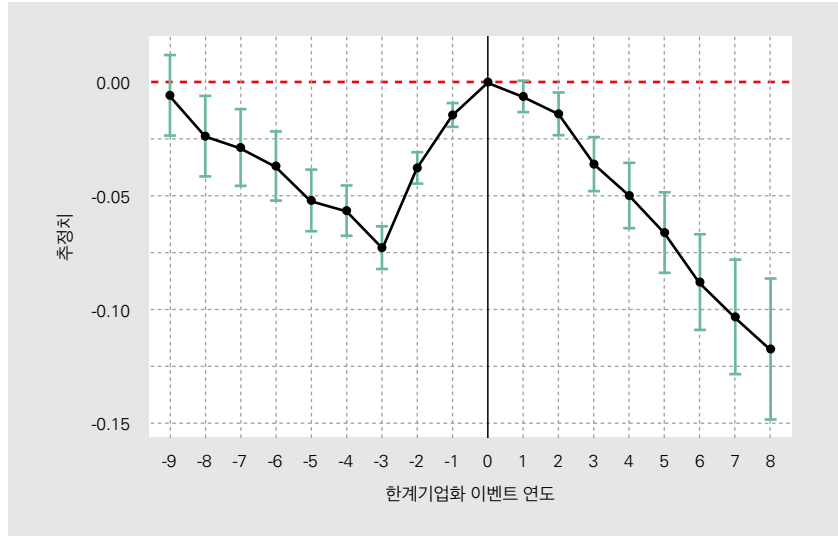
우선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기업의 자산 대비 외부에서 빌려오는 자금의 비중은 한계기업화 직전 약 3개년도 동안 빠르게 증가하고, 이후 급격히 반전하여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외부 차입금액에 의한 레버리지는 한계기업화

본고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한계기업은 비소속기업과 다르게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다른 기업들에게서 자금을 차입해올 수 있고, 이러한 내부자금거래가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 혹은 잠재적 한계기업의 생존을 돕고 있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11) 이와 같이 샘플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pool)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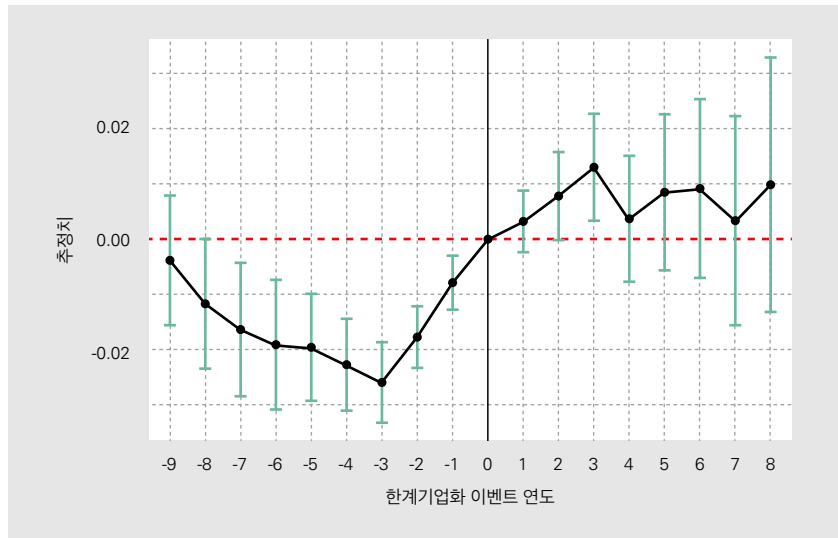
식 (2)의 추정 결과값은 <표 5>에서 정리하였으며, 또한 [그림 1]과 [그림 2]를 통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값은 기업의 고정된 특성과 각 연도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세선 분석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한계기업화 전후 외부 차입금 추이



주: 청색 수직 밴드는 95% 신뢰구간
출처: 저자 작성 데이터

[그림 2]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한계기업화 전후 내부 순차입금 추이



주: 청색 수직 밴드는 95% 신뢰구간
출처: 저자 작성 데이터

12) 이러한 분석은 폐업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진행하였으나, 폐업한 기업을 포함한 분석에서도 질적으로 (qualitatively) 다르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이후 두 번째 해에는 한계기업으로 판정된 해와 비교하여 외부에서 빌려온 자금은 약 1.4%p, 그다음 두 해에는 각각 3.6%p, 5.0%p 하락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¹²⁾ 또한, 이러한 특징은 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기업들에게서도 나타나는데, 이들 기업의 레버리지는 한계기업화되

<표 5> 식 (2)를 이용한 이벤트 분석 추정 결과

구분	기업집단 외부 차입	기업집단 내부 차입	내부 순(net) 차입	기업집단 비소속기업의 외부자금
year -9	-0.006 (0.009)	-0.007 (0.005)	-0.004 (0.006)	-0.026* (0.013)
year -8	-0.024** (0.009)	-0.012* (0.005)	-0.012 (0.006)	-0.039** (0.014)
year -7	-0.029** (0.009)	-0.018** (0.005)	-0.016** (0.006)	-0.055** (0.014)
year -6	-0.037** (0.008)	-0.019** (0.005)	-0.019** (0.006)	-0.074** (0.013)
year -5	-0.052** (0.007)	-0.023** (0.004)	-0.020** (0.005)	-0.067** (0.012)
year -4	-0.056** (0.006)	-0.023** (0.003)	-0.023** (0.004)	-0.066** (0.011)
year -3	-0.073** (0.005)	-0.025** (0.003)	-0.026** (0.004)	-0.099** (0.009)
year -2	-0.038** (0.004)	-0.016** (0.002)	-0.018** (0.003)	-0.062** (0.007)
year -1	-0.014** (0.003)	-0.009** (0.002)	-0.008** (0.002)	-0.021** (0.005)
year 1	-0.006 (0.004)	0.003 (0.002)	0.003 (0.003)	-0.002 (0.007)
year 2	-0.014** (0.005)	0.004 (0.003)	0.008* (0.004)	-0.007 (0.009)
year 3	-0.036** (0.006)	0.005 (0.004)	0.013** (0.005)	-0.011 (0.012)
year 4	-0.050** (0.008)	-0.003 (0.005)	0.004 (0.006)	-0.029 (0.015)
year 5	-0.066** (0.009)	-0.002 (0.006)	0.009 (0.007)	-0.041* (0.018)
year 6	-0.088** (0.011)	-0.006 (0.007)	0.009 (0.008)	-0.046* (0.023)
year 7	-0.103** (0.013)	-0.012 (0.008)	0.003 (0.010)	-0.040 (0.027)
year 8	-0.117** (0.016)	-0.012 (0.010)	0.010 (0.012)	-0.009 (0.035)
관측치	58,151	58,274	58,387	15,057
기업 수	9,500	9,523	9,528	3,876
연도 수	11	11	11	11

주: ** p < 0.01, * p < 0.05

출처: 저자 작성

기 전에 빠르게 상승했다가 한계기업화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추세는 한국에 한정되지 않고, 약 63개국의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라서 국내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화 이후의
레버리지 급락의
일정 부분은
자산을 정리하여
외부 차입금을
감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연구한 Banerjee and Hofmann(202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한계기업의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러한 패턴이 한계기업화 직전 해당 기업들의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빠르게 하락하며 일어났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레버리지의 급락은 이 기업들이 증자 등 자본금을 늘려 빚을 갚는 과정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후속 조정은 국내 기업 역시 한계기업화 직전부터 총 자산이 빠르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나, 증자 등의 강한 경향성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인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경우 한계기업화 이후의 레버리지 급락의 일정 부분은 자산을 정리하여 외부 차입금을 감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반면, 기업집단 내부에서 차입한 금액은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집단 내부에서 차입해온 금액의 경우 한계기업이 된 시점부터 거의 하락하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계기업화하는 기업이 동일 기업집단 내부에 빌려주고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기업집단 내부 순(net) 차입금액의 경우 한계기업화한 이후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집단 내부의, 은행이 아닌 다른 소속 기업들에서 차입해 오는 금액이 일반적인 레버리지와는 한계기업화에 대해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Banerjee and Hofmann(2022)에서 보였던 전 세계 한계기업들의 일반적인 레버리지의 움직임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현재 단계에서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규모 기업집단보다 작은 기업집단들의 행동을 통하여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집단의 규모에 가중치를 두지 않은 현재의 분석에서 보다 숫자가 많은 소규모 기업집단이 관측치를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보다 많은 외부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집단의 경영 실권(control power)을 지닌 소유주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로 인하여 행동양식이 다를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내부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감독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¹³⁾ 현재까지의 분석이 다루고 있는, 기업집단의 위기에 처한 집단 내 개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인 거래의 조건에 달려있을 것이나, 이러한 내부거래가 정부의 엄격한 감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

13) 「공정거래법」 제45조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4조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이 소속기업이 보다 우호적으로 여신을 수여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 역시 규제하고 있다.

는 대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거래는 그러한 고려에 대한 필요가 크지 않은 소규모 기업집단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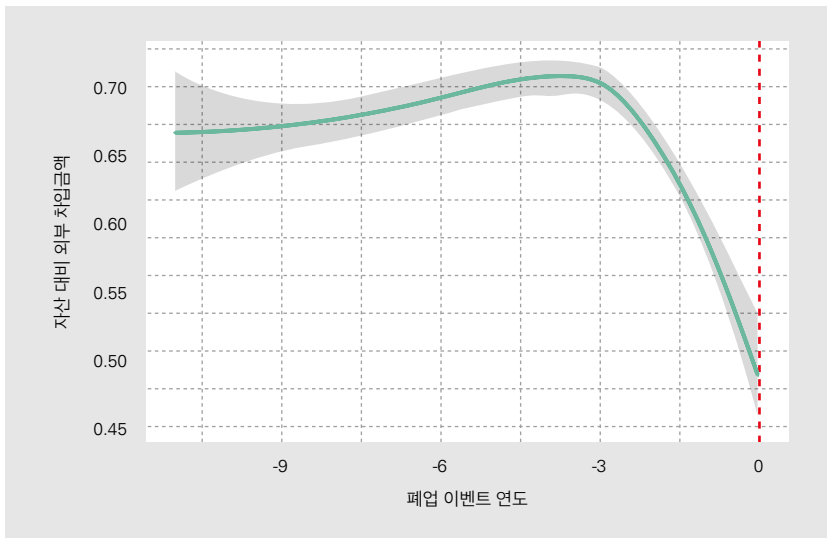
한계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이러한 내부 자금의 흐름 이외에도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 등 외부 투자자들의 경우 특정 한계기업이 기업집단에 속해있다는 정보에 의해 해당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 혹은 대출연장에 대해 보다 호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기업집단은 내부에 소속된 한계기업의 외부자금시장에서의 차입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담보 혹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분석은 한계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가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차입에 의해 주도되었거나 온전히 결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 연구는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시장이 한계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며 후속 연구가 진행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의 내부자금시장이 한계기업의 생존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며 후속 연구가 진행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폐업기업을 활용한 강건성 검증

이때, 한계기업이라는 명칭 및 그 정의가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정해진 비생산적 기업의 기준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림 1]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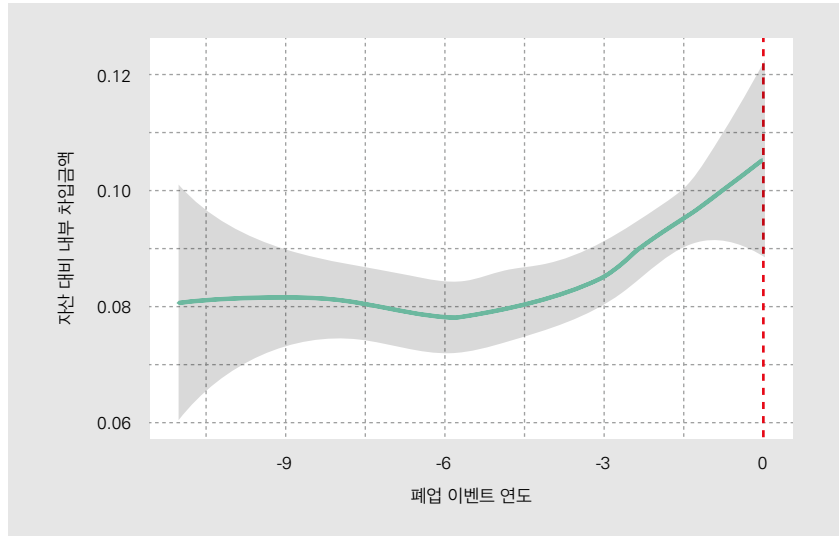
[그림 3] 기업집단 소속 폐업기업의 자산 대비 외부 차입금액



주: 회색 영역은 95% 신뢰구간
출처: 저자 작성 데이터

[그림 3]과 [그림 4]는 데이터 기간 내 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여, 외부투자자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인다.

[그림 4] 기업집단 소속 폐업기업의 자산 대비 내부 차입금액



주: 회색 영역은 95% 신뢰구간
출처: 저자 작성 데이터

[그림 2]에서 보이는 모습이 반드시 비생산적인 기업에 대해 금융시장과 기업집단 내부거래가 보이는 서로 다른 행동양식을 대변한다고 해석하는 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의문을 보완하기 위해 [그림 3]과 [그림 4]는 데이터 기간 내 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여, 외부투자자와 기업집단 내부거래의 행동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인다. 즉, 이 두 그래프는 한계기업화 여부와 상관 없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기업 중 데이터 기간 중 폐업에 달한 기록이 있는 모든 기업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들의 외부 및 내부 차입금이 어떻게 다른 움직임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다.¹⁴⁾

이러한 폐업 직전의 기업들에 대한 분석에서도 역시 [그림 1]과 [그림 2]와 유사한 양상을 재확인할 수 있다. 외부 투자자들에게서 이들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폐업 이전 약 3~4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동일한 기업들의 기업집단 내부거래를 통한 자금조달은 외부자금이 줄어드는 3~4년 전부터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업집단들이 내부의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게 외부시장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경우가 있다는 단편적 증거를 다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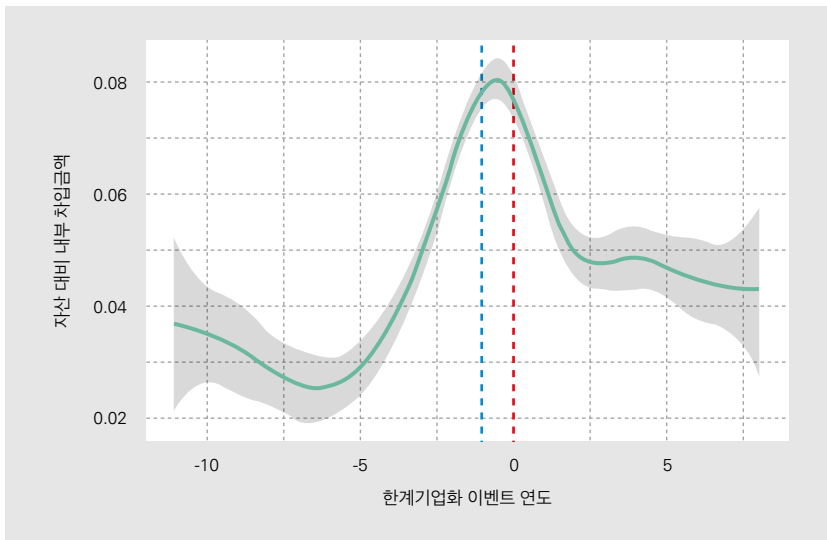
14) [그림 3]과 [그림 4]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추세선으로, y축의 스케일은 같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준한계기업(near-zombie firms)을 이용한 강건성 검증

본 연구는 기업의 한계기업 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외부자금차입비용의 상승을 핵심적인 변이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실제로 기업의 경영, 그리고 기업집단의 내부적인 자금거래와 유의미하게 연동되어있는지 보이기 위해, 본 소절에서는 준한계기업을 이용한 간단한 플라시보 테스트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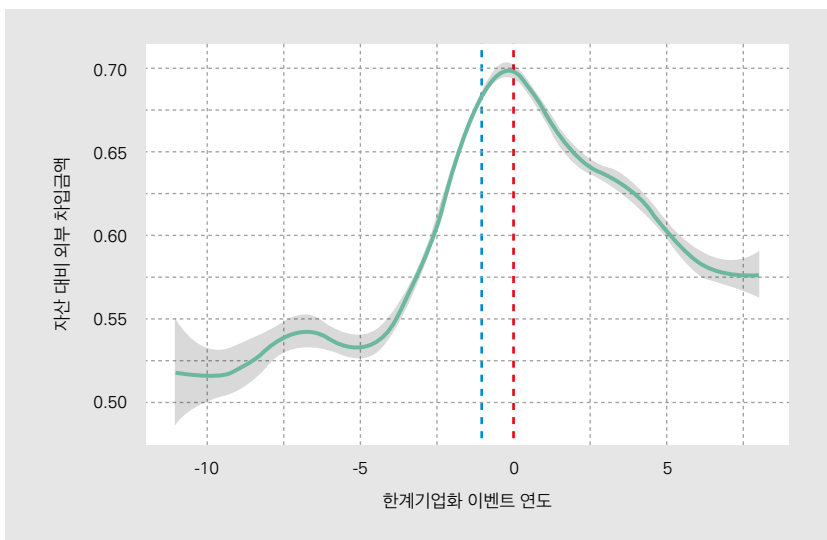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업의 한계기업 상태로의 전환에 따른 외부자금차입비용의 상승을 핵심적인 변이로 사용하고 있다.

[그림 5] 플라시보: 준한계기업의 자산 대비 내부 차입금액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 플라시보: 준한계기업의 자산 대비 외부 차입금액



출처: 저자 작성

여기에서 준한계기업은
 연속하여 2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였으나,
 3년째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초과하여
 공식적인 한계기업 상태로는
 전환되지 않은
 기업들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준한계기업은 연속하여 2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하였으나, 3년째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초과하여 공식적인 한계기업 상태로는 전환되지 않은 기업들을 지칭한다. 만일 국내에서 사용되는 공식적인 한계기업에 대한 정의가 너무 엄격하여 기업이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전부터 외부자금시장이 해당 기업에 대한 용자에 부정적이라면, 해당 기업들은 한계기업과 크게 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5]와 [그림 6]은 이러한 대체가설과는 다르게, 준한계기업의 경우 내부에서 차입한 자금과 외부 차입자금이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에 미달한 해인 파란색 점선($t = -1$), 그리고 계속하여 낮은 이자보상배율을 가졌더라면 한계기업으로 판명받았을 빨간색 점선($t = 0$)을 기점으로, 직전까지 빠르게 레버리지가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외부 및 내부 차입금액 모두에 대해 보이고 있다. 즉, 이 기업들을 통한 플라시보 테스트는 내부와 외부 차입금액의 서로 상이한 움직임이 한계기업화된 기업들에게서만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어, 이것이 기업집단이 소속기업이 한계기업화된으로서 발생한 외부자금 차입비용의 불연속적인 상승에 반응하여 보이는 반응일 가능성이 높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기업집단들이 소속 기업이 한계기업 상태에 접어들 경우 은행 등 외부에서의 차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소속기업이 한계기업화하기 전에 해당 소속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소속 준한계기업과의 매출 및 매입 거래행태를 변경하여 일어나거나, 혹은 해당 기업의 보다 높은 이자율로 이루어져 있는 차입계약을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기업집단 내부자금 차입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행동이 실제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분석은 각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부당행위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강도로 감독받는지 여부와 관계되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다. 한계기업의 자산 및 자본 변동

또한, 현재까지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한계기업의 외부 및 내부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한 레버리지의 변동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지금까지의 분석은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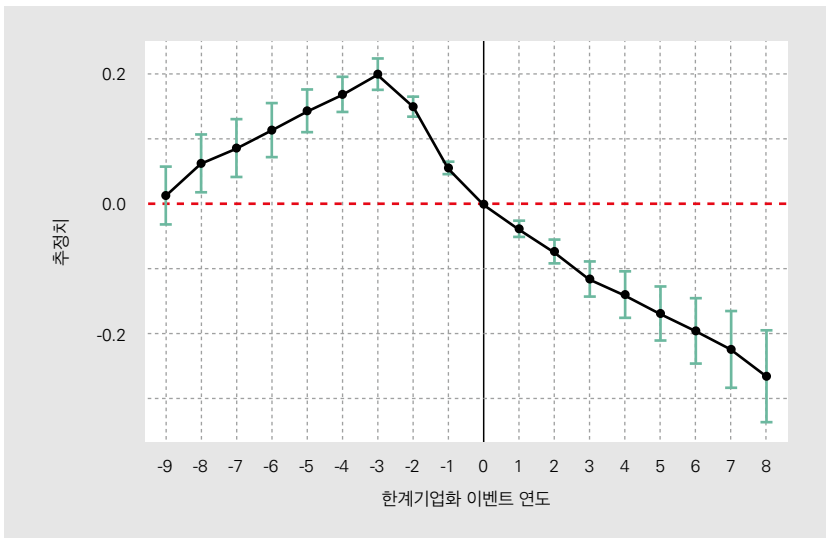
이 한계기업 상태에 접어든 직후 빠른 속도로 자산 대비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의 비중을 줄여나감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기업집단 소속여부에 상관없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 또한 보였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신규 용자 제공 혹은 현존하는 용자에 대한 만기 연장 등을 제공하려 할 유인이 없음은 자명하다. 하지만, 채무를 지고 있는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의 크기가 이자비용보다도 작은 상태에서 어떻게 레버리지를 축소할 수 있는가?

본고는 Banerjee and Hofmann(2022)을 따라 한계기업들의 자산의 크기 변화와 유상증자 여부를 함께 살펴본다. 즉, 선행연구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계기업들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빚을 갚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빚을 갚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한다.

[그림 7]과 [그림 8] 그리고 <표 6>은 식 (2)에서 수행한 이벤트 스터디 회귀 분석을 데이터 기간 중 한계기업화된 모든 기업들에게 동일하게 수행하되, 종속변수를 $\log(\text{총자산})$ 과 $\log(\text{자본금})$ 으로 삼아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국내 기업들은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한계기업화 약 3년 전부터 빠른 속도로 자산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계기업화 이후 꾸준하고 빠르게 자산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여 외부 차입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했다는 것으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보였던 것처럼 한계기업들이 자산을 급하게 처분하여 빚을 갚거나,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여 빚을 갚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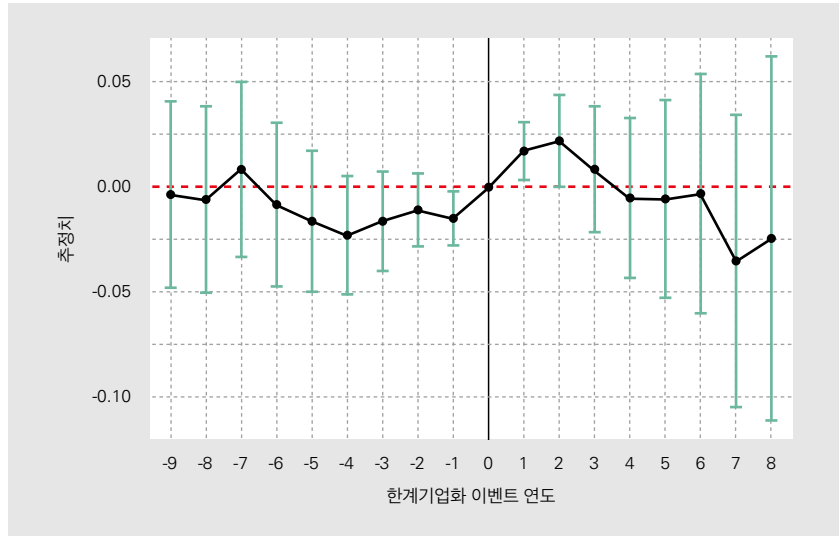
[그림 7] 한계기업의 한계기업화 전후 $\log(\text{총자산})$ 추이



주: 청색 수직 밴드는 95% 신뢰구간
출처: KoData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한계기업화 이후
 꾸준하고 빠르게
 자산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것은,
 이러한 기업들이
 자산을 처분하여
 외부 차입금을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8] 한계기업의 한계기업화 전후 log(자본금) 추이



주: 청색 수직 밴드는 95% 신뢰구간
 출처: KoData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표 6> 식 (2)를 이용한 자산 및 자본 변동 분석 결과

구분	집단소속기업 log(총자산)	단독기업 log(총자산)	집단소속기업 log(자본금)	단독기업 log(자본금)
year -5	0.140** (0.017)	0.140** (0.026)	-0.016 (0.017)	-0.001 (0.023)
year -4	0.164** (0.014)	0.170** (0.023)	-0.023 (0.014)	-0.024 (0.018)
year -3	0.196** (0.012)	0.186** (0.019)	-0.016** (0.012)	0.007 (0.016)
year -2	0.151** (0.008)	0.132** (0.013)	-0.011 (0.009)	-0.008 (0.014)
year -1	0.054** (0.005)	-0.009** (0.002)	-0.008** (0.002)	-0.021** (0.005)
year 1	-0.034** (0.006)	-0.019 (0.011)	0.017* (0.007)	0.010 (0.010)
year 2	-0.072** (0.010)	-0.049** (0.017)	0.022* (0.011)	0.027 (0.017)
year 3	-0.115** (0.014)	-0.075** (0.023)	0.009 (0.015)	0.015 (0.021)
year 4	-0.138** (0.017)	-0.079** (0.028)	-0.005 (0.019)	0.025 (0.028)
year 5	-0.166** (0.022)	-0.085* (0.036)	-0.006 (0.024)	-0.020 (0.034)
관측치	58,943	15,034	57,560	14,686
기업 수	9,459	3,855	9,136	3,703

주: ** p < 0.01, * p < 0.05
 출처: 저자 작성

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log(자본금)을 종속변수로 이용한 [그림 8]의 경우 선형연구와는 다르게 국내 한계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진행했다는 강한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¹⁵⁾

라. 기업집단 소속 개별기업의 한계기업 지원 유인

기업집단이 소속된 한계기업에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외부자금시장과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고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내리기에 충분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가치판단 역시 내리고 있지 않으나, 해석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소절에서는 이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의 해석을 정리한다.

먼저, 이것은 소유권으로 연결된 기업집단이 은행 등 외부의 투자자보다 우월한 정보를 가졌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일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집단은 우월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채무기업이 중장기적으로는 우수한 생산성을 지닐 것이나 단순히 단기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한계기업에 대한 내부자금의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이 보다 높은 기업의 생존으로 이어지며, 집단 내 자원의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지닐 것이다. 또한,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 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계기업화한 소속 기업이 기업집단과 핵심적인 수직적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단순히 생산성 측면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집단에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핵심적인 부품을 생산하는 계열사가 도산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품 생산자를 찾고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드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경우라면 단기적인 금융비용의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핵심 부품 생산 한계기업의 생존을 위해 내부자금을 투입하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선행연구 중 일부는 기존 기업집단 내부의 자본시장(internal capital market)이 이렇게 긍정적인 자원의 재배분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였다. Almeida et al.(2015)는 그 중 대표적 연구로, 1997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분투자(equity investment)를 통해 자금을 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로 재분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한 신규 투자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극복하였다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기업집단 내부 자본시장의

기업집단이 소속된 한계기업에 빌려준 자금에 대하여 외부자금시장과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소절에서는 이에 대해 가능한 세 가지의 해석을 정리한다.

15) 유상증자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림 8]에서처럼 자본금(capital stock)을 확인하는 것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을 합친 금액이 변동하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해당 변수를 통한 분석결과 역시 한계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기업집단의 세부적인 유인구조에 대한 분석은 기업집단 전체뿐 아니라 소속된 내부 계열사 각각이 어떠한 유인으로 한계기업 상태에 돌입한 계열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순기능은 Buchuk et al.(2014) 등의 결과에서도 보인 바 있다.

두 번째로, 본고에서 현재까지 보인 내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단순히 지배권(control power)을 지닌 소유주의 사익추구나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행동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소유한 최종 소유주 개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 중 본인 소유 지분율이 높은 특정 소속기업의 생존만을 위해 기타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지원하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례로 한계기업의 모기업이 임기제 CEO에 의해 경영되고 있을 경우, 해당 CEO가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자신의 임기 중 주요 자회사의 파산을 막으려 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의 경우 기업집단에 대한 충분한 지배력을 지니고 있는 소유주가 지배력을 지니지 못한 외부 투자자의 손해를 감수하며 특정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게, 이는 기업집단 내에서 보다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집단 혹은 모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약한 경우라면 집단 내부 한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파산을 막아 기업집단 내부로의 부정적인 과급효과(spillover)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에 속한 주요한 기업 중 하나가 폐업에 달할 시, 이는 해당 기업에 투자한 모기업의 자산을 크게 줄일 뿐 아니라 외부투자자에게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기업집단은 해당 한계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그룹 전체, 혹은 모기업 라인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것이다. 이러한 유인은 외부투자자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익추구에 기인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집단, 나아가 경제 내부의 자원배분을 보다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Gopalan(2007) 등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며, 인도의 기업집단 데이터를 통해 볼 때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도산은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외부자금의 공급 축소와 도산 확률의 유의미한 상승, 그리고 투자와 이익창출능력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였다.

이처럼 기업집단의 세부적인 유인구조에 대한 분석은 기업집단 전체뿐 아니라 소속된 내부 계열사 각각이 어떠한 유인으로 한계기업 상태에 돌입한 계열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내부 한계기업에 대해 공통적인 대응을 보이기보다는 각

자의 유인구조에 따라서 다른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크다. Buchuk et al.(2020)은 2008년 금융위기를 이용한 연구에서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에서 보다 중심성(centrality)이 높은 기업들이 내부자금 흐름의 도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기도 했다.

아직 이러한 세부분석까지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행한 간단한 분석은 위와 같이 계열사의 지배구조상 위치 등에 따른 유인구조가 이러한 내부자금의 흐름의 결정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한계기업화하는 외감기업이 기업집단 내부에서 구하는 자금의 출처를 지배구조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한계기업화 이후의 자금은 모기업에게서 구하는 면이 크며 자회사, 혹은 지배구조상 직계가 아닌 방계 회사에게서 얻는 자금은 한계기업화 이후 외부자금과 보다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는 추후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에 대하여 보다 강건한 데이터를 구축한 이후 보다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할 문제이며, 후속연구가 집단 내의 자금 흐름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기업집단 내부거래와 한계기업 간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통하여 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검증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본고에서는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의 생존율이 기업집단 비소속 기업과 비교하여 꾸준히, 그리고 상당히 높은 값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지지 않아,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한계기업의 성과를 전반적으로(across-the-board) 높여주기보다 생존율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일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기업집단 소속 한계기업이 기업집단 내부와 외부에서 끌어오는 자금 대차의 흐름을 확인하였고, 기업집단이 한계기업에 대하여 훨씬 관대하게 지속적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폐업기업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상술한 내용은 아직까지 엄밀한 분석이라기보다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기 분석일 뿐이며, 연구결과의 해석에 있어 아직 본 연구는 여러 주의

아직 이러한 세부분석까지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데이터를 이용해 수행한 간단한 분석은 위와 같이 계열사의 지배구조상 위치 등에 따른 유인구조가 이러한 내부자금의 흐름의 결정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16)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 및 결과는 동명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시연구과제 참조

본고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재분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설계에도 역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사항을 갖는다. 먼저, 본고는 아직까지 준실험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인과관계 (causality)를 확립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집단이 내부 자금거래를 통하여 소속 한계기업을 지원할 것이라는 가설에 맞는 데이터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를 다른 대체 가설로 설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본고의 주장은 기업집단의 이러한 내부자금 대차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거나 이익 편취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아니며, 또한 반대로 경제 내부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는 주장 또한 아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의 이용을 통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분석을 후속연구의 분야로 남겨두고 있다.

본고의 분석과 상술된 후속연구는 정책금융 등 정부의 기업지원정책과 기업 구조조정제도 설계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정책적 시사점을 갖는다.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Fast-Track Program) 등 다양한 정부의 기업지원정책은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행해 왔으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은 부실 우려가 명백한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기업집단이 내부적인 금융 혹은 실물거래를 통해 내부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경우, 이러한 행동은 빠른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인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설계된 정책들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 내부의 한계기업은 내부의 금융 지원에 기대어 기업 구조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지만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수혜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대신 기업집단 내부로부터의 금융 지원에 기대게 되어 부담이 기업집단 내부로 확산될 수 있다. 반면 기업집단이 내부 기업에 대한 보다 우월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지원을 우수하게 선별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러한 행동은 경제 전체의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절약하면서도 이러한 정책이 겨냥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부분의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기업집단 내부의 자원재분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상적인 경영상태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의 설계에도 역시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KIPF

참고문헌

- 구정한·이규복, 「기업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 추진 방식 점검」, 『KIF 금융분석리포트』, 2021-03, 한국금융연구원, 2021. 3.
- 구정한,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과 향후 과제」, 『금융 포커스』, 제31권 22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10.
- 국회예산정책처, 『2023 경제전망 II』, 2023. 3. 31.
- 김윤경, 「한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KERI Brief』, 한국경제연구원, 2022. 10.
- 박찬우,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이슈분석』, 제800호, KDB, 2022. 7.
- 송단비·조재한·김한희·김인철, 「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issue paper 2021-3, 산업연구원, 2021. 3.
- 송상윤,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BOK 이슈노트』, 제2020-7호, 한국은행, 2020. 7.
- 오탉록·이시연, 「외부충격 시 계열회사 부실화에 따른 그룹위험 연구 - 출자연계성을 중심으로」, KIF 연구보고서 2021-06, 한국금융연구원, 2021. 12.
- 이기영, 「국내 금융회사 그룹 리스크 평가와 관련 제도 개선 방향」, KDI 정책연구시리즈2016-10, 한국개발연구원, 2016. 12.
- 장우현·양용현·우석진, 『중소기업정책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Ⅰ)』, KDI, 2013. 8.
- 장우현, 『중소기업정책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Ⅱ)』, KDI, 2014. 10.
- 장우현·우석진, 『중소기업정책의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Ⅲ)』, KDI, 2015. 11.
- 조덕상, 「우리 경제의 역동성: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중심으로」, KDI 정책연구 시리즈 2017-14, 한국개발연구원, 2017. 12.
- 최현경·안지연,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 : 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Issue paper 2021-10, 산업연구원, 2021. 10.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2. 12.
- Acharya, Viral V., Tim Eisert, Christian Eufinger, and Christian Hirsch, "Whatever it takes: The real effect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32, No. 9, 2019, pp. 3366~3411.

Albuquerque, Bruno, and Roshan Iyer, "The Rise of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Around the World," No. 2023/12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Albuquerque, Bruno, and Chenyu Mao, "The Zombie Lending Channel of Monetary Policy," No. 2023/19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Almeida, Heitor, Chang-Soo Kim, and Hwanki Brian Kim, "Internal capital markets in business groups: Evidence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of Finance*, 70, No. 6, 2015, pp. 2539~2586.

Banerjee, Ryan, and Boris Hofmann, "Corporate zombies: Anatomy and life cycle," *Economic Policy*, 37, No. 112, 2022, pp. 757~803.

Blattner, Laura, Luisa Farinha, and Francisca Rebelo, "When losses turn into loans: The cost of weak banks," *American Economic Review*, 113, No. 6, 2023, pp. 1600~1641.

Buchuk, David, Borja Larrain, Francisco Muñoz, and Francisco Urzúa, "The internal capital markets of business groups: Evidence from intra-group loan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12, No. 2, 2014, pp. 190~212.

Buchuk, David, Borja Larrain, Mounu Prem, and Francisco Urzúa Infante, "How do internal capital markets work? Evidence from the great recession," *Review of Finance*, 24, No. 4, 2020, pp. 847~889.

Caballero, Ricardo J., Takeo Hoshi, and Anil K. Kashyap,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 No. 5, 2008, pp. 1943~1977.

Favara, Giovanni, Camelia Minoiu, and Ander Perez-Orive, "U.S. Zombie Firms: How Many and How Consequential?," FEDS Notes. Washington: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July 30, 2021(<https://doi.org/10.17016/2380-7172.2954>).

Favara, Giovanni, Camelia Minoiu, and Ander Perez-Orive, "Zombie Lending to US firms," 2022.

Garcia-Appendini, Emilia, and Judit Montoriol-Garriga, "Firms as liquidity providers: Evidence from the 2007-2008 financial cri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09, No. 1, 2013, pp. 272~291.

Gopalan, Radhakrishnan, Vikram Nanda, and Amit Seru, "Affiliated firms and financial

- support: Evidence from Indian business group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6, No. 3, 2007, pp. 759~795.
- Hong, YongKi, “Related-party trades in vertical integration,” Mimeo, SSRN 3983336, 2023a.
- Hong, YongKi, “It takes a village: how business groups help out member firms in distress,” Mimeo, 2023b.
-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World Economic Outlook: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Washington, DC, 2021.
- Jafarov, Etibar, and Enrico Minnella. “Too Low for Too Long: Could Extended Periods of Ultra Easy Monetary Policy Have Harmful Effects?,” No. 2023/105,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3.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Guillermo Zamarripa, “Related lending,”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No. 1, 2003, pp. 231~268.
- Matvos, Gregor, and Amit Seru, “Resource allocation within firms and financial market dislocation: Evidence from diversified conglomerate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7, No. 4, 2014, pp. 1143~1189.
- Peek, Joe, and Eric S. Rosengren, “Unnatural selection: Perverse incentives and the misallocation of credit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5, No. 4, 2005, pp. 1144~1166.
- Santioni, Raffaele, Fabio Schiantarelli, and Philip E. Strahan, “Internal capital markets in times of crisis: The benefit of group affiliation,” *Review of Finance*, 24, No. 4, 2020, pp. 773~811.
- 금융감독원 DART, <https://dart.fss.or.kr/>
- 내일신문 보도자료, 「올해 한계기업 비중 22.8% … 예상 부도율 최대 4.25%」, 2023. 7. 10.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66526)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 2023. 5. 22.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2년 9월)」, 2022. 9. 22.

02

코로나19와 정신건강에 대한 소고¹⁾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pskim@kipf.re.kr)

1. 서론

2020년 1월 20일에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 18일 대구에서 신천지 신도 간 확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었다.²⁾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과 방역 조치로 상황을 점차 관리하였고, 2023년 6월에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위협에 대응하여 사망률과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코로나는 직접적으로 확진자 수만 증가시킨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코로나와 코로나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 및 경제 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문제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Ettman et al., 2020; Xiong et al., 2020). 특히,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장기적이고 광범위하게 나타났다(Thomas et al., 2021; Xie et al., 2020).

코로나 기간 동안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코로나 유행은 감염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코

-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내부세미나에서 좋은 코멘트를 주신 분들과 건강보험자료를 제공해 주신 국민건강보험 측에 감사를 표한다. 자료 획득 및 정리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이은경 박사님과 현환 정리를 도와주신 박선영 연구원님께 감사를 표한다. 본고가 사용한 자료는 IRB승인(NHIS-2023-1-169)을 받았다. 본고는 Kim & Kim(2024)을 바탕으로 『재정포럼』의 방향에 맞게 내용 추가·수정·보완한 원고임을 밝힌다.
- 2)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코로나19 유행을 지칭한다.

로나가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에 미친 영향은 선형적으로(a priori) 명확하지 않다.³⁾ 정신건강 문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른 진단을 받고 정기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코로나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제한적이므로, 본고에서 이 간극을 메우고자 한다.

본고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⁴⁾를 사용하여 코로나가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에 미친 동적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월별로 코로나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개인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2020년 1월 코로나 발생 전과 후의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추세를 비교한다. 즉, 코로나 발발 이후 24개월 동안 정신건강 문제의 진단 및 치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측정하고, 성별·연령별·소득별로 코로나의 이질적 영향을 분석한다. 이후 코로나 전 정신질환 진단 여부를 통해 기존 및 신규 환자 간 코로나가 미친 효과를 구분한다(Moreno et al., 2020). 또한 정신질환 진단 빈도와 정신질환 총의료지출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한국노동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을 통해 식별된 정신질환 진단과 주관적 정신건강 변수 간의 비교도 진행한다.

기존 문헌에 따르면 코로나와 그에 따른 정책 대응이 세계적으로 정신건강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Arendt et al., 2020; Banks & Xu, 2020). 특히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친 부정적 효과는 여성, 청소년 등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었다(Banks & Xu, 2020; Cheng et al., 2020; Pierce et al., 2020). 예를 들어, van der Velden et al.(2020)은 코로나가 구직자, 학생 등의 우울 증상을 증가시켰으며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와 우울 증상 간의 상관관계가 청소년 및 청년층(만 12~21.4세)에서 중년층(만 49.6~59세)보다 더 밀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은환(2020)은 코로나에 의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수준은 과거 재난사례인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보다 1.5배, 경주·포항 지진보다 1.4배, 세월호 참사보다 1.1배 높다는 것을 보였다. 김이레 외(2022)는 「한국복지패널」 제14차(2019년) 및 제15차(2020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고립 등의 이유로 노인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 우울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외 연구를 종합할 때 대다수의 연구는 전 국민 중 특정 연령대의 집단만 분석하거나, 횡단면 설문조사에 의존하거나, 월 단위 자료의 부족으로 동태적 영향

본고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코로나가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에 미친 동적 영향을 분석한다.

3) 코로나는 다양한 경로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는 사회적 연결을 차단하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증가시키며,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격리 조치 역시 사람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고, 이로 인한 외로움과 우울증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코로나가 일으킨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하지 않아 정신건강이 좋아지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다.

4)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집, 보유, 관리하는 건강정보자료를 정책 및 학술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맞춤형 자료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를 말하며,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열람 및 연구 분석할 수 있는 PC가 설치된 공단 내의 '빅데이터 분석센터'에서 통계분석 툴(Tool)을 이용하여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7.8%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충분히 보지 못하거나, 코로나 이전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다는 등의 부족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코로나 위기가 심각할 때는 대다수의 서베이 자료 조사가 중단되거나, 대면에서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결과에 편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고는 제Ⅱ장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및 정신건강 현황, 제Ⅲ장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재정정책, 제Ⅳ장에서 데이터, 제Ⅴ장에서 식별전략, 제Ⅵ장에서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마지막 제Ⅶ장에서 결론짓는다.

II. 우리나라 코로나19 및 정신건강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발견된 것은 2020년 1월 20일이었다. 발병 초기인 2월 중순까지 대부분 확진 사례는 국제 여행자나 그들과 밀접 접촉자들이었다. 이후 신천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 병원,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전파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심각도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비교적 미약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2021년 말까지 우리나라의 누적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는 백만명당 약 108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미국(백만명당 2,400명)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전국적인 봉쇄(national lock down policy)를 시행하지 않았다.

정신건강 현황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27.8%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지만, 정신장애로 진단받은 사람 중 12.1%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또 다른 특성은 높은 자살률이다. 2020년에는 OECD 국가 중 인구 백만명당 24.1명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46.6%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21.1%가 우울 증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7%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는 노인들 가운데 13.2%는 자살을 시도한 경험도 갖고 있었다.

Ⅲ. 정신건강 정책 및 현황

2016년 9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비자의입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동법은 법 제정 후 21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전면 개정·시행되었다(2017. 5. 30).

2017년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국민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정신보건법」보다 정신질환자 복지를 위해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축소하였다. 기존에 없던 정신건강증진·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이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신설하여 의료분야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자립지원 등 복지 분야로까지 확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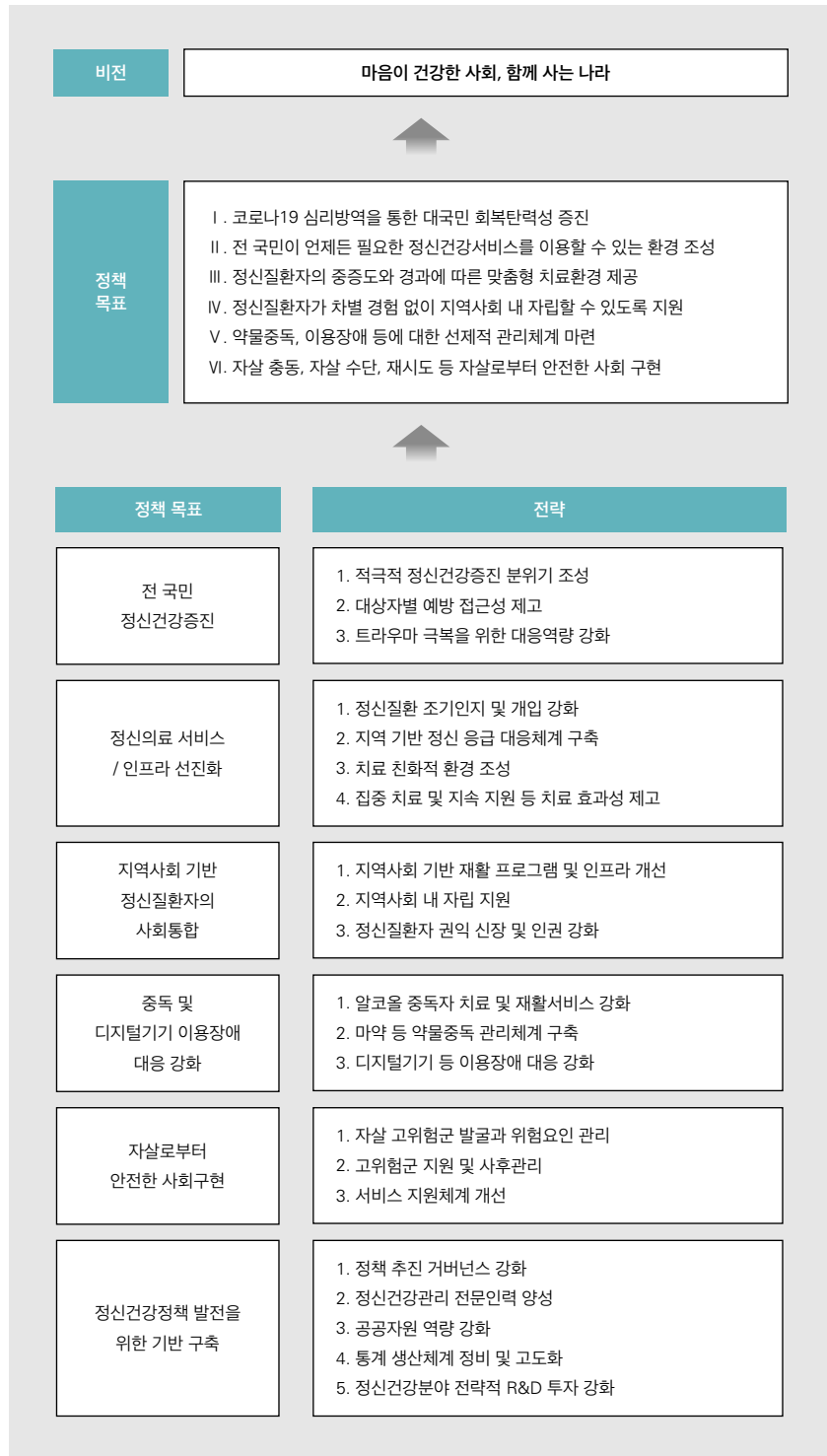
2021년 정부는 제1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16~2020)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의 발발 이후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잇따른 강력범죄와 이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조되면서 국민 안전 및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정신질환자의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국민 대상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채널이 가동되었고 감염예방과 더불어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범정부적으로 퍼지고 있으며, 상시적인 정신건강 관리 거버넌스가 구축될 기반이 조성되었다. 법령개편 및 사회경제적 맥락 아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은 전 국민의 전주기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정신질환자 및 고위험군에 국한되었던 정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심각한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정책적 개입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전주기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인권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

2021년 정부는 제1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16~2020)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은 전 국민의
전주기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림 1] 국가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방향성



출처: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사업안내」, 2022.

목표는 [그림 1]과 같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16조 8,283억원 대비 1,375억원(0.8%) 증가한 16조 9,658억원이다. 보건 분야 중 보건의료 부문은 2022년 4조 9,041억원 대비 3,485억원(△7.1%) 감소한 4조 5,556억원이고, 건강보험 부문은 2022년 본예산 11조 9,242억원 대비 4,860억원(4.1%) 증가한 12조 4,102억원이다. 보건 분야 예산 중 약 3/4은 건강보험 부문에, 약 1/4은 보건의료 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 내 정신건강 사업군은 2022년 3,155억원 대비 16억원(0.5%) 증가한 3,171억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의 예산 중 7% 수준으로 매우 미약하다.⁵⁾

정신건강과 관련한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의 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본예산 기준 16조 8,283억원 대비 1,375억원(0.8%) 증가한 16조 9,658억원이다.

<표 1> 보건 분야 내 정신건강 사업군의 예산 현황 및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비중
보건 분야	168,283	169,658	1,375	0.8	100
건강보험 부문	119,242	124,102	4,860	4.1	73.1
보건의료 부문	49,041	45,556	△3,485	△7.1	26.9
정신건강 사업군	3,155	3,171	16	0.5	7.0

주: 2022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3.

정신건강사업군은 크게 정신통계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고독사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련 사업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는데,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통계기관, 정신통계시설, 정신통계시설을 통칭하는 용어로 정신건강사업군의 주요한 사업이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 및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보다 감소한 사업이 많고, 예산 규모가 100억 미만인 소액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험 재정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표 3>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진료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려 한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 정신건강 관련

5) 건강보험 부문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예산도 존재할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재정에만 집중하고자 한다.

정신건강 관련 사업 및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보다
감소한 사업이 많고,
예산 규모가 100억 미만인
소액 사업들도
다수 존재한다.

<표 2> 정신건강관련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합계	3,155	3,171	16	0.5
일반 회계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149	141	△8	△5.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23	26	3	
	정신질환자 정신의료·돌봄 통합관리시스템 등 운영	4.5	3.4	△0.9	
	사업관리 운영비	0.44	0.43	△0.0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17	17		
	당사자·가족 지원	19	19		
	정신건강 홍보·교육	2	2		
	중독자 치료 지원	4	4		
	정신질환 및 중독 정책 기반 구축	0.5	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3	50	7	
	청년중독관리사업	2	4	2	
	세월호 피해자 등 정신건강 치료비지원	1.5	2.4	0.9	
	감염병 트라우마 심리지원	26	5	△21	
	심리지원 및 중독정책 기반 구축	0.5	0.5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5.4	5.4		
	사회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기반 구축		2	2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15	82	△33	△28.9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28	20	△8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4	46	△28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13	16	3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지원	1,032	997	△35	△3.4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032	996	△35	
	운영비	0.2	0.2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	62	99	37	60.2
	포스트코로나 정신건강 기술개발	37	49	12	
	정신질환자 치료친화적 기술개발	25	50	25	
	자폐혼합형디지털치료제개발(R&D)	31	38	7	24.0
	데이터플랫폼 구축	29	36	7	
	운영비	2	1.8	△0.2	
	안산마음건강센터 설치·운영	163	72	△91	△56.0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47	55	7	15.3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4	4			
재난치유복합센터 건립	43	51			
고독사 예방관리체계구축	10	13	3	31.5	
고독사 정책기반 구축	4	1	△3		
고독사 위험군 지원	6	12	6		
건강 기금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	9	15	6	64.0
	정신질환 인식개선	2	2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1.5	1.5		

<표 2>의 계속

구분	사업명	2022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건강 기금	정신의료기관 평가	6	12	6	
	정신건강 증진사업	1,086	1,171	85	7.8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22	23	1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72	59	△13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664	752	8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91	306	15	
	노숙자등중독자사례관리	3	3		
	안산트라우마센터 지원	20	20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운영	7	3	△4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운영	4	3.7	△0.3	
	정신건강정책연구개발	2	1	△1	
	정신건강증진사업 평가	1	1		
	운영비(정신건강, 직접수행)	0.23	0.2	△0.0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451	488	37	8.2
	자살고위험군 발굴 지원	167	196	29	
	자살예방사업 운영 및 센터 지원	144	155	11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 활성화	28	28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운영	68	68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운영	45	42	△3		

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3, pp. 45~48를 재구성함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실제 정신건강 관련
진료로 지출된
진료비 규모는
2022년 기준
6,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1%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3>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심사실적

(단위: 억원, %)

구분	계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										약국	
		소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의원	치과	한방	보건 기관 등		
2012년	482,349	364,094	76,225	71,509	48,153	26,148	-	104,855	16,029	19,410	1,766	118,255	
...													
2021년	934,984	746,434	169,903	160,788	82,375	57,205	4,500	187,710	52,098	30,622	1,233	188,550	
2022년	1,029,770	818,576	173,013	173,572	90,799	56,442	6,638	231,199	54,177	31,533	1,204	211,194	
증감 률	전 년 대 비	10.14	9.66	1.83	7.95	10.23	-1.33	47.51	23.17	3.99	2.97	-2.35	12.01
	연 평 균	7.88	8.44	8.54	9.27	6.55	8.00	-	8.23	12.95	4.97	-3.76	5.97

주: 1. 심사일 기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정 자료)

2. 치과: 치과병원·치과의원, 한방: 한방병원·한의원, 보건기관 등: 조산원·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3. 「의료법」 개정(제3조 제2항 제3호, 2021. 3. 5.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구분으로 정신병원 신설

출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23, p. 15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발생과 고립에 따른 증상악화, 범죄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응급대응, 치료 후 재활까지 전 주기 정신건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진료로 지출된 진료비 규모는 2022년 기준 6,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47.51%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발생과 고립에 따른 증상악화, 범죄화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응급대응, 치료 후 재활까지 전 주기 정신건강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고·중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4년간 100만명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5년부터 실시되는 정신건강검진 주기 단축(10년 → 2년) 및 검진 질환군 확대(우울증에 조현병 등 추가) 정책과 맞물려 전 주기 정신건강 대책 효과가 증폭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IV. 자료

본고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맞춤형 건강정보자료를 사용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샘플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포함한다. 해당 자료는 크게 나이, 성별, 거주지, 월 보험료 및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과 같은 사회 경제 정보가 포함된 자격 DB와 병원 방문, 의료 공급자 및 관련된 주요 질병 코드가 포함된 진료내역 DB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데이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당하다. 첫째, 이 데이터는 코로나 전후의 기간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인구 집단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높은 빈도의 균형 패널 데이터(balanced panel data)는 코로나의 동적 효과(dynamic effects)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둘째, 이 데이터는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았는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KCD)의 소단위 질병분류코드를 통해 관찰할 수 있게 한다.⁶⁾ 이 접근법은 의료 전문가가 진단하였기에 특정 질병을 정확히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이 데이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큰 표본 추출 편익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건강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료 공급자에게 강제하기 때문이다.

<표 4>는 각각 2019년의 코로나 유행 전과 2020~2021년 코로나 유행 기

6) 수진자(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자)의 주상 병코드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 and Cause of Death, KCD)의 소단위 질병분류코드를 사용하여 질환의 중증도를 활용했다.

<표 4> 기초통계량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Mean	SD	Mean	SD
Pr(정신질환 진단)	0.024	(0.152)	0.028	(0.164)
주요 통제변수				
연령(세)	42.038	(20.327)	43.538	(20.321)
남성(%)	0.501	(0.500)	0.501	(0.500)
월별 보험료(10,000원)	13.008	(12.819)	13.948	(13.751)
전체 관측치	10,951,476		21,902,952	

주: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건강정보 자료」 2019~2021.

<표 4>는 각각 2019년의 코로나 유행 전과 2020~2021년 코로나 유행 기간 주요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간 주요 기초통계량을 나타낸다. 먼저, 한 달 동안의 정신질환 진단 여부(KCD Code F00-F99)를 나타내는 종속 변수를 표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정신건강진단 발생률이 2.4%에서 2.8%로 0.4%p 증가했다. 샘플의 평균 연령은 42세이고 남녀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월간 건강 보험료로 대략 13만~14만원을 지불한다.

V. 실증전략

코로나가 개인의 정신질환 진단에 미친 단기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했다(O'Connell et al., 2022).

$$y_{imt} = \alpha + \sum_{t=2020}^{2023} \sum_{m=1}^{12} \beta_{mt} \times COVID_t + \gamma' X_{it} + \lambda_m + \varepsilon_{imt} \quad \text{식 (1)}$$

종속변수 y_{imt} 는 개인 i 가 m 월 t 년도에 정신질환(F00-F99) 관련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COVID 더미변수는 관측된 기간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에 위치한다면 1, 그렇지 않다면 0을 부여한다. 패널고정효과를 사용하므로 설명변수 벡터 X_{it} 는 연령, 연령 제곱, 거주지역 등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들만 포함하였다. Koh et al.(2022)과 같이 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특성, 코로나 확진자 수와 같이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주요 모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인 고정효과(individual

코로나 이전 대비
 월별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2020년 4, 5, 10월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2021년 1월 전에는
 0.2%p 이상
 증가한 적이 없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월별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0.2%p에서
 0.4%p 사이로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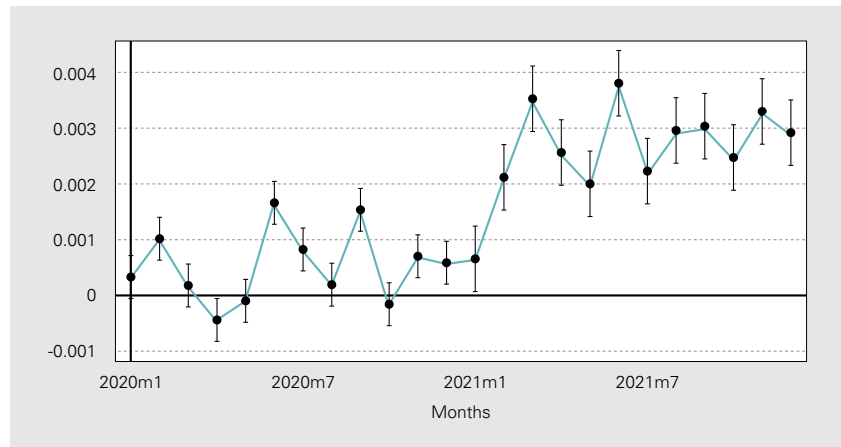
fixed effects) λ_i 는 설명변수들 이외에 관측되지 않는 개인의 고유한 성질(유전자, 개인의 선천적인 질병 등)을 통제한다.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했으며 모든 표준오차는 개인 단위에서 군집시켰다. 주요 모수인 β_{mt} 는 코로나 이전 기간 대비 코로나 기간의 평균적인 종속변수의 변화분을 나타내며, 현 모형에서는 정신건강 진단 확률을 의미한다.

주요한 식별 가정은 코로나 이전 기간에 상대적으로 종속변수의 변화량이 적다는 것이다. 위 가정을 보이기 위해 [부록]에서 코로나 이전 2018년, 2019년을 대상으로 식 (1)과 같은 형식의 회귀식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지만, 코로나 이전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종속변수의 변화량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VI. 결과

[그림 2]는 식 (1)의 추정치와 각 추정치별 95% 신뢰 구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먼저 코로나 발생 이후 첫 10개월 동안 월별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큰 폭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후 11개월이 지나면 해당 비율의 명확한 증가가 관찰된다. 이러한 증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진다. 코로나 이전 대비 월별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2020년 4, 5, 10월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2021년 1월 전에는 0.2%p 이상 증가한 적이

[그림 2] 코로나가 정신질환 진단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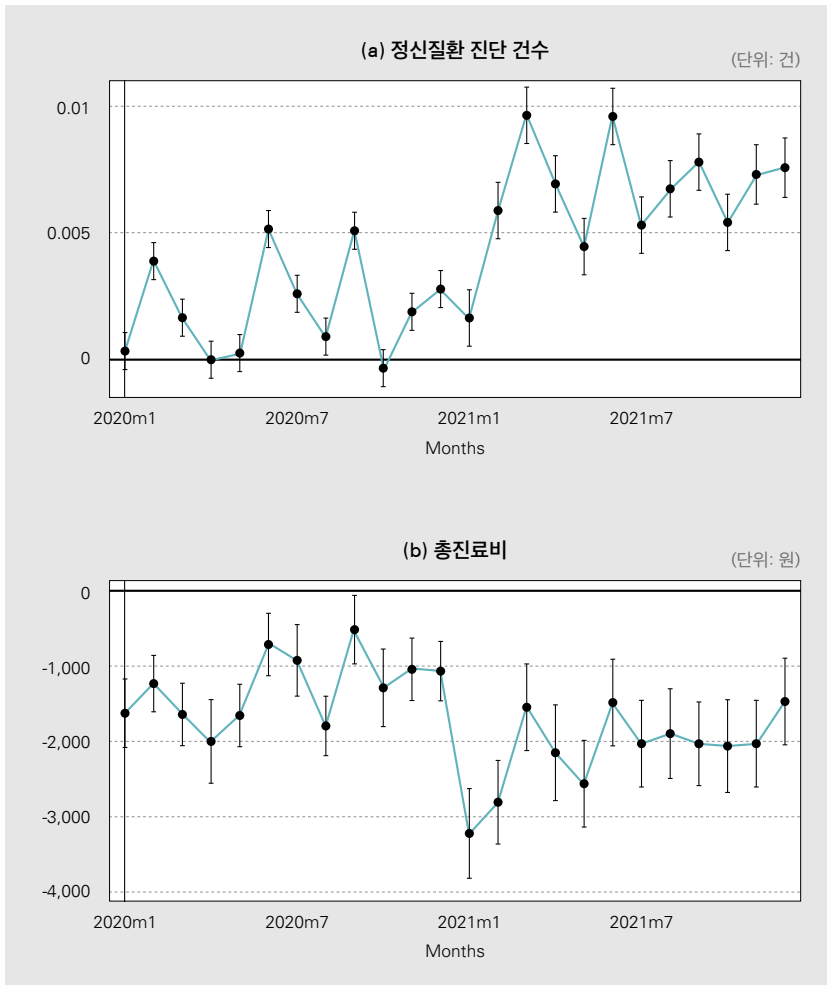
출처: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없다. 하지만, 2021년 2월부터 월별 정신질환 진단 비율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0.2%p에서 0.4%p 사이로 증가한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의 월별 평균 정신질환 진단 비율이 단지 2.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0.3%p의 증가는 해당 평균의 12.5% 증가에 해당한다. 정신질환은 한 번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를 받지만, 한 번 발병한 이후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정신질환의 전반적인 추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새롭게 발생한 환자와 계속된 치료를 받는 기존 환자 모두를 반영한 것이다.

[그림 3]은 정신질환 진단의 정도(intensive margin)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그림 3]은 정신질환 진단의 정도(intensive margin)를 간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월별 진단 횟수와 관련 총진료비를 분석했다.

[그림 3] 코로나가 정신질환 진단 건수와 관련 총진료비에 미친 영향



출처: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건강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본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복지패널조사(KOWEPS)와
한국 노동패널조사(KLIPS)를
사용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을
분석한다.

위해 월별 진단 횟수와 관련 총진료비를 분석했다. [그림 3]의 패널 (a)는 정신 질환 여부와 유사하게 2021년 1월 이후 정신질환 진단 빈도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나타낸다. 다만 패널 (b)에서는 코로나 기간 전체적으로 정신질환 진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코로나 기간 소득이 감소하여 정신질환 환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선 데이터가 객관적인 정신질환 진단 결과를 보여주었다면, 정신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비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정신질환 진단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관적 정신건강 결과와 얼마나 다른지 분석한다. 본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복지패널조사(이하 KOWEPS)와 한국 노동패널조사(이하 KLIPS)를 사용하여 주관적 정신건강을 분석한다. KOWEPS는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이하 CES-D) 11을 통해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고, 자살 의향을 질문하며, KLIPS의 경우 개인이 얼마나 행복하거나 삶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정신적 웰빙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각 변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한다. 다음과 같은 식 (2)를 이용해 분석한다.

$$y_{it} = \delta + \sum_{t=2020}^{2021} \theta_t \times COVID_t + \gamma' X_{it} + \mu_t + \varepsilon_{it} \quad \text{식 (2)}$$

<표 5>는 식 (2)의 추정치를 제시한다. 건보 맞춤형 자료는 열 (1)에, KOWEPS 데이터는 열 (2) ~ (4)에, KLIPS 데이터는 열 (5) ~ (6)에 있다.⁷⁾ 주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열 (1)에서는 코로나 기간 정신질환 진단의 상당한 증가가 관찰된다. 열 (2), (5), (6)은 2021년에 CES-D 점수, 행복 및 삶의 만족도에 대한 코로나의 영향이 특히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다만 CES-D 점수를 기반으로 한 경도·중등도 우울증이나 자살 의도는 코로나 기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주관적 측정 항목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의 크기는 코로나 이전 평균의 1.72%에서 16.46% 범위로, 진단에서 관찰된 11.6%와 유사하다.

정신건강 문제는 특정 임계치를 넘어야 관측이 되므로, 정신질환 진단은 실제 정신건강 수치를 하향 추정(underestimate)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특정한 경험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그것이 반복될수록 줄어든다는 ‘쾌락 적응(hedonic adaptation)’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쾌락 적응을 고려할 때, 실제 정신건강은 주관적 또는 객관적 정신건강 측정치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람들 간에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리

7) 심사과정에서 CES-D 점수보다 우울증, 중등도 우울증과 같이 일정한 카테고리를 나누어 분석하는 방안도 추천되었다. 다만 본고는 단일한 정신건강 측정치를 연속형 변수인 점수와 이산형 변수인 우울증 여부로 나누어 최대한 포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울증 척도 분류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Kim & Kim(2024)의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표 5> 정신질환 진단과 다른 정신건강 측정치 간 비교

구분	Pr (정신질환 진단)	CES-D 점수	Pr (우울)	Pr (자살충동)	행복도	삶의 만족도
<i>COVID</i> ₂₀₂₀	0.0013*** (0.0003)	0.3813** (0.1387)	-0.0059 (0.0059)	-0.0014 (0.0024)	-0.0739*** (0.0174)	-0.0212 (0.0177)
<i>COVID</i> ₂₀₂₁	0.0068*** (0.0005)	0.7078** (0.2381)	-0.0018 (0.0099)	-0.0013 (0.0042)	-0.1685*** (0.0313)	-0.0914*** (0.0320)
데이터 출처	NHIS	KOWEPS		KLIPS		
코로나 이전 평균	0.0588	4.2995	0.0839	0.0193	6.5451	6.3174
N	2,737,831	33,210		61,278		

주: 1. * p < 0.1, ** p < 0.05, *** p < 0.01

2. 각 변수에 대한 정의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음

출처: 한국노동패널; 국민건강보험 맞춤형 DB; 한국복지패널

는 문화적 요인에 기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전 서베이 기반의 조사들의 조사시점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요소가 주관적 정신건강 측정에 편의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

앞선 논의를 발전시켜 연령, 성별, 소득에 따른 팬데믹의 이질적 영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의 이질적인 특성은 의료서비스 수요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감염 위험과 잠재적·경제적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다(Montenovo et al., 2022). 예를 들면, 팬데믹은 청소년, 여성,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anks & Xu, 2020; Cheng et al., 2022; Pierce et al., 2020). 또한 감염에 더 취약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그룹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연령, 성별, 그리고 소득에 따라 샘플을 분류하여 식 (1)을 추정한다. 참고로 건강보험 맞춤형 자료는 월별 임금 및 노동 시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득의 대리변수로 건강 보험료를 사용한다.

먼저, 연령은 코로나 기간 건강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tarke et al., 2021).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건강 및 경제적 이유로 대부분의 자살은 60세 이상 노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4]의 패널 (a)는 노인들이 일관되게 정신질환 진단 확률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 다만, 이러한 감소는 실제 정신건강 문제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노인들이 코로나 기간 후속 치료를 받기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에 20세부터 60세 사이의 개인들은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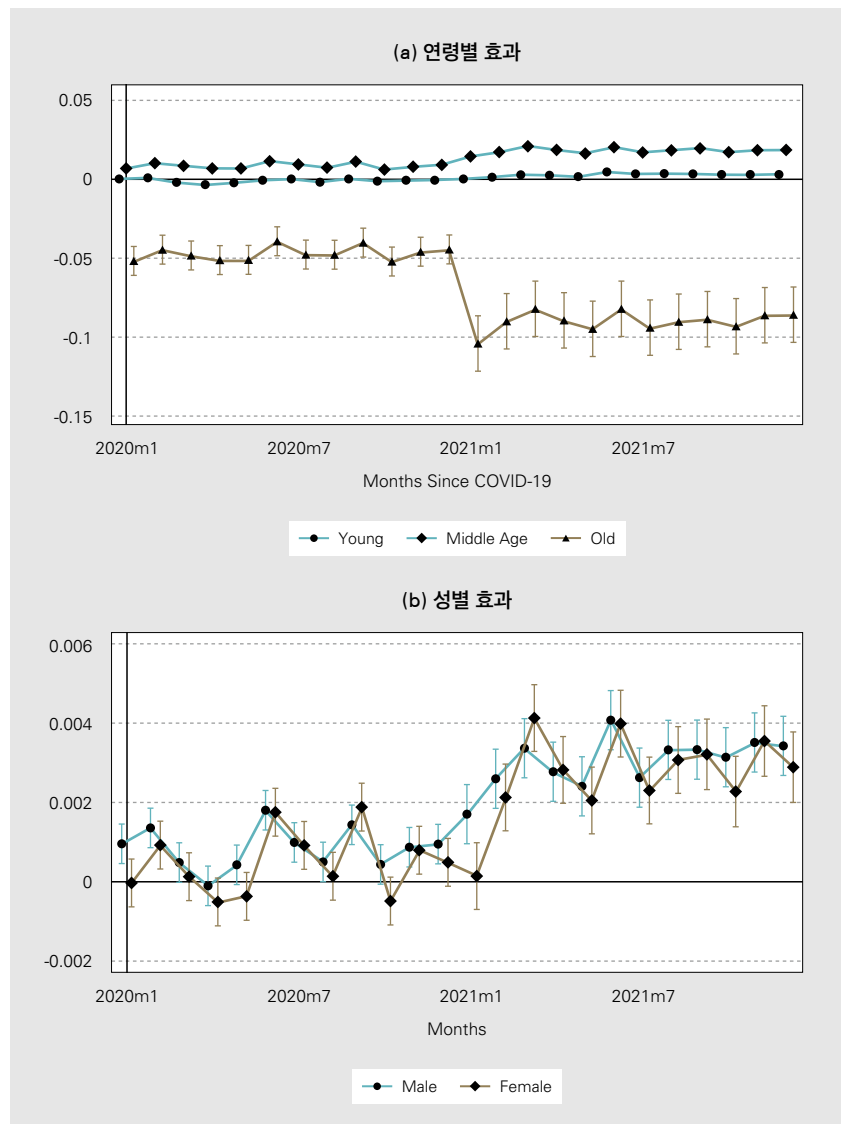
앞선 논의를 발전시켜
연령, 성별, 소득에 따른
팬데믹의 이질적 영향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환자의 이질적인 특성은
의료서비스 수요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
감염 위험과 잠재적
경제적 어려움과도
관련이 있다.

코로나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여성은 정신건강에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신질환 진단이 상승 추세를 보였으며, 이는 코로나 기간 새롭게 정신질환에 걸린 환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코로나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여성은 정신건강에서 더 취약할 수 있고, 그들의 가족 및 사회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Van de Velde et al., 2010). [그림 4]의 패널 (b)에서 정신질환 진단 증가는 여성이 더욱 두드러지지만, 전반적인 상승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4] 코로나의 이질적 효과



Ⅷ. 결론 및 시사점

코로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비해 코로나가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전국적인 봉쇄정책과 경제 마비현상이 없었던 우리나라 사례를 통하여, 코로나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 기간 정신건강이 가장 악화된 집단을 잘 선별하여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기간 여성과 젊은 층에서 정신질환 진단이 증가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실증적으로 크지 않았으므로 해석을 주의 깊게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경로는 소득 감소, 사람들과의 접촉 감소, 공공장소 접촉에 대한 공포 등 다양하므로 정부의 정신건강 지원 정책은 각 원인에 맞추어 섬세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야 한다. 특히, 코로나 기간 정신건강과 관련되어 집행된 다양한 정책들의 효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지만 정신질환자들의 회복은 보다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건강과 관련된 재정정책의 최초 목표한 바를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 정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서 코로나 이후 상태 변화를 추적·관찰해야 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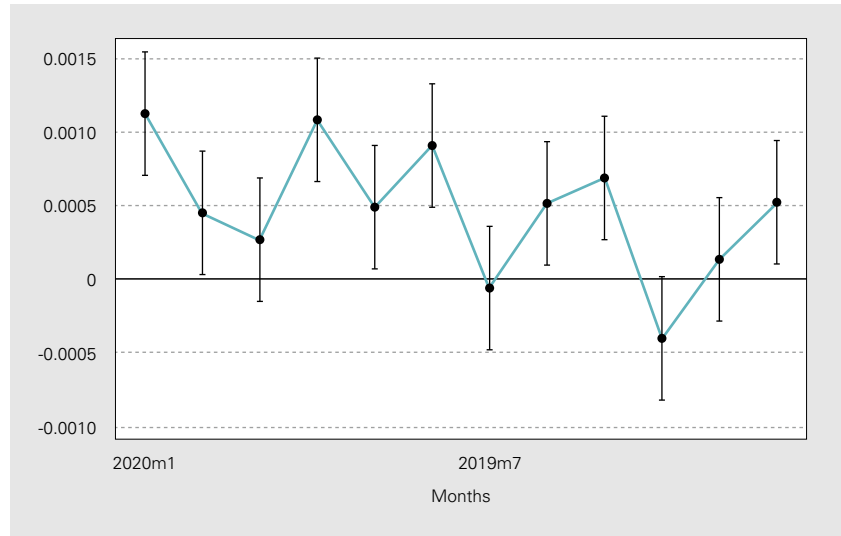
먼저, [그림 5]는 2018년,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식 (1)을 분석한 위증 시험을 나타낸다. 2018년 대비 2019년에도 정신건강 진단 확률이 소폭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고, 상당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어 어느 정도 평행추세를 유지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관적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Depression

본고는
전국적인 봉쇄정책과
경제 마비현상이 없었던
우리나라 사례를 가지고,
코로나가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림 5]는 2018년,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식 (1)을 분석한 위증 시험을 나타낸다.

[그림 5] 위증 시험(Falsification Test)



Scale) 11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과 관련한 문항에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구성된 리커트식 척도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기분상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가) 식욕이 없음, (나) 비교적 잘 지냈다, (다) 상당히 우울, (라)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 (마) 잠을 설침, (바) 외로움, (사) 불만 없이 생활, (아)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 (자) 마음이 슬펐다, (차)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 (카)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 등을 경험하였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한다: (1) 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2)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4)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 각 11개 문항에 ‘거의 드물게(0점)’, ‘때로(1점)’, ‘상당히(2점)’, ‘대부분(3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산술평(최대값: 33)을 계산하여 우울의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긍정 문항들(예를 들어, (나) 비교적 잘 지냈다, (사) 불만 없이 생활했다 등을 질문한 경우)은 역 코딩하였다. 일반적으로 20개 문항을 기준으로 CES-D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11개 변수를 더한 값에 20/11를 곱하여 0~60점으로 환산한 후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추가적으로 정신건강을 폭넓게 측정하기 위해 (가) 자살 생각을 한 번

이라도 한적 여부, (나) 지금까지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여부, (다) 지금까지 자살을 시도한 여부, (라)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마)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여부, (바)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한 여부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을 부여하여 자살의향 변수도 구축했다.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ES-D 11을 사용하였고, 총 1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당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울과 관련한 문항에 조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구성된 리커트식 척도이다.

참고문헌

김이레·권진아·김영주, 「코로나19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애주기별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건강정책학회, Vol. 74, 2022, pp. 7~37.

보건복지부, 「202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23.

문재인정부 국정백서, 『복지_제9권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국정백서 편찬위원회, 2022.

관계부처 합동,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2023. 4.

전진아·채수미,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23. 10.

이윤경 외,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이은환, 『코로나19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경기연구원, 2020.

Ahn, S., Kim, S. & Koh, K., “Associ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with older individuals’ healthcare utilization and self-reported health status: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Singapore,” *BMC Health Serv Res*, 22(66), 2022.

Banks, James and Xiaowei Xu, “The mental health effects of the first two months of lockdow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n the UK,” *Fiscal Studies*, 41(3), 2020, pp. 685~708.

Cheng, Terence C, Seonghoon Kim, and Kanghyock Koh, “Life satisfaction changes and adaptation in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Singapore,” *The Singapore Economic Review*, 2022, p. 134.

Cuiyan Wang, Riyu Pan, Xiaoyang Wan, Yilin Tan, Linkang Xu, Roger S. McIntyre, Faith N. Choo, Bach Tran, Roger Ho, Vijay K. Sharma, Cyrus Ho, “A longitudinal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general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epidemic in China," *Brain, Behavior, and Immunity*, Volume 87, 2020.

Ettman, Catherine K, Salma M Abdalla, Gregory H Cohen, Laura Sampson, Patrick M Vivier, and Sandro Galea, "Prevalence of depression symptoms in US adults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AMA network open*, 3(9), 2020, e2019686~e2019686.

Florian Arendt, Antonia Markiewitz, Manina Mestas, Sebastian Scherr, "COVID-19 pandemic, government responses, and public mental health: Investigating consequences through crisis hotline calls in two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Volume 265, 2020.

Kim, Pyoungsik and Dongyoung Kim,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Management: Evidence from Patient-Level Universal Insurance Claims Data," mimeo, 2024.

Kim, Seonghoon, Kanghyock Koh, and Xuan Zhang, "Short-term impact of COVID-19 on consumption spending and its underlying mechanisms: Evidence from Singapor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55(S1), 2022, pp. 115~134.

Montenovo, Laura, Xuan Jiang, Felipe Lozano-Rojas, Ian Schmutte, Kosali Simon, Bruce A Weinberg, and Coady Wing, "Determinants of disparities in early COVID-19 job losses," *Demography*, 59(3), 2022, pp. 827~855.

O'Connell M, Smith K and Stroud R., "The dietary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J Health Econ*, 2022.

Peter G. van der Velden, Carlo Contino, Marcel Das, Peter van Loon, Mark W. G. Bosmans, "Anxiety and depression symptoms, and lack of emotional support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prospective national study on preval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ume 277, 2020.

Pierce, Matthias, Holly Hope, Tamsin Ford, Stephani Hatch, Matthew Hotopf, Ann John, Evangelos Kontopantelis, Roger Webb, Simon Wessely, Sally McManus et al., "Mental health before an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 longitudinal probability sample survey of the UK population," *The Lancet Psychiatry*, 7(10), 2020, pp. 883~892.

Starke, Karla Romero, David Reissig, Gabriela Petereit-Haack, Stefanie Schmauder,

Albert Nienhaus, and Andreas Seidler, "The isolated effect of age on the risk of COVID-19 severe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with meta-analysis," *BMJ global health*, 6(12), 2021, e006434.

Thomas, Duncan, Tyson Brown, Donald H Taylor Jr, Ralph Lawton, Victoria K Lee, Menna Mhuri, Michelle Wong, and Rachel Kranton, "Depression Symptom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mong Well-educated, Employed Adults with Low Infection Risks," *medRxiv*, 2021.

Xie, Xinyan, Qi Xue, Yu Zhou, Kaiheng Zhu, Qi Liu, Jiajia Zhang, and Ranran Song, "Mental health status among children in home confinement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outbreak in Hubei Province, China," *JAMA pediatrics*, 174(9), 2020, pp. 898~900.

Xiong, Jiaqi, Orly Lipsitz, Flora Nasri, Leanna MW Lui, Hartej Gill, Lee Phan, David Chen-Li, Michelle Iacobucci, Roger Ho, Amna Majeed et al.,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mental health in the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77, 2020, pp. 55~6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사항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1월 23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세청 혁신과제 중 하나인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Simple Notice Initiative)' 진행사항을 발표함^{1,2)}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는 국세청이 매년 발송하는 약 1억 7천만건의 안내문을 간소하고 명확하게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임
 - 국세청은 먼저 개인납세자 대상 안내문에 초점을 맞춰 재설계하고 이후 사업체 대상 안내문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임
- 최근 국세청은 안내문 5071C를 재설계하여 대상 납세자에게 시범 발송함
 - 기존 7페이지의 안내문을 2페이지로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꼴, 아이콘 등을 개선하고 QR코드를 이용하여 상세지침을 제공함
 - 그 결과 전화상담은 16% 감소하고 온라인

옵션 이용자는 6% 증가함

■ '간략 안내문 이니셔티브'의 연도별 계획은 아래와 같음

- (2024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2023년, 2024년 세금 신고시즌에 맞춰 31개의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함
 - 전투지역에서 복무한 납세자의 세금유예에 대한 안내문, 미제출 신고서의 제출 독려 안내문, 미납세액 잔액과 신고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안내문 등
- (2025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일반적인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계획임
 - 개인납세자에게 발송되는 통지문 중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약 200개의 안내문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납세자의 소득·납부세액·소득 및 세액공제 조정에 대한 안내문, 신고내용 오류수정에 대한 안내문, 세금미납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임
- (2026년 신고시즌) 국세청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을 검토하고 재설계할 계획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1) IRS, "IRS launches Simple Notice Initiative redesign effort," 2024. 1. 23., <https://www.irs.gov/newsroom/irs-launches-simple-notice-initiative-redesign-effort>, 검색일자: 2024. 2. 27.

2) IBFD, "IRS to Use IRA Funding to Simplify and Clarify Notices Sent to Taxpayer," 2024. 1. 25.,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5_us_1.html, 검색일자: 2024. 2. 27.



미국

[에너지세액공제 신청 관련 지침 발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2024년 1월 18일, 에너지세액공제(Energy Tax Credits)의 환급 또는 양도를 위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발표함^{3),4)}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에너지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을 ①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으로 선택하여 현금으로 수취하거나 ②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납세자는 국세청의 ECO(IRS Energy Credits Online)⁵⁾를 통해 사전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음

- 환급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등록번호를 연 간보고서에 기재해야 함

- 2024년 1월 18일 현재, 약 145개의 기관이 에너지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40개의 지역에 위치한 1,29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등록번호를 요청함

- 1,17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양도를, 110개 이상의 프로젝트는 환급을 선호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표 1> 환급 또는 양도할 수 있는 에너지세액공제 내역

구분	환급(refundable)	양도(transferable)
대체연료차량 충전시설 세액공제(IRC Section 30C)	-	○
재생에너지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	-	○
산화탄소 격리 세액공제(IRC Section 45Q)	○	○
무공해 원자력발전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U)	-	○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V)	○	○
상업용차량 세액공제(IRC Section 45W)	-	○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X)	○	○
청정전기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Y)	-	○
청정연료 생산 세액공제(IRC Section 45Z)	-	○
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	-	○
대체에너지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C)	-	○
청정전기 투자 세액공제(IRC Section 48E)	-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23-07호)」, 2023. 7.

3) IRS, "IRS and Treasury reach major milestone implementing key provisions using the IRS Energy Credits Online Elective Pay and Transferability Tool," 2024. 1. 18., <https://www.irs.gov/newsroom/irs-and-treasury-reach-major-milestone-implementing-key-provisions-using-the-irs-energy-credits-online-elective-pay-and-transferability-tool>, 검색일자: 2024. 2. 27.

4) Bloomberg, "IRS Issues New Instructions for Green Energy Tax Credit Seekers," 2024. 1. 30.,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658G08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liwiaHR0cHM6Ly93d3cuYmxbv21iZlJnbGF3LmNvbS9wcm9kdWNOL3RheC9zZWZlY2gvcmlvZdWx0cy8wMzJkZDl1N2M0NTlhOTRmMWQzYjE0NTc1OTdhNWlwOCJdXQ--441c2980bfa4299e5f0dc56b732cb35a4c919e72&criteria_id=032dd9e7c459a94f1d3b1457597a5b08&search32=VvsLv5QMnggQz8HDZLWpxA%3D%3DqRkfZ3NlzRmY4-e8e7l8uM_9fdnYoiA3rlQpiJbVnMBdyFyyHARfPFgOyHOeu6JfS8_xeUvaVjd2AqZqgC3E30nKf5sjLiDR7pmXcoGR-N4HSwozwmX8Mg3dsjOZkAtP1Jgqgg8tksJkHGq2LVqFQ3VP7Y0Zs5M5tVICWSqGXdzVySjZNM54lq8Uiquq8pLTkr5TE5ywnjRtjzWHRoKgbnEAELs9ldUCOKc1KKq_tz-TVTXclJi4hzwT3GpCUM1V5l0gbCfvSxpzhBOg0iWitaG84VuG9_26GYtzPOa4RcUTC1e1A-LFXg_FuNH4dv3tQoBy80kHSTbmWxgp5K8kDu3gxudtGUTiiUol11oUT6n2C8e2_Ajp6o52ERhAFqxr, 검색일자: 2024. 2. 27.

5) IRS, "Register for elective payment or transfer of credits," 2023. 12. 22.,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register-for-elective-payment-or-transfer-of-credits>, 검색일자: 2024. 2. 27.



아일랜드

[납기연장 조세채무 이자율 0%로 감소]

■ 아일랜드는 2024년 2월 5일, 납기연장 조세채무 (warehoused tax debt)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3%에서 0%로 감소시키는 조치를 발표함^{6),7)}

- 아일랜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조치로 조세채무 납기연장 계획(Tax Debt Warehousing Scheme)을 도입하여 적격 납세자의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세액의 납기를 상환 완료 시까지 저금리(연 3%)로 연장한 바 있음⁸⁾
 - 당시 조치로 현재 약 17억유로에 해당하는 조세채무가 미납 상태에 있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조세채무 이자율은 연 3%에서 0%로 감소됨
- 또한 아일랜드 국세청은 기존의 연 3%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부한 사업체의 경우 해당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아울러 납부에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함
 - 일반적인 연장 기간인 3-5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납부 약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

부 중단 및 월 납부액 변경 등 추가적 유연성을 제공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포르투갈

[2024년 법인 지방세 세율 발표]

■ 포르투갈 국세청은 2024년 2월 7일, 2024년 세액 산출 시 사용되는 2023년 법인 지방세 세율 (derrama municipal)을 발표함⁹⁾

- 포르투갈의 법인 지방세 세율은 각 시(municipal)별로 상이하며, 국세청의 기본 법인세 세율인 21%에 0.1~1.5% 사이의 추가 세율을 더하여 적용함
 -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법인세는 과세 금액의 첫 5만유로까지는 17%의 감면 세율이 적용됨
- 법인 지방세를 부과하는 곳은 전년보다 12개 시가 늘어났으나, 최고 세율인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곳은 2개 시가 감소함
 - 총 308개 시 중 92개 시는 법인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129개 시는 최고 세율을 부과함¹⁰⁾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6) IBFD, "Ireland - Ireland Reduces Interest Rate on Warehoused Debt to 0%," 2024. 2.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08_ie_1.html, 검색일자: 2024. 2. 26.

7) 아일랜드 정부, "Minister McGrath announces significant changes to €1.7 billion Tax Debt Warehousing scheme," 2024. 2. 5., <https://www.gov.ie/en/press-release/eb94d-minister-mcgrath-announces-interest-rate-reduction-to-0-for-tax-debt-warehousing-scheme/>, 검색일자: 2024. 2. 26.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1-08호」

9) IBFD, "Portugal - Tax Authorities Announce Corporate Municipal Surtax Rates for 2023," 2024. 2. 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2-07_pt_1, 검색일자: 2024. 2. 28.

10) 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 "IRC-Taxas de Derrama Municipal Incidentes Sobre o Lucro Tributavel do IRC do Período Fiscal de 2023," https://info.portaldasfinancas.gov.pt/pt/informacao_fiscal/legislacao/instrucoes_administrativas/Documents/Oficio_circulado_20264_2024.pdf, 검색일자: 2024. 3. 6.



스페인

[DAC7 채택]

■ 스페인은 2024년 1월 30일, DAC7을 채택하는 법령을 승인함^{11),12)}

- 동 법령은 유럽연합의 조세행정협력지침인 DAC7을 이행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조치로 2024년 2월 1일 발효됨
-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예외자¹³⁾를 제외하고 디지털플랫폼 운영자는 사용자의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함
- 또한 동 법안에 따라 OECD 모델 규칙에 따른 정보 자동 교환을 위해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MCAA)을 이행해야 함
 - 세무당국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EU회원국 또는 파트너 국가¹⁴⁾와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네덜란드

[Box3 과세 정비 법안 개정안 및 2023년 최종 간주 수익률 발표]

■ 네덜란드 재무부는 2024년 1월 25일, 현행 저축 및 투자 소득 과세제도인 Box3 소득 과세제도를 개편하는 법안 초안의 수정안과 2023년 최종 간주수익률을 발표함¹⁵⁾

- 개정안은 2023년 9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된 입법 초안의 공개 협의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두 번째 주택(Second Home), 손실 보상 및 부동산 평가에 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함
-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 여름까지 법안 초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두 번째 주택) 별장과 같은 두 번째 주택을 Box3의 기타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이익이 실현되는

11) Bloomberg, "Spain Adopts Information Reporting Rules for Digital Platforms," 2024. 2. 26.,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4BC1BMS00000?bc=W1siU2VhcmNoICYgQnJvdDNIiwiiaHR0cHM6Ly93d3cuYmxvb21iZXJn 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vZdWx0cy81YTc1NzUzMWWE4MzFjZDQ5ZGJnJ2MyMDg3YjYwMjEzXQ==6cfe8cad0ba9cd308cd3d0bf2ef712e3ab8c5825&criteria_id=5a757531a831cd49dbc7c2087b602137&search32=d-Rtlyaq_lzBrC wvutWRuA9%3D%3D2RvM_BfCbcwkJeF9CGHmfwt2iAo4s6zrQCWRFAYujyMRB83YP0DavHB6Jzk_2G7p_4fp9KU0KEw9TPJwS_8dq_cr3FyBAVG4C2zi6IPsshzAcIsGmV-dKqg0P6-bRFAfiCW-bCL_F2xWSLI6B1alB1uNTwPvQZAKcOZLctStFv1v_TPgyJAmYhq021tn_NuE5Zy3ZwHwHCLcxOrsFrhoX_hUtdMbhW840UzgvJNEafEzAoP8f-idXe1Y4otoMGU_4O4AeTqiVkl1HJC6-WWAJET8aAMdc4oH2yavQ fH2yYv4GU-ZroHxdyL_zjFPrfNUVzb18fNO7pG5a-LEmpJjw%3D%3D, 검색일자: 2024. 2. 27.

12) IBFD, "Government Approves DAC7 Regulations Covering Due Diligence, Reporting Obligations of Digital Platforms," 2024. 2. 2.,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02_es_2%23tns_2024-02-02_es_2, 검색일자: 2024. 2. 27.

13) 국가기관, 상장기업, 비정기판매자(연간 총 2천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30건 미만의 상품판매거래를 수행하는 자)

14) 스페인과 자동정보교환을 위한 협정 또는 기타 법적 수단을 체결한 관할권을 의미함

15) News IBFD, "Netherlands Amends Draft Bill Overhauling Box 3 Taxation, Changes Treatment of Second Home, Loss Set Off," 2024. 1. 2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9_n1_1.html, 검색일자: 2024. 2. 2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6_n1_2.html, 검색일자: 2024. 2. 2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시점에 과세할 예정임

- 당초에는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경우 간주수익률을 적용하여 가치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개정안을 통해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실제로 이익이 실현되는 시점에 과세할 것임을 발표함¹⁶⁾
- 납세자의 주 거주지는 Box1의 근로 및 주거 소득으로 과세됨

■ (손실 보상) 법안 초안에서는 납세자가 Box 3 손실을 미래 및 과거 Box 3 이익과 상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비용과 복잡성 문제를 이유로 손실환급 규정을 삭제함

■ (부동산 및 특정 주식의 평가) 개정 법안을 통해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동산가치평가법(WOZ, Wet Waardering Onroerende Zake)」을 채택하고 다른 범주에 대해서는 해당 날짜의 공정시장가치를 활용할 것을 발표함

- 법안 초안에서는 납세자가 보유한 부동산과 가족 기업 및 창업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외환손익 및 향유권) 외환손익과 향유권에 관한 변경 사항을 발표함

- 법안 초안과 달리 외환표시 은행 계좌의 외환 손익은 Box 3에서 과세대상이 됨
- 미래 배당금 및 이자 흐름과 같은 향유권(genotsrechten)과 관련된 남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권리의 취득 가격은 더이상 원래 제안대로 취득연도에 한 번에 공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권리를 보유하는 기간에 걸쳐 분산하여 공제될 것임을 발표함

■ (간주수익률) 저축 및 투자소득 과세에 사용되는 세 가지 자산 유형¹⁷⁾ 중 두 가지인 저축 및 부채에 대한 2023년 최종 간주수익률을 발표함¹⁸⁾

-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적용되는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92%이고 부채의 경우 2.57%임
 - Box 3 소득은 납세의무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으로 저축으로 인한 투자수익 등을 의미하며, 해당 소득은 간주수익률로 계산되다가 연말에 최종적으로 확정됨
 - 2023년 잠정 세금 평가의 목적상 설정된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36%, 부채의 경우 2.57%였음
- 확정된 수익률은 2023년 개인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Box 3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됨
 - 2022년 최종 간주수익률은 저축의 경우 0%, 부채의 경우 2.28%였음

<자료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16) Blueclue, "When do you pay taxes on your second home?," <https://en.blueclue.nl/news/when-do-you-pay-taxes-on-your-second-home-120/>, 검색일자: 2024. 2. 27.

17) 간주수익률이 적용되는 세 가지 자산 유형은 저축, 부채 및 기타자산이며, 이에 대한 2024년 간주수익률은 5.88%로 해당 발표 전 이미 확정된 바가 있음

18) News IBFD, "Netherlands Presents Definitive 2023 Deemed Returns for Savings and Debts in Box 3," 2024. 1.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1-26_nl_2.html, 검색일자: 2024. 2. 27.



인도

로부터 납세자에게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조사: 권순오 세무사>

[미납 세금에 대한 납부 면제 발표]

■ 인도의 중앙직접세위원회(CBDT)는 소득세, 재산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미납 세금 청구의 면제 또는 소멸에 관한 명령을 발표함¹⁹⁾

- 2009~2010 과세연도까지의 미납분은 2만 5천 인도루피²⁰⁾까지, 2010~2011 과세연도부터 2014~2015 과세연도까지의 미납분은 1만인도루피²¹⁾까지 납부 의무가 소멸됨
- 해당 명령은 2024년 연합 예산의 임시 안에 따른 조치이며 소규모, 미검증, 분쟁의 여지가 있는 과거 미납세액들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생긴 정직한 납세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후 연도 결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임²²⁾

■ 명령에 따르면 면제된 청구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면제 후 납부 지연에 대한 이자는 부과되지 않음

- 단, 납세자는 면제분에 대해 공제·환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진행 중인 형사 소송 등 소송으



인도네시아

[전기 자동차 판매에 대한 VAT 인센티브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는 4륜 배터리 전기차 및 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인센티브를 2024년 12월까지 연장함²³⁾

- 기존 부가가치세 규정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인센티브를 규정하였음

■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은 국내 제조 부품의 비중 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 면제 또는 10% 면제로 구분됨

-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20~40%인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버스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5%를 면제함
- 현지에서 제조된 부품이 40% 이상인 4륜 배터리 구동 전기자동차 및 버스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10%를 면제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순오 세무사>

19) IBFD, "Tax Authority Issues Guidelines for Extinguishment of Outstanding Tax Demand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in_1.html, 검색일자: 2024. 2. 29.

20) 2024년 3월 6일 원화 환산 시 약 40만 2,500원임

21) 2024년 3월 6일 원화 환산 시 약 1만 6,100원임

22) Economictimes.indiatimes, "Taxpayers, check ITR portal NOW: Pending tax demand of up to Rs 1 lakh per individual waived by govt," 2024. 2. 29.,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wealth/tax/taxpayers-check-itr-portal-now-pending-tax-demand-up-to-rs-1-lakh-per-individual-waived-by-govt-final/articleshow/107814699.cms?utm_source=contentofinterest&utm_medium=text&utm_campaign=cppst, 검색일자: 2024. 2. 29.

23) IBFD, "Indonesia Extends VAT Incentive on Sale of Electric Vehicles," 2024. 2. 2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6_id_2.html, 검색일자: 2024. 2. 29.



싱가포르

[2024년 예산안 발표]

■ OECD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2.0 원칙에 따른 글로벌 최소 법인세 체계 국제 표준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함²⁴⁾

- 2025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에 모회사가 있는 연간 연결 수익 7억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그룹(MNE, Multinational Enterprise)의 해외 이익에 적용되는 소득에 최소 유효세율 15%를 적용할 예정임

■ 연구개발(R&D) 활동 지원을 위한 법인세 환급형 투자 세액공제(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제도 도입²⁵⁾

- 일정 조건을 충족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 미납액 상계를 위해 최대 10년 동안 적격 지출의 최대 50%에 대해 환급형 투자 세액공제(RIC,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신청이 가능함
 - 미사용 환급액은 수령조건 충족일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으로 회사에 환급신청 가능
- 지원 조건이 되는 적격 프로젝트 및 적격 지출은 고부가가치로써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창출하는 투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음
 - ① 새로운 생산 역량 투자, ② 디지털·전문

서비스 또는 생산망 관리 분야 범위 확장이나 신설, ③ 본사 사업 또는 우수 센터의 확장이나 설립, ④ 상거래 회사의 설립이나 규모 확장, ⑤ 연구 및 기술 개발, ⑥ 탈탄소화 목표 및 솔루션 구현

■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부동산의 연간 가액(Annual value) 증가를 반영한 재산세 과세표준 조정²⁶⁾

- 2년간 싱가포르의 주거용 부동산의 연간 가액(Annual Value) 증가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율 과세표준 범위가 조정될 예정임

<표 2> 부동산 변동가액을 반영한 싱가포르의 재산세 과세표준

(단위: %, 싱가포르달러)

세율	기존	개정(2025년 1월 1일부터)
0	0~8,000 미만	0~12,000 미만
4	8,000 이상~30,000 미만	12,000 이상~40,000 미만
6	30,000 이상~40,000 미만	40,000 이상~50,000 미만
10	40,000 이상~55,000 미만	50,000 이상~75,000 미만
14	55,000 이상~70,000 미만	75,000 이상~85,000 미만
20	70,000 이상~85,000 미만	85,000 이상~100,000 미만
26	85,000 이상~100,000 미만	100,000 이상~140,000 미만
32	100,000 이상	140,000 이상

출처: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2023.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검색일자: 2023. 2. 29. 참고로 저자 작성

24) IBFD, "Singapore Budget 2024: Highlights of Corporate and Individual Tax Proposals," 2024. 2.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16_sg_1%23tns_2024-02-16_sg_1, 검색일자: 2024. 3. 5.
 25)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for Finance Proposes Implementation of Income Inclusion Rule, Domestic Top-Up Tax,"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2-23_sg_2, 검색일자: 2024. 3. 5.
 26)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검색일자: 2024. 3. 5.

■ 주거용 부동산 대체 구입자 및 주택 개발업체를 위한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Additional Buyer's Stamp Duty) 환급 제도 개정 시행²⁷⁾

- 2024년 2월 16일부터 주택 개발업체가 주거용 부동산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개발 주택을 90% 이상을 판매한 경우,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감면액 회수율이 판매 비율에 따라 1~10%까지 낮아질 예정임

- 주택 개발업체에 부과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40% 중 35%는 감면 신청 대상으로, 5년 이내 개발된 주택을 모두 판매하지 못할 시 이자와 함께 전액 회수되는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주택 판매를 지원하고자 함

- 55세 이상 미혼 납세자는 첫 번째 보유 주택을 대체한 두 번째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두 번째 주택 취득에 대한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첫 번째 소유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
- 원래 보유하는 주택보다 대체 취득 주택의 가치가 낮아야 함

- 첫 번째 소유 주택 판매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 환급 신청서 제출

- 두 번째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부과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ABSD)는 20%며 기혼자의 두 번째 주택 대체 구매에 대한 환급 제도를 노령 미혼자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2024년 2월

16일부터 시행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정호림 세무사>



호주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 호주 재무부는 2024년 1월 생활비 경감을 위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 조치를 발표함²⁸⁾

- 기존 19%와 32.5% 세율이 적용되던 두 번째 및 세 번째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각각 16%와 30%로 인하함

- 또한 과세표준 구간 내 최대 금액은 세 번째 구간은 12만호주달러에서 13만 5천호주달러, 네 번째 구간은 18만호주달러에서 19만호주달러로 인상함

- 이에 따라 45%의 최고 세율은 19만호주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부터 적용됨

<표 3> 호주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변경안

(단위: 호주달러, %)

구분	기존(2023~2024년)		변경(2024~2025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	18,200 이하	0	18,200 이하	0
2	18,201~45,000	19	18,201~45,000	16
3	45,001~120,000	32.5	45,001~135,000	30
4	120,001~180,000	37	135,001~190,000	37
5	180,000 초과	45	190,000 초과	45

출처: The Treasury(Australia), "Tax cuts to help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treasury.gov.au/tax-cuts>, 검색일자: 2024. 2. 28.

27) IBFD, "Budget 2024 In Depth: Minister of Finance Proposes to Adjust Property Tax Rates Annual Value Bands, Stamp Duty on Immovable Property, CPF Rates," 2024. 2. 2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23_sg_5.html, 검색일자: 2024. 3. 5.

28) The Treasury(Australia), "Tax cuts to help with the cost of living," <https://treasury.gov.au/tax-cuts>, 검색일자: 2024. 2. 28.

- 본 조치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OECD

[필라1 Amount B 보고서 발표]



뉴질랜드

[OECD 이전가격 접근법 미채택 결정]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3년 2월 23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로 물품 반입 시 OECD의 새로운 이전가격 접근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힘^{29),30)}
 - 특정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접근법을 단순화하는 OECD의 Amount B는 회원국에 202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OECD의 이전가격 접근법의 도입으로 현재의 규칙이나 관행이 변경되는 내용은 없어, 자체 규칙에 근거한 이전가격 처리를 유지하고자 함
 - 소규모 외국인 소유 도매 유통업체에 대한 기존 단순화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기존 이전가격 규정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 OECD는 2024년 2월 19일, 필라1 Amount B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이전가격 지침(TPG, 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 반영함³¹⁾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필라1 Amount B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³²⁾
 - 필라1 Amount B 보고서는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Baseline Marketing and Distribution Activities)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는 접근법에 대한 내용임
 - 각 관할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격 기준 유통업체에 대한 Amount B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³³⁾
- 보고서의 내용은 OECD 이전가격 지침 제4장의 부록에 반영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29) Bloomberg Tax, "New Zealand Opts Out of OECD Transfer Pricing Approach," 2024. 2. 27.,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new-zealand-opts-out-of-oecd-transfer-pricing-approach>, 검색일자: 2024. 2. 28.

30) Inland Revenue(New Zealand), "OECD/G20 Inclusive Framework Two-Pillars Solution," <https://www.ird.govt.nz/international-tax/business/inclusive-framework-two-pillars-solution>, 검색일자: 2024. 2. 28.

31) OECD,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Release of Amount B report to simplify transfer pricing rules and conforming changes to the Commentary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2024. 2. 19., https://www.oecd.org/tax/beps/release-of-report-on-amount-b-relating-to-the-simplification-of-transfer-pricing-rules-and-conforming-changes-to-the-commentary-of-the-oecd-model-tax-convention.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2-02-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4. 2. 27.

32) OECD, "Pillar One - Amount B," <https://www.oecd.org/tax/beps/pillar-one-amount-b-21ea168b-en.htm>, 검색일자: 2024. 2. 29.

33) 필라1 Amount B의 시행은, 2025년 1월 이후 국가별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는 1단계, 필라1 Amount A 발표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되며, 발표된 합의안은 1단계의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임(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보도참고) 디지털세 필라 1 어마운트 비(Amount B) 이전가격 지침 반영」, 2024. 2. 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6180#pressRelease>, 검색일자: 2024. 2. 29.)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이사회 및 의회, 재정준칙 개정 등을 포함하는 EU 집행위원회의 경제 거버넌스 체계¹⁾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 도출(2024. 2. 10.)²⁾
 -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재정준칙 등을 수립한 이래 여러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개정되었고³⁾ 최근 팬데믹과 높은 채무 수준과 금리 상황, 기존 체계의 한계, 공공 투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혁을 진행

- 그린 및 디지털 전환 등의 투자를 보호하면서 ‘점진적이고 현실적이며 지속가능하고 성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적자와 채무를 감소
- 재정준칙 관련 주요 개정사항은 재정·개혁·투자 목표를 하나의 계획에 통합하는 중기 재정 계획의 도입 관련 사항임
 - 회원국은 4년(혹은 5년)에 걸친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조정 경로⁴⁾를 함께 집행위에 제출
 - EU 집행위는 재정적자와 채무가 GDP 대비 각각 3%와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통상 4년의 재정조정 기간⁵⁾ 동안 참조 궤적⁶⁾을 회원국에 보내고 이를 준수하도록 함
- 경제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EU 의회와 이사회

- 1)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Economic governance framework)는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유럽 경제통합동맹의 핵심 구조 중 하나로 회원국의 경제 정책 조정 및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 및 절차 체계를 의미
 - ‘EU 재정정책 체계(안정성장협약 포함)’와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로 구성
 - 안정성장협약에 따른 정책 조정은 European Semester를 통해 매년 일련의 정책 조정 프로세스 형태로 회원국 정책들을 조정 및 감시
- 2)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Economic governance review: Council and Parliament strike deal on reform of fiscal rules,” 2024. 2. 1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2/10/economic-governance-review-council-and-parliament-strike-deal-on-reform-of-fiscal-rules/>, 검색일자: 2024. 2. 13.;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 검색일자: 2024. 2. 21.; EU 집행위, “Commission welcomes political agreement on a new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fit for the future,” 2024. 2. 10.,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711, 검색일자: 2024. 2. 13.
- 3) · 마스트리히트 조약(1992)을 통해 재정준칙 규정(일반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 일반정부 총채무 GDP 대비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안정성장협약(1997)을 규정하여 예방적 조치(The preventive arm)와 교정적 조치(The corrective arm)와 같은 강제 메커니즘 도입(재정적자 기준을 초과하거나, 채무 기준을 초과하고 채무 감축 속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안정성장협약의 교정적 조치(유로지역 국가 한정)를 시행하여 초과적자시정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EDP))를 개시)
 - 2005년 유로지역 경제성장 둔화 및 연금 개혁 등에 따라 경제 및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예방적 조치 이행 기준 완화 및 교정적 조치 관련 개념 정의를 구체화(안정성장협약 개정(2005))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Six-Pack(2011)을 통해 거시경제 불균형 절차(Macroeconomic imbalance procedure)를 도입하고, 예방적 조치 및 교정적 조치의 감독 및 제재 강화
 - 2013년 Two-pack을 통해 재정준칙 준수를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EU 회원국들의 예산안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일정을 통일(EU 이사회,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 검색일자: 2024. 2. 21.)
- 4)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난 세입·지출 변동을 포함하여 자동 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ser)의 영향을 받지 않아 거시경제 안정화에 용이한 ‘순지출’ 지표를 이용하여 회원국들이 집행위원회의 참조궤적이나 기술적 정보에 따라 재정조정 경로를 작성(순지출(Net primary expenditure)은 총지출에서 이자지출, 경기순환에 따른 실업수당, EU 기금 공동자금조달에 따른 정부지출, EU 기금 수입과 일치하는 EU 프로그램 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의미)
- 5) 재정조정 기간은 4년이나, 회원국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국방 강화와 같은 EU의 공통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개혁 및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최대 7년으로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6) 참조 궤적(Reference trajectory)은 재정 조정 기간 후 회원국의 정부채무가 하향 경로에 있거나 중기적으로 GDP 대비 60%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에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함

<표 1>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정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20년 2월	EU 집행위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효과를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작
2023년 3월 14일	EU 이사회 ⁷⁾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 합의 ⁸⁾
2023년 4월 26일	EU 집행위	공개 토론 및 협의를 반영하여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입법안' 발표
2023년 12월 21일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관한 합의 ⁹⁾
2024년 2월 10일	EU 이사회 및 의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
향후	이사회 상임 대표 위원회와 의회 경제위원회 승인 → EU 이사회 및 의회 공식 투표	

출처: EU 이사회, "Timeline -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timeline-economic-governance-framework/>, 검색일자: 2024. 2. 13.; EU 집행위, "Economic governance review,"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economic-governance-review_en, 검색일자: 2024. 2. 22.

의 정치적 합의는 이사회 상임 대표 위원회와 의회 경제위원회 승인 후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 투표 예정

- 2024년 9월 회원국들이 EU 집행위에 중기 재정계획을 제출한 후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4년 재정감독은 2023년 봄에 발표된 국가별 권고사항을 토대로 진행

■ EU 집행위, 2024년 겨울 전망 발표(2024. 2. 15.)¹⁰⁾

※ EU에서는 연 4회 경제 전망(겨울 전망, 봄 전망, 여름 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 여름과 겨울은 중간 전망으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수치를 업데이트하고, 봄과 가을은 종합 전망으로 거시경제 전망치를 다룸

- (경제성장률) 겨울 중간 전망에서는 2023년 11월 가을 전망치보다 2024년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 2023년 하반기 기술적 경기침체를 피했지만, 2024년 1분기 약세로 시작하였고 최근 경제 지표에 따르면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 반등 가능성은 낮음

- 2023년 EU와 유로지역¹¹⁾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6에서 모두 0.5%로 하향 조정¹²⁾
- 2024년 경제성장률은 EU는 1.3%에서 0.9%, 유로지역은 1.2%에서 0.8%로 하락 전망

7) EU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는 비공식적으로 EU Council로 알려져있으며, 각 EU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률 채택 및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 혼동되는 개념으로 The European Council은 각 EU 회원국의 수장(대통령 혹은 총리)들과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EU의 주요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함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2023, pp. 5~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99>, 2023. 4. 3., 검색일자: 2024. 2. 22.

9) _____, 「KIPF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2023, pp. 6~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5>, 2024. 1. 2., 검색일자: 2024. 2. 22.

10) EU 집행위, "Winter 2024 Economic Forecast: A delayed rebound in growth amid faster easing of inflation," 2024. 2. 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winter-2024-economic-forecast-delayed-rebound-growth-amid-faster-easing-inflation_en, 검색일자: 2024. 2. 19.

11) EU 27개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이 유로지역에 해당되고, 2024년 기준 유로지역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며 비유로지역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임

12) 2023년은 팬데믹 이후 경제반등에서 2022년 말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된 이후 가계 구매력 하락, 대외수요 감소, 강도 높은 통화 긴축, 2023년 재정 지출 부분적 철회 등으로 경제활동이 정체되어 약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냄

- 2025년 경제성장률은 EU에서 1.7%, 유로지역에서 1.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물가) 2023년 가을 전망 이후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물가상승 압력(홍해사태¹³⁾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EU의 물가상승률(HICP)¹⁴⁾은 2023년 6.3%에서 2024년에는 3.0%, 2025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유로지역은 2023년 5.4%에서 2024년에는 2.7%, 2025년에는 2.2%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금융·노동시장) 금융시장 신용 조건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시장은 완화 사이클이 조기에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음¹⁵⁾
-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과 중동지역 분쟁 등 불확실성이 높음
 - 무역 분쟁 추가 발생은 공급망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쳐 생산 차질 및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주요국 경제전망) 2024년 다수 회원국에서 가을 전망치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낼

전망

- (벨기에) 소매 가격 상승의 완화와 고용 증가 전망으로 민간소비 확대가 예상되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가을 전망과 동일하게 1.4%, 2025년 1.5%로 전망
- (독일) 2024년 투자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비관적인 투자 심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인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202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가을 전망에서 0.5%p 하향 조정된 0.3%로 전망
- (프랑스)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 하반기 저조한 이월 실적으로 가을 전망에 비해 0.3%p 하락한 0.9%로 전망되고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민간 소비가 증가할 전망
- (네덜란드) 2023년 민간 소비 및 수출 감소 등 뚜렷한 경제 둔화를 보였고, 2024년에는 민간소비의 일부 회복과 정부 투자 지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2023년 부진한 실적이 영향을 미쳐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가을 전망 대비 0.7%p 감소한 0.4%로 전망
- (스웨덴) 2023년 민간 소비와 주택 건설 감

13) 2023년 11월부터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할 때까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여 해상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물류 선박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로 우회하면서 연료비와 운항 기간 증가가 장기화 되고 있음. 2024년 1월 24일 기준 동남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상품 운송비용은 전월 대비 약 3배(6천달러) 증가하였고, 2023년 10월 대비 2024년 1월 아시아와 유럽 간의 운송 기간이 10~15일 증가, (EU 집행위, "Winter 2024 Economic Forecast: A delayed rebound in growth amid faster easing of inflation," 2024. 2. 15., Box 1.1,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winter-2024-economic-forecast-delayed-rebound-growth-amid-faster-easing-inflation_en, 검색일자: 2024. 2. 27., Euronews, "Inflation risk as Red Sea attacks send shipping costs sky high," 2024. 1. 24.,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4/01/24/inflation-risk-as-red-sea-attacks-send-shipping-costs-sky-high>, 검색일자: 2024. 2. 27.)

14) 소비자물가지조화지수(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는 유럽연합 내에서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EU 회원국 간에 비교가능한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됨(CPI는 특정 국가지역의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일반적 소비 패턴에 기반하여 계산)

15) 2023년 3분기 20~64세의 고용률은 EU에서 75.5%, 유로지역은 74.8%로 이전 분기에 기록한 최고치에 근접한 수치로 집계되어 노동시장 강세를 유지하였고, 노동력 보유(Labour hoarding)비율은 2024년 1월 약간 낮아졌으나 EU 회원국 중 경제규모 큰 나라들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노동력 보유비율은 1년 전보다 여전히 높음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HICP)					
	겨울 전망(2024년 2월)			가을 전망(2023년 11월)			겨울 전망(2024년 2월)			가을 전망(2023년 11월)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	2024년	2025년
벨기에	1.5	1.4	1.5	1.4	1.4	1.5	2.3	3.5	2.3	2.4	4.2	1.9
독일	-0.3	0.3	1.2	-0.3	0.8	1.2	6.0	2.8	2.4	6.2	3.1	2.2
에스토니아	-3.5	0.6	3.2	-2.6	1.9	2.7	9.1	3.2	1.9	9.4	3.5	2.1
아일랜드	-1.9	1.2	3.2	-0.9	3.0	3.4	5.2	2.2	1.9	5.3	2.7	2.1
그리스	2.2	2.3	2.3	2.4	2.3	2.2	4.2	2.7	2.0	4.3	2.8	2.1
스페인	2.5	1.7	2.0	2.4	1.7	2.0	3.4	3.2	2.1	3.6	3.4	2.1
프랑스	0.9	0.9	1.3	1.0	1.2	1.4	5.7	2.8	2.0	5.8	3.0	2.0
크로아티아	2.6	2.6	2.8	2.6	2.5	2.8	8.4	2.5	2.0	8.1	2.4	1.6
이탈리아	0.6	0.7	1.2	0.7	0.9	1.2	5.9	2.0	2.3	6.1	2.7	2.3
사이프러스	2.4	2.8	3.0	2.2	2.6	2.9	3.9	2.4	2.1	4.1	3.0	2.2
라트비아	-0.6	1.7	2.7	-0.2	2.4	3.0	9.1	2.2	2.2	9.6	3.2	1.9
리투아니아	-0.3	2.1	3.0	-0.4	2.5	3.4	8.7	2.4	2.4	8.8	2.9	2.5
룩셈부르크	-0.8	1.3	2.1	-0.6	1.4	2.0	2.9	2.6	2.3	3.2	3.0	1.8
몰타	6.1	4.6	4.3	4.0	4.0	4.2	5.6	2.9	2.7	5.7	3.3	3.1
네덜란드	0.2	0.4	1.6	0.6	1.1	1.7	4.1	2.6	2.0	4.6	3.7	2.0
오스트리아	-0.7	0.6	1.4	-0.5	1.0	1.3	7.7	4.0	3.0	7.7	4.1	3.0
포르투갈	2.3	1.2	1.8	2.2	1.3	1.8	5.3	2.3	1.9	5.5	3.2	2.4
슬로베니아	1.3	1.9	2.7	1.3	2.0	2.7	7.2	2.9	2.0	7.5	3.9	2.4
슬로바키아	1.1	2.3	2.6	1.3	1.7	2.0	11.0	3.5	2.6	10.8	5.2	3.0
핀란드	-0.4	0.6	1.6	0.1	0.8	1.5	4.3	1.4	1.5	4.4	1.9	2.0
유로지역 20개국	0.5	0.8	1.5	0.6	1.2	1.6	5.4	2.7	2.2	5.6	3.2	2.2
불가리아	2.0	1.9	2.5	2.0	1.8	2.6	8.6	3.4	2.9	8.8	4.0	2.9
체코	-0.4	1.1	2.8	-0.4	1.4	3.0	12.0	2.9	2.3	12.2	3.2	2.4
덴마크	0.5	0.9	1.6	1.2	1.4	1.6	3.4	1.7	2.2	3.6	2.4	2.1
헝가리	-0.8	2.4	3.6	-0.7	2.4	3.6	17.0	4.5	4.1	17.2	5.2	4.1
폴란드	0.2	2.7	3.2	0.4	2.7	3.2	10.9	5.2	4.7	11.1	6.2	3.8
루마니아	1.8	2.9	3.2	2.2	3.1	3.4	9.7	5.8	3.6	9.8	5.9	3.4
스웨덴	-0.1	0.2	1.6	-0.5	-0.2	1.3	5.9	1.7	1.9	5.7	1.8	2.2
EU 27개국	0.5	0.9	1.7	0.6	1.3	1.7	6.3	3.0	2.5	6.5	3.5	2.4

출처: EU 집행위,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24, Statistical Annex," <Table 1>, <Table 3>,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document/download/2b7b7fae-0844-4dd1-bedd-619c3544aaed_en?filename=ip268_en_0.pdf, 검색일자: 2024. 2. 16.

소로 -0.1%의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2024년 초에는 경제 둔화가 유지되고 하반기 가계 소비 안정화에 따라 경제 회복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은 가을 전망 -0.2% 대비 0.4%p 개선된 0.2%로 전망

■ EU 특별 정상회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관련 추가 자금 지원 승인 및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논의(2024. 2. 1.)¹⁶⁾

-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¹⁷⁾ EU 정상들은 특별 정상회의에서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중간 개정에 대해 논의
 - (논의 배경) 현재 적용 중인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해 유럽 의회가 개정을 촉구(2023년 5월)함에 따라 EU 집행 위원회가 수정안을 발표(2023년 6월)한 후 유럽 의회, 정상회의 등에서 수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¹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EU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EU 당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예산

개정을 요구

- (논의 결과) 일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646억 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 지원에 합의¹⁹⁾
 - 전체 추가 자금 중 330억유로는 대출, 316억 유로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 대출은 금융시장에서 EU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보조금 중 106억유로는 기존 자금의 재배정, 210억유로는 신규 자금을 통해 조달
- (세부 계획) 추가 자금 지원에 우크라이나 지원, 이주 및 국경 관리, 핵심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²⁰⁾ 구축,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의 이자 지급, 특수 기금, 신규 자체 재원, 회원국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포함
 -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의 재건 및 현대화, 사회적 결속 및 EU 통합 촉진을 위해 2024~2027년에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을 통해 500억유로 한도의 재정 지원 예정
 - 330억유로는 대출, 170억유로는 상환이

16)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Special European Council, 1 February 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4/02/01/>, 검색일자: 2024. 2. 15.; European Council,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 February 2024)-Conclusions," 2024. 2. 1.,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69874/20240201-special-euco-conclusions-en.pdf>, 검색일자: 2024. 2. 15.

17) EU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는 EU의 우선 순위에서 지출 가능한 연간 예산의 최대 한도를 규정한 7개년 재정 계획인 EU의 장기 예산임

1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상반기 재정동향』, 20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년 하반기 재정동향』, 2024(발간 예정) 등의 자료를 참고

19) 기존에 다년도 재정프레임워크의 추가 자금 규모를 EU 집행위원회는 658억유로, 유럽 의회는 758억유로로 제안한 바 있음(European Parliament, "Parliament argues for a top-up to multi-annual budget for crisis response," 2023. 10. 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30929IPR06130/parliament-argues-for-a-top-up-to-multi-annual-budget-for-crisis-response>, 검색일자: 2024. 2. 27.)

20)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 불필요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
- 미사용 지출은 자동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고 연간 금액 중 전년 이월 지출액을 우선 차감
- EU 집행위원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집행에서 사기, 부패, 부정 지출, 이해충돌 등의 방지 및 통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
-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계획의 채택·개정, 집행위원회 평가에 기반한 지급 승인·정지에 대한 결정 채택 등 기금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 EU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기금 집행에 대해 매년 논의
- (이주 및 국경 관리)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이주 및 국경 관리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20억유로를 추가 지원
- (주변국 및 국제적 지원)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76억유로의 추가 자금을 통해 터키 등 관련 국가의 시리아 난민을 지원하고 난민 이주 경로 협력과 자금 지원을 통해 서발칸 반도, 남부 인접국 및 아프리카도 지원
- (전략 기술 플랫폼(STEP)) STEP의 우선 순위에는 2021~2027년에 100%의 EU 분담 비율, 30%의 선지급 예산 비율을 적용,
- 국방 분야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유럽방위기금에 15억유로 추가 배정, 회원국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급 신청 및 서류 제출 기한 1년 연장 등
- (경제회복기금 이자 지급) 경제회복기금 이자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식을 활용
 - (1단계) 기존 경제회복기금의 연간 예산을 모두 사용
 - (2단계) 이자 지급액이 1단계로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예산 집행 잔액, 우선순위 재설정, 일반 예비비(flexibility instrument), Single Margin Instrument²¹⁾ 등 특별 기금을 통한 여유 자금을 활용해 연간 예산 절차 제도 내에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 (3단계) 이후 추가 자금이 필요 시 예외적으로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한도를 상회해 신규 기금을 도입하며 이는 특정 법률에 근거해 이월되지 않는 전년도 프로그램 편성 예산의 미사용 자금으로 우선 조달
- (특수 기금) EU 및 제3국의 자연재해 및 인도주의적 위기를 고려해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을 15억유로 증액
- (신규 자체 재원) EU는 새로운 자체 재원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2023년 이후 도입되는 신규 자체 재원 수입은 경제회복

21) 지급기준 및 승인기준 예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Single Margin Instrument를 통해 전체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기간의 총한도 내에서 예산과 지출 한도 간의 차액을 회계연도 또는 예산 대분류(heading) 간 이전 가능

- 기금 차입금의 조기 상환에 활용할 예정
- (지급기준²²⁾ 예산에 미치는 영향) 예산의 유연성 확보 수단 중 하나인 Single Margin Instrument의 지급기준 예산 총 한도는 유지되나 승인기준 예산 증액에 연계한 지급기준 예산 제공을 위해 2025년과 2026년의 한도를 서로 조정
 - (회원국 예산에 미치는 영향 경감) 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를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개정된 우선순위에 일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자금 중 106억 유로를 재배정
 - 인접국·개발·국제협력기구 및 가입 후보국 지원제도 등에서 45억유로, 연구 혁신 프로그램(Horizon Europe)에서 21억유로, 브렉시트 조정 준비금에서 6억유로,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에서 총 13억유로, 공동농업정책 및 결속기금의 EU 집행위원회 직접 관리 자금에서 11억유로, 보건 프로그램(EU4Health)에서 10억유로를 조달
 - (향후 일정) 향후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중간 개정안 채택 절차가 필요
 - (우크라이나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계속 제공할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 유럽평화기금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와 총 재정한도 증액 제안을 검토
 - 우크라이나에 탄약 및 미사일을 신속히 공급하도록 촉구
 -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해 러시아 자산 동결에서 발생한 수입을 활용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에 환영 의사를 표명

〈표 3〉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추가 자금 배분 계획

(단위: 십억유로)

구분	금액	비고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	50.0	보조금 170억유로, 용자 330억유로
이주 및 국경 관리	2.0	난민·이주·통합기금 8억유로, 국경관리 및 비자 관련 10억유로, EU 난민기구 2억유로
주변국 및 국제적 지원	7.6	시리아 난민 36억유로, 남부 인접국 20억유로, 서발칸 20억유로
전략기술 플랫폼 관련 유럽방위기금	1.5	-
일반 예비비(flexibility instrument)	2.0	-
연대 및 긴급 원조 준비금	1.5	유럽 연대 예비비 10억유로, 긴급 구호 예비비 5억유로
합계	64.6	보조금 316억유로, 용자 330억유로

출처: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Special European Council, 1 February 2024,"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european-council/2024/02/01/>, 검색일자: 2024. 2. 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2) EU 예산안은 승인기준과 지급기준으로 구분. 승인기준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또는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하고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임

- (기타 안건) 이 외에도 중동 정세, 농업 정책 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



IMF

■ IMF 집행위원회, 중국과의 연례협의²³⁾ 결과 발표(2024. 2. 2.)²⁴⁾

- (현황) 중국은 2000년 이후 연평균 8% 이상의 GDP 성장률을 보였으나 불균형과 취약성 확대를 동반함
 - 인프라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인해 부동산 개발업체, 지방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LGFVs)²⁵⁾의 부채 수준이 증가하면서 내부 불균형이 증가
 - 최근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컨트리 가든의 채무 불이행으로 살아남은 개발업체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미완공 주택의 적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더욱 위축됨
- (전망)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2022년에 3%에서 2023년에 5.4%로 반등했으나, 지속되는 부동산 부문의 약세와 침체된 외부 수요로 인해 2024년에 4.6%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역풍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2028년에 3.4%까지 하락할 전망
- 한편 물가상승률은 아웃풋 갭이 축소되고 원자재 가격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증가 전망

- (위험) 예상보다 강한 부동산 부문의 위축이 민간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폭시켜 디스인플레이션 압력과 대출 능력이 약화되는 거시 금융의 악순환 고리(adverse macro-financial feedback loops)를 초래할 위험
 - 대외적으로는 예상보다 큰 외부 수요 약화, 세계 금융의 추가적 긴축,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위험 요소임
- (정책) 단기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완화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시행하고, 부동산 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됨
 - 특히 부동산 부문에서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자를 구조조정하고 주택 완공을 지원하며, 시장 기반 가격 조정을 더 많이 허용하고, 사전 판매 모델을 개혁²⁶⁾하는 등의 조치와 더불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를 줄

23) 연례협의(Article IV Mission)는 IMF 협정 제4조에 의거, 연 1회 IMF 협의단이 회원국과 경제 발전과 정책을 논의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의결하는 양자 간 점검 활동

24)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2. 2., <https://www.imf.org/en/Publications/CR/Issues/2024/02/01/People-s-Republic-of-China-2023-Article-IV-Consultation-Press-Release-Staff-Report-and-544379>, 검색일자: 2024. 2. 20.

25)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26) 사전 판매 주택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결제대금예치제(escrow rule), 제3자 완공 보험(third-party completion insurance) 마련

<표 4>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증가율(연평균)	5.4	4.6	4.0
실업률	5.2
소비자물가상승률(CPI Inflation, 연평균)	0.4	1.3	2.0
구조적재정수지(GDP 대비 %)	-7.1	-7.3	-7.3
중앙정부 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GDP 대비 %)	55.3	58.7	62.1
확장 채무(Augmented debt, GDP 대비 %) ¹⁾	116.2	122.0	127.5
경상수지(GDP 대비 %)	1.5	1.3	1.2

주: 1) 확대된 채무(Augmented debt)는 예산 외 정부 기금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LGFVs) 용자 포함

1. 2024년, 2025년은 예측치

출처: IMF,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3 Article IV Consultation," 2024. 2. 2.

- 이기 위한 대체 투자 옵션²⁷⁾을 제공할 것을 권고
- 재정 부문은 지방정부 채무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 주도의 포괄적 전략 실행이 필요하며 중기적으로 예산 외 투자(주로 LGFVs) 감축, 광범위한 사회보장 및 세제 개혁*을 바탕으로 재정건전화를 이행할 것을 권고

*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역진적 사회보장기여금을 축소

- 나 연말에 모멘텀을 상실함
- 미국 및 신흥국경제는 강한 경제성장을 보인 반면,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경제 성장이 일부 상쇄됨
 - 긴축적 금융 환경이 신용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최근 지표들²⁹⁾은 온건한 성장세(moderate growth)를 시사하고 있으며, 세계무역은 여전히 침체되어 있음
 - 홍해 선박 공격으로 운송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배송이 지연되면서, 생산 일정의 차질과 가격압박이 가중되고 있음

* OECD 연구에 따르면 최근 운송비용이 100% 증가하였으며, 사태가 지속될 경우 OECD 국가의 연간 수입 물가상승률은 약 5%p 증가하고, 1년 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OECD

■ OECD, 2024년 중간경제전망보고서 발표(2024. 2. 5.)²⁸⁾

- (현황) 2023년 세계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회복력이 입증되었으나 연말에 모멘텀을 상실함
- (경제전망) 세계 GDP 성장률은 2023년에 3.1%에서 2024년 2.9%로 감소한 이후, 금융

27) 자발적 민간 연금(third pillar) 및 보충형(supplementary) 의료보험 등

28)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February 2024: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Growth," 2024. 2. 5., <https://doi.org/10.1787/0fd73462-en>, 검색일자: 2024. 2. 6.

29) 구매자관리지수(PMI), 소비자신뢰도 등 고빈도활동지수(High-frequency activity indicators)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2025년에 3.0%로 회복될 전망

- (미국) 연간 GDP 성장률은 가계지출과 강력한 노동시장 여건에 힘입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 2.1%, 2025년에 1.7%로 완화

- (유로지역) 2024년에 0.6%, 2025년에 1.3%로 전망되며, 실질소득이 강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전에 단기적으로는 긴축적 금융 환경으로 활동이 제약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추가적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수요 둔화, 높은 부채, 부동산 시장 약세가 반영되어 2024년에 4.7%, 2025년 4.2%로 전망

- (한국) 2024년에 2.2%, 2025년에 2.1%로 전망

- (물가)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2025년 말까지 목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근본적인 가격 압력이 완전히 억제되었다고 확신하기는 이르다고 평가

-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 6.6%에서 2025년 3.8%로 하락하고,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 2.5%에서 2025년 2.1%로 완화될 전망

- (위험) 높은 지정학적 긴장(특히 중동 분쟁)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동 및 물가상승률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물가상승률의 급등(Upside surprises in inflation)과 함께 장기 정책금리가 인상될 경우 금융자산의 급격한 가격 조정을 촉발할 수 있음

- (정책권고)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되며,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세·지출 개혁과 구조적 개혁이 필요

- (통화정책) 근본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신중한 통화정책이 요구됨

- 물가상승률이 감소함에 따라 정책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요국은 당분간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권고

- (재정정책)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강력한 단기 노력뿐만 아니라 조세 및 지출 개혁이 필요함

- 기대 수명 변화에 따른 법정 퇴직 연령을 연장하는 등 연금 개혁과 노년층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강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향후 재정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세입 측면에서는 노동에 대한 세금을 재산과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하고 세금 면제를 줄이는 것이 과세기반과 세입을 늘리고 성장 친화적인 조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함

- (구조적 정책) 성장의 핵심 기반인 교육 영역의 성과 개선이 필요하며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노동 및 재화시장의 투자 및 노동력 참여를 방해하는 제약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야 함

<표 5>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중간경제전망	11월 전망과 차	중간경제전망	11월 전망과 차
세계	3.1	2.9	0.2	3.0	0.0
G20 ¹⁾	3.3	2.9	0.1	3.0	0.0
호주	2.0	1.4	0.0	2.1	0.0
캐나다	1.1	0.9	0.1	1.9	0.0
유로 존	0.5	0.6	-0.3	1.3	-0.2
독일	-0.1	0.3	-0.3	1.1	-0.1
프랑스	0.9	0.6	-0.2	1.2	0.0
이탈리아	0.7	0.7	0.0	1.2	0.0
스페인 ²⁾	2.5	1.5	0.1	2.0	0.0
일본	1.9	1.0	0.0	1.0	-0.2
한국	1.3	2.2	-0.1	2.1	0.0
멕시코	3.1	2.5	0.0	2.0	0.0
튀르키예	4.1	2.9	0.0	3.1	-0.1
영국	0.3	0.7	0.0	1.2	0.0
미국	2.5	2.1	0.6	1.7	0.0
아르헨티나	-1.0	-2.3	-1.0	2.6	0.7
브라질	3.1	1.8	0.0	2.0	0.0
중국	5.2	4.7	0.0	4.2	0.0
인도 ³⁾	6.7	6.2	0.1	6.5	0.0
인도네시아	4.9	5.1	-0.1	5.2	0.0
러시아	3.1	1.8	0.7	1.0	0.0
사우디아라비아	-0.9	2.4	-0.6	4.2	-0.5
남아프리카공화국	0.5	1.0	0.0	1.2	0.0

주: 1. 유럽연합은 G20의 회원국이지만, G20 집계에는 자체적으로도 회원국인 국가만 포함됨

2. 스페인은 G20의 영구 초대국(permanent invitee)

3.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

출처: OECD,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February 2024, p. 5, <Table 1>



미국

가결(2024. 2. 13.)

- (배경) 바이든 정부는 2023년 10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긴급 추경 세출예산을 의회에 요청³²⁾하였으나 양당이 이견을 보이며 최종 합의³³⁾에 이르지 못하였고, 2024년 2월 상원을

[예산·결산 등]

- 미국 의회 상원, 국가 안보 법안(H.R. 815)^{30), 31)}

30) 국가 안보 법안(H.R. 815) 공개(2024. 2. 4.)

31)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Murray Releases Text of Bipartisan 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 2024. 2. 4.,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murray-releases-text-of-bipartisan-national-security-supplemental>, 검색일자: 2024. 2. 8.

32) 당시 2024회계연도에 대한 정규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지원 등의 안보 이슈가 포함된 추경 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하였던 것임

33) 당시 법안 규모는 1,058억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있음(CRFB, "What's in the White House's \$106 Billion Supplemental Request?," 2023. 10. 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중심으로 관련 예산 편성이 재추진되었으나 부결된 후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 끝에 상원 통과되어 하원으로 이송

- (주요 내용 및 규모)³⁴⁾ 국가 안보 법안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군사 및 인도적 지원, 이민·국경안보 등 총 1,183억달러로 편성되었으나 새로운 안에서는 국경안보 항목(약 200억달러 규모)을 제외한 총 953억달러 규모로 재편성
- (향후 전망)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동

<표 6> 미국 국가 안보 법안의 기존안과 수정안 비교

(단위: 억달러)

구분	규모	
	기존	수정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601	601
이스라엘 군사 지원	141	141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인도적 지원	100	91
인도-태평양 지역 지원	48	48
홍해 분쟁 지원	24	24
우크라이나 기타 지원	23	4
국경 안보 등	202	제외
기타	44	44
총계	1,183	953

출처: 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appropriations, "Murray Releases Text of Bipartisan 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 2024. 2. 4.³⁵⁾; "With Republicans Planning to Block Bipartisan Supplemental with Border Policy Changes They Demanded, Murray Releases Supplemental without Border Provisions," 2024. 2. 7.³⁶⁾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하원의 의장은 기존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었기에 향후 의회 통과 불투명³⁷⁾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4. 1. 31.)³⁸⁾
 - 1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기존 수준(5.25-5.50%)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하였으며, 연방준비제도는 다음과 같이 현 경제상황을 평가
 - (경제성장) 경제활동이 강세를 보이며 확장되고 있음
 - (12월 표현) 경제성장은 둔화됨(slowed) → (1월 표현) 강세(solid pace)를 보이며 확장
 - (물가) 물가상승세는 지난 1년간 완화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
 - 자구 변화 없음
 - (노동시장) 고용증가세는 지난해 초부터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

34) CBO, "Senate Amendment 1386 to H.R. 815, the Emergency 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of 2024," 2024. 2. 7.,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2/hr815.pdf>, 검색일자: 2024. 2. 8.

35) 링크: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murray-releases-text-of-bipartisan-national-security-supplemental>

36) 링크: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with-republicans-planning-to-block-bipartisan-supplemental-with-border-policy-changes-they-demanded-murray-releases-supplemental-without-border-provisions>

37) Reuters, "US Senate unveils \$118 billion bill on border security, aid for Ukraine, Israel," 2024. 2. 6., <https://www.reuters.com/world/us/us-senate-unveils-118-billion-bipartisan-bill-tighten-border-security-aid-2024-02-04/>, 검색일자: 2024. 2. 8.

3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보도자료, 2024. 1.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131a1.pdf>, 검색일자: 2024. 2. 22.

- 의미상 자구 변화 없음³⁹⁾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⁴⁰⁾ 고용과 물가 안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물가 상승률이 장기 목표(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
 -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tight)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찾아가며 정상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
 - 명목 임금 상승률 완화, 빈 일자리(vacancy) 감소 등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격차는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수요가 노동공급을 초과한 상태
 -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을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
 - 물가 상승이 완화세를 보이거나 하향기조에 들어섰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좋은 지표 등 지속적인 증거가 필요
- 의회예산처(CBO), 2024~2034 예산·경제 전망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보고서⁴¹⁾ 발표(2024. 2. 7.)⁴²⁾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1.1%(1,880억달러) 감소한 약 1.5조달러 (GDP 대비 5.3%)로 전망되며, 2028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 기조에 들어 2034년에는 적자 규모가 2.6조달러(GDP 대비 6.1%)까지 확대 예상
 - 재정적자는 2024년 감소 이후 2025년 반등하고 2026~2027년 다시 감소한 뒤 2028년부터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2025년의 재정적자의 증가는 납부 연기되었던 세수⁴³⁾가 들어오는 2024년 대비 상대적인 세입의 감소에서, 2026~2027년의 재정적자 감소는 2017년 세금감면법(P.L. 115-97) 많은 조항의 2025년 말 만료에서 기인
 - 지난 50년간 재정적자는 평균적으로 연간 GDP의 3.7%에 상응했으나 2024년부터 2034년까지는 매년 최소 GDP의 5.2%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⁴⁴⁾
 - 향후 10년(2025~2034년)간 재정적자 합산 결과 20조달러에 상응할 것으로 추계되며, 동기간 연평균 재정적자는 GDP 대비 5.7% 수준에 이를 전망
 - (수입) 2024회계연도 연방수입은 전년 대비

39) 의미상 자구 변화는 없으나 헤가 바뀔에 따라 2023년 초를 지칭하는 표현이 “올해 초(earlier in the year)”에서 “지난해 초(early last year)”로 바뀌는 서술 변화가 존재

40) 미국 연방준비제도, “Transcript of Chair Powell’s Press Conference,” 기자회견문, 2024. 1. 31., <https://www.federalreserve.gov/media-center/files/FOMCpresconf20240131.pdf>, 검색일자: 2024. 2. 23.

41) CBO의 예산기준선 전망 보고서는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 / P.L. 93-344)과 적자통제법(Deficit Control Act of 1985 / P.L. 99-177)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의 예산 전망은 2024. 1. 3.까지 입법된 정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제 전망은 2023. 12. 5.까지를 기준으로 작성

42)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4 to 2034,” 2024. 2. 7., <https://www.cbo.gov/publication/59946>, 검색일자: 2024. 2. 22.

43) 미국 국세청의 자연 재해 피해 지역에 위치한 주민 및 회사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 연기와 재해 지역 회사에 대한 IRA(Inflation Reduction Act)의 법인최저한세(CAMT,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부과 관련 세금 구제 제공 등을 일컫음

44) 회계연도 첫일이 주말일 시 일어나는 지출 시기변경의 영향을 조정한 결과(adjusted for timing shift)에 한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11.2%(4,960억달러) 증가한 4.9조달러(GDP 대비 17.5%)로 전망되며, 연방수입은 2024년의 일시적인 확장 이후 2025년 세입의 감소를 거쳐 2034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세입의 증가는 대다수 계획되어 있는 세제 변화에 기인하며 연방준비제도의 송금액⁴⁵⁾ 증가 또한 원인

- (지출) 2024회계연도 연방지출은 전년 대비 5%(3,070억달러) 증가한 6.4조달러(GDP 대비 22.9%)로 전망되며, 연방 지출 규모는 2028년까지 2025년(23.1%)의 수준을 유사하게 유지한 후 2028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34년 GDP 대비 24.1%까지 이를 전망
- 2028년 이후의 증가세는 주요 건강 보장 프로그램(메디케어 등)에 대한 지출 증가와 순이자 비용 상승에 기인

- 2024년 의무지출은 전년 대비 85억달러(2.3%) 증가한 3.9조원(GDP 대비 13.6%),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12억달러(0.7%) 증가한 1.7조원(GDP 대비 6.2%) 전망

- (부채) GDP 대비 연방정부 채무⁴⁶⁾수치는 2024년 99%에서 증가하여 2034년 역대 최고 수준인 116% 전망
- (경제성장) 2024년 실질성장률은 2023년 3.1%에서 1.6%p 하락한 1.5%로, 실업률 증가와 물가상승률 하락과 함께 경제 성장 둔화 전망
- (물가) 2023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2.9%에 이어 2024년 연방준비제도의 장기적 목표(2%)에 근접하는 2.1% 수준으로 둔화되고 2025~2026년 소폭 등락 후 2034년까지 평균 2.0%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 2.2%까지 상승 후 2026년 2.1%로

<표 7> 미국 CBO 재정전망

구분	실적					전망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2034년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3,462	3,421	4,047	4,896	4,439	4,935	4,996	5,351	...	7,168	7,474
지출	4,447	6,550	6,822	6,272	6,135	6,442	6,768	7,042	...	9,724	10,054
재정적자	984	3,129	2,775	1,375	1,695	1,507	1,772	1,692	...	2,556	2,579
연방채무 ¹⁾	16,803	21,017	22,284	24,257	26,240	27,897	29,749	31,515	...	45,739	48,300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6.3	16.3	18.1	19.6	16.5	17.5	17.1	17.5	...	17.9	17.9
지출	21.0	31.2	30.5	25.1	22.7	22.9	23.1	23.1	...	24.2	24.1
재정적자	4.6	14.9	12.4	5.5	6.3	5.3	6.1	5.5	...	6.4	6.2
연방채무 ¹⁾	79.2	100.1	99.6	97.0	97.3	99.0	101.7	103.3	...	114.0	116.0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CB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Table 1-1>, 각 연도

45) 연방준비제도가 수익을 낼 시 비용계상 후 재무부로 송금하는 Federal Reserve remittances to the U.S. Treasury를 말함

46) 정부 내부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 제외

- 소폭 하락 전망
- 2024년의 물가 둔화는 노동에 대한 수요 감소(softener demand)와 임대료의 상승 둔화에 기인하며, 2025년의 물가 소폭 상승은 식료품과 에너지의 가격 상승 제한 요인의 부재와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특정 서비스 부문의 가격 상승 압박 존재가 원인
 - (노동시장) 2024년은 경제성장의 둔화로 노동 수요가 감소하여 고용 증가세의 약화, 실업률 상승, 임금 상승폭의 둔화 전망
 - 실업률은 2023년 4분기 3.7%에서 2024년 4분기 4.4%까지 상승 후, 2025년 상반기의 강한 경제성장세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소폭 하락한 후 2027년까지 4.4%로 상승 전망
 - (이자율) 정책금리는 2024년 1분기까지 현재

수준(5.25~5.50%)을 유지한 후 20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 뒤 2027년 중반까지 2.9% 수준으로 하락 후 유지될 것으로 전망

일본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⁴⁷⁾ 국민부담률 전망 발표(2024. 2. 9.)⁴⁸⁾
 - 2024회계연도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3년 46.1%(실적 전망치)보다 1.0%p 감소한 45.1%로 전망
 - 국민부담률에 재정적자⁴⁹⁾를 고려한 '잠재 국

<표 8>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 추이

(단위: %)

구분	국세 ¹⁾ ①	지방세 ②	조세부담 ③=①+②	사회보장부담 ④	국민부담률 ⑤=③+④	재정적자 ²⁾ ⑥	잠재 국민부담률 ⑦=⑤+⑥
2019년	15.4	10.2	25.7	18.5	44.2	5.3	49.5
2020년	17.3	10.9	28.1	19.6	47.7	14.9	62.7
2021년	18.2	10.7	28.9	19.2	48.1	9.2	57.3
2022년	18.7	10.8	29.4	19.0	48.4	6.3	54.7
2023년	17.3	10.2	27.5	18.6	46.1	8.5	54.6
2024년	16.9	9.9	26.7	18.4	45.1	5.8	50.9

주: 1) 국세에는 특별회계 및 일본전매공사 납부금을 포함. 지방법인 특별세 및 특별법인 사업세는 국세에 포함함

2)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2. 2022회계연도까지는 실적치, 2023회계연도는 실적 전망치, 2024회계연도는 전망치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4. 2. 9., 표 일부 발췌

47) 2024회계연도: 2024년 4월 ~ 2025년 3월

48)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の国民負担率を公表します」, 2024. 2. 9.,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20240209.html>, 검색일자: 2024. 2. 13.

49) 재정적자는 국가 및 지방의 재정수지 적자로 일시적인 특수요인을 제외한 수치, 출처: 일본 재무성, 「国民負担率(対国民所得比)の推移」, 2024. 2. 9., <https://www.mof.go.jp/policy/budget/topics/futanritsu/sy202402a.pdf>, 검색일자: 2024. 2. 1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민부담률'은 2023년 54.6%(실적 전망치)보다 3.7%p 감소한 50.9%로 전망

- 다른 국가와 비교한 국민부담률(국민소득 대비)은 2021년 기준 일본은 48.1%, 미국은 33.9%, 영국은 47.6%이며, 독일은 54.9%, 스웨덴은 55%, 프랑스는 68%로 나타남⁵⁰⁾

■ 일본 내각부, 「2023회계연도 일본 경제 보고서」 발표(2023. 2. 13.)⁵¹⁾

- (개요) 일본 내각부에서는 매년 '일본 경제' 시리즈를 공표하여 일본 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제공, 이번 보고서에서는 2023년 일본 경제 동향을 살펴보고 잠재성장률 인상을 위한 과제를 분석
- (일본 경제 동향) 2023년 일본 경제는 코로나19로부터 완만히 회복하였으나, 기업 부문 호조가 임금 상승 및 투자 확대에 충분히 이어지지 않아 내수가 부진한 상황
- (노동공급 확대 및 가계소득 향상을 위한 과제) 노동투입 면에서의 인구 감소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 분석
 - 자녀가 있는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재교육(re-skilling) 지원 강화, 유연한 부업 환경 정비, 최저임금 인상이 업무조정을 야기하지

않는 제도 구축 등을 통해 근로하여 소득을 얻고자 하는 잠재적인 희망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

- 물가상승을 적극 반영하는 최저임금 구조 검토 등 최저임금 설정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

- (기업부문 동향 및 투자 확대) 기업의 수익 및 투자 동향을 살펴보고, 잠재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관점에서 향후 투자 확대를 위한 과제를 분석

- 일본 기업 부문은 수익 증가에 비해 임금 상승 및 투자가 부진한 상황으로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혁신 등을 통한 수익 향상, 성장 창출에 노력할 필요
- 무형 자산을 포함한 국내 투자 확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 일본 내각부, 2023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2024. 2. 15.)⁵²⁾

- 전 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연율 -0.4%)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명목 GDP 성장률은 0.3%(연율 1.2%)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3%p로 3분

50) 한국의 조세부담률(GDP 대비)은 2021년 22.0%, 2022년 23.8%이며, 국민부담률(GDP 대비)은 2021년 29.8%, 2022년 32.0%(출처: e-나라지표, 「조세부담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122, 「국민부담률」, <https://www.index.go.kr/unity/idx-info.do?idxCd=5015>, 검색일자: 2024. 2. 13.)

51) 일본 내각부, 「2023 年度 日本經濟レポート—コロナ禍を乗り越え、經濟の新たなステージへ—」, 2024. 2. 13., https://www5.cao.go.jp/keizai3/2023/0213nk/pdf/n23_5.pdf, 검색일자: 2024. 2. 19.

52) 일본 내각부, 「2023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2. 15.,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2. 16.

- 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2%p로 2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하여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전 분기 대비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외식 및 의복 등의 감소에 기인하여 -0.2%를 나타냈으며, 민간주택과 민간기업설비는 각각 -1.0%, -0.1%를 나타냄
 - 민간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2023년 3분기부터 4분기까지 실질 재고 잔고의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GDP

- 성장률에 부정적으로 기여
- (공적수요) 공적수요는 정부최종소비지출, 공적고정자본형성이 모두 감소함에 따라 전 분기 대비 0.2% 감소
 - 전 분기 대비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의료비 등 감소에 기인하여 0.1% 감소하였으며, 공적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0.7% 감소하여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냄
 - 공적재고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
 - (수출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지적재산권 사용료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광

<표 9>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¹⁾
	Q4	Q1	Q2	Q3	Q4	Q4
실질 GDP	0.4	1.1	1.0	-0.8	-0.1	-0.4
국내수요	-0.0	1.4	-0.7	-0.8	-0.3	-1.0
민간수요	-0.3	1.8	-1.0	-1.1	-0.3	-1.1
민간최종소비지출	0.2	0.8	-0.7	-0.3	-0.2	-0.9
민간주택	0.7	0.3	1.8	-0.6	-1.0	-4.0
민간기업설비	-0.5	1.6	-1.4	-0.6	-0.1	-0.3
민간재고변동	(-0.2)	(0.6)	(-0.2)	(-0.5)	(-0.0)	-
공적수요	0.8	0.4	0.2	0.0	-0.2	-0.9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1	-0.1	0.3	-0.1	-0.5
공적고정자본형성	0.0	2.0	2.2	-1.0	-0.7	-2.8
공적재고변동	(0.1)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4)	(-0.4)	(1.7)	(-0.0)	(0.2)	-
재화·서비스 수출	1.4	-3.5	3.8	0.9	2.6	11.0
재화·서비스 수입	-0.8	-1.6	-3.6	1.0	1.7	7.0
명목 GDP	1.9	2.3	2.5	-0.1	0.3	1.2
GDP 디플레이터	1.4	1.2	1.5	0.8	0.4	-

주: 1) 연율 환산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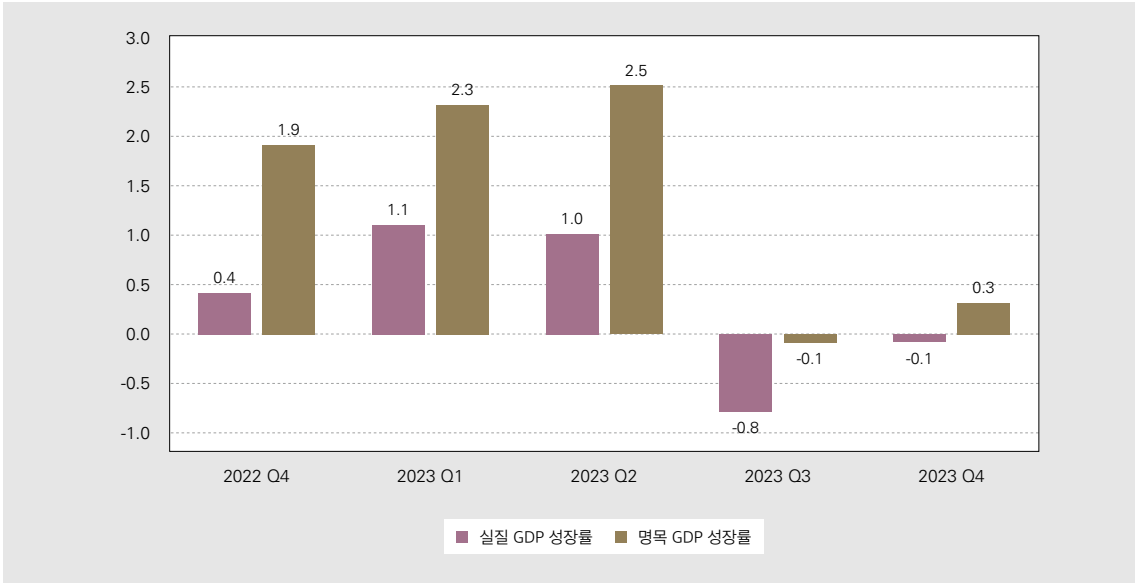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p. 11 <표 2-1> 및 p. 13 <표 2-3> 재구성

[그림 1]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4~6月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물성 연료 등 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1.7% 증가

보(2024. 2. 12.)⁵³⁾

- 2024년 예산은 4,768억유로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연방예산결정에 관한 법률(Haushaltsgesetz 2024)⁵⁴⁾로 공보(2023년 대비 156억유로 증가)

- (재정지출) 2024년 연방예산의 지출은 최초 정부 예산안 대비 311억유로 증액된 4,768억 유로

- 독일 연방하원 예산위원회 권고에 따른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연방의회, 2024년 예산 통과 및 연방법 공

53) 독일 연방의회, “Bundeshaushalt 2024 vom Parlament beschlossen; Fragen und Antworten zum Bundeshaushalt,” 2024. 2. 14.,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faq-zum-bundeshaushalt-2244536>, 검색일자: 2024. 2. 20.; 독일 재무부, “BMF-Monatsbericht; Bundeshaushalt 2024: solide Finanzpolitik, für die Zukunft,” 2024. 1.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4/01/Inhalte/Kapitel-2a-Schlaglicht/schlaglicht-bundeshaushalt-2024.html>, 검색일자: 2024. 2. 20.; 독일 연방하원,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24(Haushaltsgesetz 2024 - HG 2024),” 2024. 2. 12., <https://dip.bundestag.de/vorgang/gesetz-%C3%BCber-die-feststellung-des-bundeshaushaltsplans-f%C3%BCr-das-haushaltsjahr-2024/302729>, 검색일자: 2024. 2. 21.

54) 연방 법령 관보, “Gesetz über die Feststellung des Bundeshaushaltsplans für das Haushaltsjahr 2024(Haushaltsgesetz 2024 - HG 2024),” 2024. 2. 12., <https://www.recht.bund.de/bgb1/1/2024/38/VO>, 검색일자: 2024. 2. 21.

<표 10> 연방정부 재정수지

(단위: 억유로, %)

구분	2024년 정부안	2024년 확정예산	증감
지출	4,378	4,768	311
투자	542	705	163
수입	4,291	4,378	87
세입	3,753	2,776	23
예비비 인출	14	102	88
순차입금	166	390	224

출처: 독일 재무부, "BMF-Monatsbericht; Bundshaushalt 2024: solide Finanzpolitik, für die Zukunft", 2024. 1. 3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Monatsberichte/2024/01/Inhalte/Kapitel-2a-Schlaglicht/schlaglicht-bundshaushalt-2024.html>, 검색일자: 2024. 2. 20.

<표 11> FY2024 독일의 부처별 예산

(단위: 천유로, %)

부처	금액	비율
연방노동사회부(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175,675,498	36.80
연방국방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51,951,938	10.90
연방디지털교통부(Bundesministerium für Digitales und Verkehr)	44,145,217	9.30
연방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	21,486,334	4.50
연방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16,708,527	3.50
연방가족노인여성청년부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3,873,295	2.90
연방내무부 및 국토부(Bundesministerium des Innern und für Heimat)	13,344,939	2.80
연방경제협력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11,217,281	2.40
연방경제기후보호부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11,090,030	2.30
연방재무부(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	9,809,331	2.10
연방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6,930,631	1.50
연방주택도시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6,728,208	1.40
외교부(Auswärtiges Amt)	6,707,712	1.40
연방총리청(Bundeskanzler und Bundeskanzleramt)	3,874,052	0.80
연방환경·자연·원자력안전·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nukleare Sicherheit und Verbraucherschutz)	2,403,767	0.50
연방법무부(Bundesministerium der Justiz)	1,028,999	0.20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191,810	0.04
연방대통령실(Bundespräsident und Bundespräsidialamt)	47,094	0.01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부 (Der Bundesbeauftragte für den Datenschutz und die Informationsfreiheit)	45,398	0.01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41,314	0.01
연방상원(Bundesrat)	38,283	0.01
연방하원(Deutscher Bundestag)	1,239,29	0.30
독립통제위원회(Unabhängiger Kontrollrat)	11,000	0.00
일반재무행정(Allgemeine Finanzverwaltung)	38,645,278	8.10
연방부채(Bundesschuld)	39,571,791	8.30

출처: 독일 연방예산 홈페이지, "Sollwerte des Haushaltsjahres 2024," <https://www.bundshaushalt.de/DE/Bundshaushalt-digital/bundshaushalt-digital.html>

최초 정부안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독일 연방군(Bundeswehr) 191억 7,400만 유로 → 198억 8,000만유로, 재건 지원 2021(Aufbauhilfe 2021) 110억 6,100만 유로 → 26억 5,700만유로, 기후변화기금(KTF) 991억 9,800만유로 → 390억 2,800만유로 등임⁵⁵⁾

- (재정수입) 2024년 조세수입은 3,776억유로, 기타수입은 602억유로로 추산되어 최초 정부 예산안 대비 각각 약 23억유로, 약 64억 유로 증가
- (신규차입) 2024년 신규차입은 390억 3천만 유로로 최초 정부 예산안 대비 약 224억 7천 만유로 증가
 - 독일 부채비율은 2021년 69%에서 2024년 6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24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기후중립적·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사회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기후보호, 디지털화, 교육 및 연구, 이동성 및 인프라 등 미래 투자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총 705억유로를 투자에 배정

[기타]

-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2024년 연간경제보고서 (Jahreswirtschaftsbericht, 2024)」⁵⁶⁾ 발표(2024. 2. 21.)⁵⁷⁾
 - (경제 전망) 독일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3년 -0.3%, 2024년 0.2%로 전망하고 있으며 작년 가을 전망 대비 하향 조정
 - (GDP) 세계 경제 불안 및 무역 감소는 수출 중심국가인 독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높은 물가상승률과 이자율 역시 기업투자 유치에 어려움으로 작용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3년 5.9%에서 2024년에는 2.8%까지 하락할 전망
 - (고용) 2024년 취업자 수는 약 4,600만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실업률은 전년 대비 소폭

<표 12> 2022~2024년 독일 주요 경제수치

(단위: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GDP(가격조정)	1.8	-0.3	0.2
취업자 수(Erwerbstätige)	1.4	0.7	0.2
실업률(Arbeitslosenquote)	5.3	5.7	5.9
소비자물가지수(Inflationsrate)	6.9	5.9	2.8

출처: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4 der Bundesregierung" 2024. 2. 21., p. 21 Übersicht 1

55) 2023년 7월 발표된 2024회계연도 예산안은 독일 헌법재판소의 2021회계연도 추경예산 위헌 판결(2023. 11.)의 영향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가 중단되고 정부는 예산안을 조정한 바 있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를 참고 바람

56) 연간경제보고서는 매년 1월에 발표되며 독일 연방정부의 경제 및 재정 정책 우선순위와 경제 전망을 제시함

57) 독일 연방의회, "Jahreswirtschaftsbericht dämpft Hoffnung auf Wachstum," 2024. 2. 21.,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990892>, 검색일자: 2024. 2. 22.;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24 – Wettbewerbsfähigkeit nachhaltig stärken" PRESSEMITTEILUNG, 2024. 2. 21.,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2/20240221-jahreswirtschaftsbericht-2024.html>, 검색일자: 2024. 2. 22.; 독일 연방정부, "Im Kabinett: Jahreswirtschaftsbericht 2024; Wettbewerbsfähigkeit nachhaltig stärken," 2024. 2. 21.,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suche/wettbewerbsfaehigkeit-nachhaltig-staerken-2261242>, 검색일자: 2024. 2. 22.

상승한 5.9%로 전망

- (재정 전망) 2024년 연방예산은 부채규정 기준 한도⁵⁸⁾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23년 에너지 가격 급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 2021년 홍수로 인한 지속적 피해복구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재정정책 정상화 과정을 유지
 - 2024년 연방예산 초안 및 기후변화기금(KTF)에 대한 검토로 수입과 지출 조정
 - 2024년 연방예산에서의 투자 비율은 14.8% (목표치)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10.7% 보다 더 높은 수준임

■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4분기 GDP 성장률 발표(2024. 2. 23.)⁵⁹⁾

- 2023년 4분기 독일의 GDP(가격, 계절변동 및 달력효과 조정)는 전 분기 대비 0.3% 감소
 - 2023년 4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민간소비 0.2%, 정부지출 0.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1.7% 감소함에 따라 경제성과가 미비
 - 독일의 2023년 4분기 GDP 성장률은 주요 EU 회원국인 스페인(0.6%), 이탈리아(0.2%), 프랑스(0%)뿐만 아니라 EU전체(0.3%)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낮은 수준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4분기 독일의 가격조

정 GDP는 -0.4%, 가격 및 달력효과 조정⁶⁰⁾ 성장률은 -0.2%를 기록

- 2023년 4분기 GNI(경상가격 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5.1%, 1인당 평균 총임금은 5.7% 증가
-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4,620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나, 노동생산성(노동 시간당 가격 조정 GDP)은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4년 예산법의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2024. 2. 23.)⁶¹⁾

- 2024년 예산법안 발표 당시 2024년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였으나, 전망치가 1%로 낮아짐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10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을 취소하는 법령⁶²⁾을 발표
- 환경 관련 예산을 포함해 고용·사회·교육 관련 예산이 취소되었고 지방정부의 예산은 취소되지 않았으며, 주요 취소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미션지출은 환경친화

58)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를 GDP의 0.35%로 제한

59) 독일 연방통계청, "Bruttoinlandsprodukt: Ausführliche Ergebnisse zur Wirtschaftsleistung im 4. Quartal 2023," Press Release, 2024. 2. 23.,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2/PD24_066_811.html, 검색일자: 2024. 2. 26.

60) 해당 자료는 계절조정을 계절변동(달력효과 미반영) 조정과 달력효과(공휴일, 조업일수 변화 등을 반영) 조정으로 구분

61)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Budget 2024: "annulation de 10 milliards d'euros de dépenses par décret," 2024. 2. 23., <https://www.vie-publique.fr/en-bref/293127-10-milliards-deuros-deconomie-au-budget-2024>, 검색일자: 2024. 2. 26.

62) 프랑스 법률사이트, "Décret n° 2024-124 du 21 février 2024 portant annulation de crédits," 2024. 2. 21.,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180270>, 검색일자: 2024. 2. 2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및 지속가능개발(Ecologie, développement et mobilité durables)로 21억 3천만유로의 지출이 취소됨

- 노동 및 고용(Travail et emploi) 미션 지출은 11억유로가 취소됨
- 연구 및 고등교육(Recherche et enseignement supérieur) 미션 지출은 9억 400만유로가 취소됨
- 정부개발원조(Aide publique au développement) 미션 지출은 7억 4,200만유로가 취소됨
- 영토통일(Cohésion des territoires) 미션 지출은 7억 3,600만유로가 취소됨
- 학교교육(Enseignement scolaire) 미션 지출은 6억 9,100만유로가 취소됨
- 그 외 일반공공행정(Administration générale et territoriale de l'Etat), 경제(Économie), 정부재정관리·부채관리·국채발행 등(Engagements financiers de l'Etat), 사회통합 및 기회균등(Solidarité, insertion et égalité des chances) 등의 미션에서 지출이 취소됨

[기타]

■ 가브리엘 아탈(Gabriel Attal) 신임 총리, 주요 개

혁 및 정책 방향 발표(2024. 1. 30.)^{63), 64)}

- 프랑스 총리는 노동시장 개선, 공공 서비스 향상, 사회 시스템 강화, 생태학적 전환 가속화 등 네 가지 정부 우선순위를 포함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
 - (노동) 중산층 세부담 경감 노력 및 실업보험 개혁을 지속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동시장의 문제를 개선하며, 산업 규제 간소화를 포함한 산업 부문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 (공공서비스) 의료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보건 서비스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방법을 혁신하고 학교에서의 괴롭힘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사회시스템)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범죄와 사회 불안을 줄이기 위해 경찰력을 늘리며, 마약 및 일상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
 - (생태학적 전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생태학적 전환 계획을 발표할 예정

■ 프랑스 예산국, 2023년 예산집행결과 발표(2024. 2. 2.)⁶⁵⁾

- (재정수지) 2023년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1,733억유로로 2022년 1,515억유로 대비 218억 유로 증가

63) 프랑스 사회서비스 포털,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M. Gabriel Attal, Premier ministre, sur les grand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gouvernementale notamment en matière d'industrialisation, de santé, d'éducation, de sécurité et d'agriculture, à l'Assemblée nationale le 30 janvier 2024," 2024. 1. 30., <https://www.vie-publique.fr/discours/292847-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gabriel-attal-30012024>, 검색일자: 2024. 2. 7.

64) 프랑스 정부, "Ce qu'il faut retenir de la déclaration de politique générale de Gabriel Attal," 2024. 1. 31.,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ce-qui-faut-retenir-de-la-declaration-de-politique-generale-de-gabriel-attal>, 검색일자: 2024. 2. 7.

65) 프랑스 예산국, "Situation mensuelle budgétaire au 31 décembre 2023," 2024. 2. 2., 검색일자: 2024. 2. 7.

- (재정지출) 2023년 일반예산지출(dépenses du budget général)은 4,546억유로로 2022년 4,527억유로 대비 19억유로 증가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채무 비용이 증가
- (재정수입) 2023년 일반예산수입(recettes du budget général)은 3,480억유로로 2022년 3,542억유로에 비해 62억유로 감소
 - 부가가치세 수입 중 사회보장부문으로 할당되는 비중이 증가
 - 연료 소비 감소로 인해 에너지제품소비세 수입이 감소



영국

■ 영국 노동·연금부, 25억파운드 규모의 생활비

보조금(Cost of Living Payment) 지원(2024. 2. 6.)⁶⁶⁾

- 정부는 2월 22일까지 자산 조사(means-test)에 따른 적격 가구에 생활비 보조금 299파운드를 지급할 예정
 - 생활비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생활비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2021년 가을에 발표한 1,040억 파운드 규모의 생활비 지원 패키지⁶⁷⁾의 일환
 - 이번에 지급되는 생활비 보조금 299파운드는 2023~2024회계연도의 최대 3회 지급금(총 900파운드) 중 세 번째에 해당⁶⁸⁾
 - 1회 보조금은 2023년 4~5월 중에 301파운드, 2회 보조금은 2023년 10~11월 중에 300파운드가 지급된 바 있음
 - 총지원규모는 약 25억파운드로, 약 8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지원 대상은 ① 통합급여,⁶⁹⁾ ② 소득기반
- 소득기반 고용·지원 수당,⁷⁰⁾ 소득기반

6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Eight million households to receive £2 billion Cost of Living support," Press release, 2024. 2. 6., <https://www.gov.uk/government/news/eight-million-householdsto-receive-25-billion-cost-of-living-support>, 검색일자: 2024. 2. 6.
 UK Parliament, "Cost of Living Payments: Overview and FAQs," Research Briefing, 2024. 1. 30.,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9616/>, 검색일자: 2024. 2. 26.,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ost of Living Payments 2023 to 2024," Guidance, 2024. 2. 23., <https://www.gov.uk/guidance/cost-of-living-payment>, 검색일자: 2024. 2. 26.

67) 영국 전역의 가구와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040억파운드(가구당 평균 3,700파운드)를 지원(세금 감면, 동절기 연료비 지원,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지원, 버스 요금 제한, 보육비 보조 등)

68) 생활비 보조금 시행 첫 해인 2022년에는 2회에 걸쳐 총 650파운드 지급

69) Universal Credit: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되어, 기존 6개 급여를 통합급여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현재까지 진행 중)

70) Income-based JSA: 유급 일자리에 있다가 실직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신청자가 주당 평균 16시간 미만 노동에 종사하고 해당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당 평균 24시간 미만 노동에 종사하며, 신청자와 배우자 합산 저축액이 1만 6천파운드 이하인 경우 지급)(출처: <https://www.gov.uk/jobseekers-allowance/if-youre-getting-income-based-isa>, 검색일자: 2024. 2. 28.)

71) income-based ESA: 장애·질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근로능력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를 통해 자신의 질병이나 장애가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출처: <https://www.gov.uk/employment-support-allowance/eligibility>, 검색일자: 2024. 2. 2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소득보조,⁷²⁾ 연금급여,⁷³⁾ ③ 세액공제의 경우로 구분

- ①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2일 까지 종료된 평가 기간 동안 통합급여 수급 자격이 있거나 나중에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②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2일 까지 해당 급여의 수급 자격이 있거나 나중에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③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2일 까지 기간 중 특정 날짜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나중에 해당 기간 중 특정 날짜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은 경우

- 정부는 생활비 보조금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제공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재로서는 생활비 보조금의 연장 시행 계획은 없다고 언급

■ 영국 교통부, 북부와 미들랜드 전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47억파운드 지원(2024. 2. 26.)⁷⁴⁾

- 정부는 지역교통기금(Local Transport Fund)

을 통해 2025년 4월부터 북부 및 미들랜드 지역에 47억파운드를 투자할 계획(각각 25억파운드, 22억파운드)

- 이는 해당 지방 당국이 현재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지원받고 있는 지역 통합 교통 포괄 보조금(local integrated transport block)⁷⁵⁾ 보다 평균 최소 9배 큰 규모
- 소규모 도시, 마을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교통 예산으로, 7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투입되어 대중교통, 교통 혼잡, 지역 버스 및 기차역 개선 등에 지출될 예정
- 정부는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분야인 교통에 투자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재무부, 2023~2024년 추가 예산(Additional

72) Income Support: 저소득자로서 일정 시간 미만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제공되는 급여(소득이 없거나 저소득, 저축액이 16,000파운드 이하, 16시간 미만 근무(배우자는 24시간 미만 근무), 16세 이상~연금지급개시연령, 거주지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중에 해당(북아일랜드 거주자는 별도 기준 적용),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서 임신부,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편부모(편입양부모 포함), 간병인, 일을 할 수 없고 법정 병가수당, 무능력 수당,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 영어를 배우는 난민 등의 여러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출처: <https://www.gov.uk/income-support/if-you-already-get-income-support>, 검색일자: 2024. 2. 28.)

73) Pension credit: 국가연금(State Pension) 수혜 연령을 넘었고 소득이 낮은 경우 제공되는 생활보조금(주간 소득 201.05파운드(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합산소득 306.85파운드) 이하 등의 조건 만족 시 수급)(출처: <https://www.gov.uk/pension-credit/eligibility>, 검색일자: 2024. 2. 28.)

74) Department for Transport, "Local leaders to receive £4.7 billion to transform transport across the North and Midlands," News story, 2024. 2. 26., <https://www.gov.uk/government/news/local-leaders-to-receive-47-billion-to-transform-transport-across-the-north-and-midlands>, 검색일자: 2024. 2. 27.

75) 포괄보조금(block grant): 일정한 범위 또는 지역의 사업이나 일정한 효과가 있는 사업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러한 취지에 맞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포괄적인 조건으로 교부하는 보조금

Estimates) 발표(2024. 2. 7.)⁷⁶⁾

※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회에 추가 예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법*(3)과 (4), 의회세출예산법(2)로 확정⁷⁷⁾

* 호주의 세출예산법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세출을 편성한 세출예산법(1)과 통상적인 업무 이외의 세출을 편성한 세출예산법(2)로 나뉘며, 이에 대응하여 추가 예산법안도 각각 (3)과 (4)로 나뉨

● 정부는 세출예산법안(3)에서 총 87억 376만호

주달러, 세출예산법안(4)에서 총 22억 6,536만 호주달러 증액을 요청

- 또한, 의회세출예산법안(2)⁷⁸⁾에서는 총 1,027만 호주달러 증액을 요청
 - 의회서비스부(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s) 1,000만호주달러, 하원 27만 호주달러 증액 요구

<표 13> 호주 2023~2024년 포트폴리오별 추가 예산

(단위: 천호주달러)

포트폴리오	세출예산법(1)	세출예산법안(3) 증액	세출예산법(2)	세출예산법안(4) 증액
농림·수산·임업	1,003,409	90,820	274,671	1,050
법무	3,434,494	253,083	105,929	20,090
기후·에너지·환경·물	4,013,007	288,776	8,916,550	42,600
국방	40,222,062	2,233,363	11,971,75	320,124
교육	1,512,316	130,052	174,581	-
고용	4,999,109	833,623	30,531	17,506
재정	1,505,193	56,612	556,472	440,596
외교·통상	7,622,412	260,580	179,789	7,500
보건	19,235,398	1,145,678	167,882	160,027
내무	6,087,252	702,876	118,776	110,631
산업·과학·자원	3,775,821	341,516	241,859	-
인프라·교통·지역개발·커뮤니케이션·예술	5,365,284	171,545	4,264,290	272,428
총리·내각	2,931,856	43,844	37,952	-
사회서비스	38,021,422	1,812,405	54,916	45,625
재무	5,941,575	338,984	32,823	827,183
총계	145,670,610	8,703,757	27,128,806	2,265,360

출처: 호주 의회, "Appropriation Bill(No. 3) 2023-2024," 2024. 2. 7.,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7143, 검색일자: 2024. 2. 20.; "Appropriation Bill(No. 4) 2023-2024," 2024. 2. 7.,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7144, 검색일자: 2024. 2. 20.

76) 호주 재무부, "Portfolio Additional Estimates Statements 2023-24," 2024. 2. 7.,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24-491848-paes>, 검색일자: 2024. 2. 20.; 호주 의회, "Appropriation Bill(No. 3) 2023-2024," 2024. 2. 7.,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7143, 검색일자: 2024. 2. 20.; "Appropriation Bill(No. 4) 2023-2024," 2024. 2. 7.,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7144, 검색일자: 2024. 2. 20.; "Appropriation(Parliamentary Departments) Bill(No. 2) 2023-2024," 2024. 2. 7., 검색일자: 2024. 2. 22.

7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호주의 재정제도』, 2012.

78) 의회세출예산법(Appropriation(Parliamentary Departments) Act(No. 1))은 의회 부서와 관련된 지출이며, 정규 예산 외 통합세입기금(Consolidated Revenue Fund)으로부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추가 예산을 제출

[기타]

■ 호주 중앙은행(RBA), 2024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및 기준금리 동결 발표(2024. 2. 6.)⁷⁹⁾

* 호주 중앙은행은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호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1.8%, 2025년 2.3%로 전망되어 지난 11월 전망(각각 2.0%, 2.4%)보다 하향 조정됨
 - 경제성장률은 주로 소비 지출 약세를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난 몇 년간의 실질 소득 감소는 특히 2024년 상반기에 계속해서 소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이 완화되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향후 몇 년간 소비증가율은 팬데믹 이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노동)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나 최근 몇 달간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2024년 실업률은 4.3%, 2025년에는 4.4%로 소폭 상승할 전망
 - 고용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 보다 느리게 증가하여 실업률과 노동인구 비활용률(underutilisation rate)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명목임금상승률은 노동시장 완화에 따라 둔화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견고한 수준을

<표 14> 호주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12월	2024년 6월	2024년 12월	2025년 6월	2025년 12월	2026년 6월
GDP 성장률	1.5	1.3	1.8	2.1	2.3	2.4
실업률	3.8	4.2	4.3	4.4	4.4	4.4
소비자 물가상승률	4.1	3.3	3.2	3.1	2.8	2.6

주: 표의 단위는 해당 분기 이전 4분기 동안의 퍼센트 변화분을 나타내며, 실업률은 분기별
출처: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4" <Table 3.1> 발췌, 2024. 2. 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feb/>, 검색일자: 2024. 2. 6.

유지할 전망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5년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3%대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목표 범위 중간 수준에 도달할 전망
 -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 2024년 2월 회의에서 중앙은행 이사회는 기준금리 목표를 4.35%로 유지하기로 결정



네덜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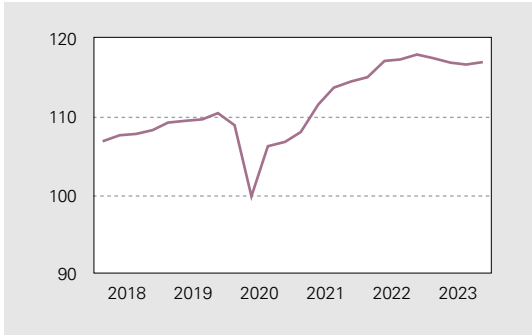
■ 네덜란드 통계청(CBS), 2023년도 4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 발표(2024. 2. 14.)⁸⁰⁾

- 2023년 4분기 실질 성장률(계절 조정된 전 분

79) 호주 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 February 2024," 2024. 2. 6.,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24/feb/>, 검색일자: 2024. 2. 6.; "Statement by the Reserve Bank Board: Monetary Policy Decision," Media release, 2024. 2. 6., <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4/mr-24-01.html>

80)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c growth of 0.3 percent in Q4 2023," 2024. 2. 14., <https://www.cbs.nl/en-gb/news/2024/07/economic-growth-of-0-3-percent-in-q4-2023>, 검색일자: 2024. 1. 16.

[그림 2] 네덜란드 분기별 실질 GDP 추이 (2018 Q1~2023 Q4)



주: 계절 조정된 실질 GDP 수치이며, 2015년 GDP를 100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됨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Economic growth of 0.3 percent in Q4 2023," 2024.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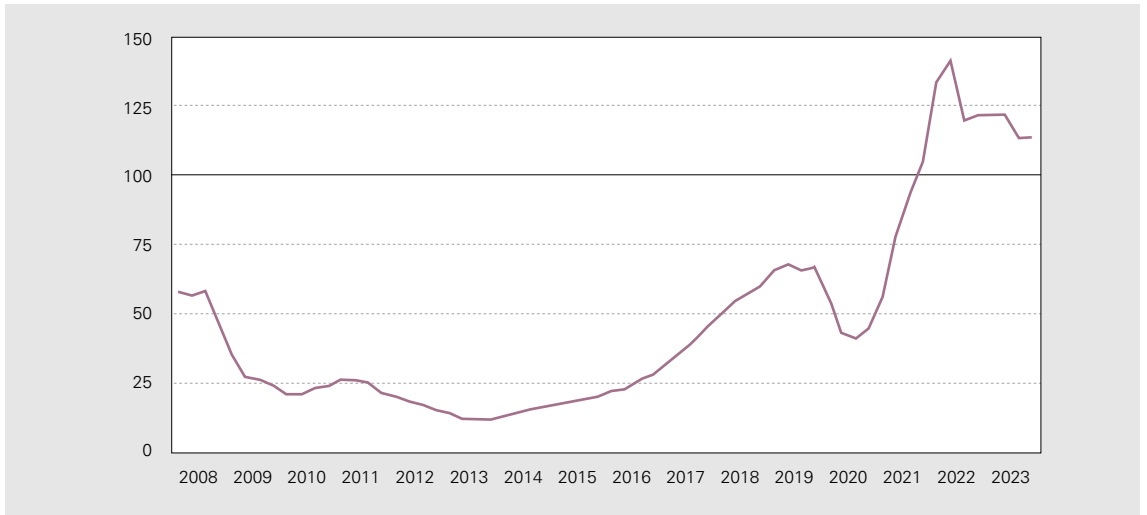
- 였으나, 4분기에는 0.3%로 양의 성장률 기록
- 4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은 주로 가계소비 증가에 기인하며, 가계소비 지출은 전 분기 대비 1.8% 증가
- 네덜란드의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EU의 평균인 0%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연간 성장률은 전년대비 0.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년(6.2%)과 2022년(4.3%)의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성장은 주로 공공 지출 및 고정자산 투자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해당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3% 증가

기 대비)은 0.3%로 나타남

- 2023년 1·2·3분기 분기별 실질 성장률은 -0.4%, -0.4%, -0.3%로 모두 역성장을 기록하

■ 네덜란드 통계청(CBS), 2023년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2. 14.)⁸¹⁾

[그림 3] 네덜란드 구직자당 빈 일자리 개수 추이(2008 Q1~2023 Q4)



주: 실업자 100명당 일자리 개수를 나타냄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Spanning op de arbeidsmarkt blijft even hoog," 2024. 2. 14.

81) 네덜란드 통계청, "Spanning op de arbeidsmarkt blijft even hoog," 2024. 2. 14., <https://www.cbs.nl/nl-nl/nieuws/2024/07/spanning-op-de-arbeidsmarkt-blijft-even-hoog>, 검색일자: 2024. 2.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3년 4분기 구직자 100명당 빈 일자리는 114개로 나타나(2023년 3분기 114개), 노동시장은 타이트한 상태가 지속됨
 - 빈 일자리는 5천개가 감소하였으며, 구직자는 6천명 감소하여 노동시장은 3분기에 이어 여전히 타이트한 상태가 유지됨
 - 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5%, 노동시장 참가율은 73.2%로 나타나 2023년 3분기(실업률 3.6%, 노동시장 참가율 73.1%)와 크게 차이가 없음

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리를 동결

-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한 공급 충격의 재발,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기업의 가격 책정 동향, 코로나화의 약세 전환 등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
- 정책 금리는 2월 7일부터 적용되며 다음 금리 결정 발표는 3월 27일로 예정



스웨덴

-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 스웨덴 정책 금리 4%로 동결(2024. 2. 1.)⁸²⁾
 - 그간의 금리 인상⁸³⁾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고 목표치인 2%에 근접하게 도달하도록 기여
 - 2023년 11월과 12월에 물가상승률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⁸⁴⁾
 - 그러나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은 상황으로 인

- 스웨덴 보건사회부, 2024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에 약 15억크로나 투자 계획 발표(2024. 2. 15.)^{85), 86)}

- 스웨덴 정부는 정신 건강을 위한 예방 및 촉진 활동을 강화하여 자살자 수를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보다 이용하기 쉽고 평등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
- 정부와 SKR(Sveriges Kommuner och Regioner: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간의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노력에 대한 협정은 총 15억 6천만크로나에 달하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 이 중 8억 300만크로나는 어린이와 청소년

82) 스웨덴 중앙은행, "Policy rate unchanged at 4 per cent," 2024. 2. 1., <https://www.riksbank.se/en-gb/press-and-published/notices-and-press-releases/press-releases/2024/policy-rate-unchanged-at-4-per-cent/>, 검색일자: 2024. 2. 7.

83) 2023년 2월 15일 3%로 인상, 2023년 5월 3일 3.5%로 인상, 2023년 7월 5일 3.75%로 인상, 2023년 9월 27일 4%로 인상

84) 2023년 12월 물가상승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1월호(스웨덴 통계청, 2023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락을 발표(2024. 1. 15.)) 참고

85) 스웨덴 보건사회부, "1,5 miljarder till insatser inom psykisk hälsa och suicidprevention 2024," 2024. 2. 1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2/15-miljarder-till-insatser-inom-psykisk-halsa-och-suicidprevention-2024/>, 검색일자: 2024. 2. 20.

86) _____, "Viktiga inspel i strategiskt arbete för psykisk hälsa och suicidprevention," 2024. 2. 16.,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2/viktiga-inspel-i-strategiskt-arbete-for-psykisk-halsa-och-suicidprevention/>, 검색일자: 2024. 2. 20.

정신 건강에 대하여 특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과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1차 진료를 강화하기 위한 자금이 포함
- 야콥 폴스메드(Jakob Forssmed) 사회부 장관은 “정신 건강과 자살 예방은 정부의 최우선 분야로 2024년 정부와 SKR 협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함

■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항공 분야에 약 10억 크로나 투자 발표(2024. 2. 21.)⁸⁷⁾

- 스웨덴 정부는 항공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항공 분야에 10억 3,500만 크로나를 투자하기로 결정
 - 스웨덴은 유럽의 가장자리에 길게 뻗어 위치한 국가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항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국가 전체가 항공 산업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스웨덴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유가 상승, 전쟁, 주변국의 정세 불안 등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재정상황에 처함

- 코로나19로 인하여 항공 교통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공항의 보안 검색 비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GAS 시스템⁸⁸⁾에 적자⁸⁹⁾가 발생
- 정부 투자금을 통하여 GAS 시스템 적자 보안을 위한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을 피하고, 항공사의 향후 비용 인상을 완화하고자 함

87) 스웨덴 농촌·인프라부, “Regeringen aviserar miljardsatsning på flyget,” 2024. 2. 21.,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2/regeringen-aviserar-miljardsatsning-pa-flyget/>, 검색일자: 2024. 2. 22.

88) 승객 및 수하물의 보안 검색에 대한 일반 요금 보상 시스템(GAS, Gemensamt avgiftsutjämningsssystem för säkerhetskontroll av passagerare och deras bagage): 스웨덴의 보안 승인을 받은 모든 공항의 보안 관리 비용을 누적하여 승객별로 배분하는 일반 요금 보상 시스템. 스웨덴 교통청은 승객 수를 기준으로 항공사에 비용을 청구(스웨덴 교통청, “Gemensamt avgiftsutjämningsssystem för säkerhetskontroll av passagerare och deras bagage(GAS),” <https://www.transportstyrelsen.se/sv/luftfart/flygplatser-flygtrafikjanst-och-luftrum/Gemensamt-avgift-sakerhetskontroll-GAS/>), 검색일자: 2024. 2. 22.)

89) 스웨덴 교통청에 따르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7억 1,200만 크로나의 시스템의 누적 적자가 발생(스웨덴 농촌·인프라부, “Åtgärder med anledning av Transportstyrelsens rapport,” 2021. 10. 20., https://www.riksdagen.se/sv/dokument-och-lagar/dokument/svar-pa-skriftlig-fraga/atgarder-med-anledning-av-transportstyrelsens_H912107/), 검색일자: 2024. 2. 22.)

재정포럼

2024년 3월호 통권 제333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3월 15일 발행 / 통권 제33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